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음주폐해 예방



보건복지부

KHEPi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3년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 전(2022년)	개정 후(2023년)	페이지
1부. 국가 음주폐해예방사업			
II -2. 국가 음주폐해 예방사업	마. 절주교육 ○ 심화 교육과정 추가	마. 절주교육 ○ 심화 교육과정 삭제 → 격년 운영(2024년 운영 예정)	26
3부. 활용자료			
I. 지역사회 우수사례	○ 코로나19로 2021년 우수사례 선정 미실시 -〈V. 활용양식 및 자료〉에 2020년 지역사회 우수사례 세부사업별 사례 수록	〈개정〉 ○ 2022년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 사례 선정 실시 - 우수사례 사례집에 상세 수록 * 별도 안내 예정	-
V-3. 제작·발간 자료 목록	○ 2021년까지 발간된 자료 수록	○ 2022년까지 발간된 자료 최신화 * 이외 자료는 절주ON 홈페이지 참고	114
V-4. 유형별 정신건강 증진기관 현 황	〈신설〉 ○ 전국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 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수록	〈개정〉 ○ 기관 현황 최신화	140
공통	○ 최신 통계수치 업데이트		

CONTENTS

1부 국가 음주폐해예방사업

I. 개요

1. 추진배경	002
2. 정책현황	007

II. 국가 음주폐해예방사업 현황

1. 2023년 추진방향	013
2. 국가 음주폐해예방사업	016

2부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I. 개요

1. 사업개요	032
2. 추진체계	035

II. 내용 및 방법

1. 환경조성 및 제도개선	039
2. 교육 및 상담	045
3. 홍보 및 캠페인	049
4. 전문기관 연계	051

III. 행정사항

1. 실적보고	052
2. 직무교육	058

3부 활용자료

I.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안)

1. 청소년	060
2. 대학생(젊은 성인)	062
3. 성인(직장인)	064
4. 성인(학부모)	066
5. 임산부	068
6. 노인	070
7. 판매자	072

II. 음주폐해의 이론적 근거

1. 주류와 알코올	074
2. 음주로 인한 건강문제	077
3.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	083
4. 국내외 주요 정책	087

III. 관련통계

1. 성인 음주통계	093
2. 청소년 음주통계	096
3. 주류 생산·판매	097
4. 음주로 인한 사망·질병·사건·사고	100

IV. 관련법률

1. 주류광고의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105
2. 절주 교육·홍보·과음경고문구 표기: 국민건강증진법	108

V. 활용양식 및 자료

1. 생활 속 절주실천수칙	111
2.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112
3. 제작·발간 자료 목록	114
4.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140

1부

국가 음주폐해예방사업

I. 개요

II. 국가 음주폐해예방사업 현황

I

개요

1 추진배경

가. 음주의 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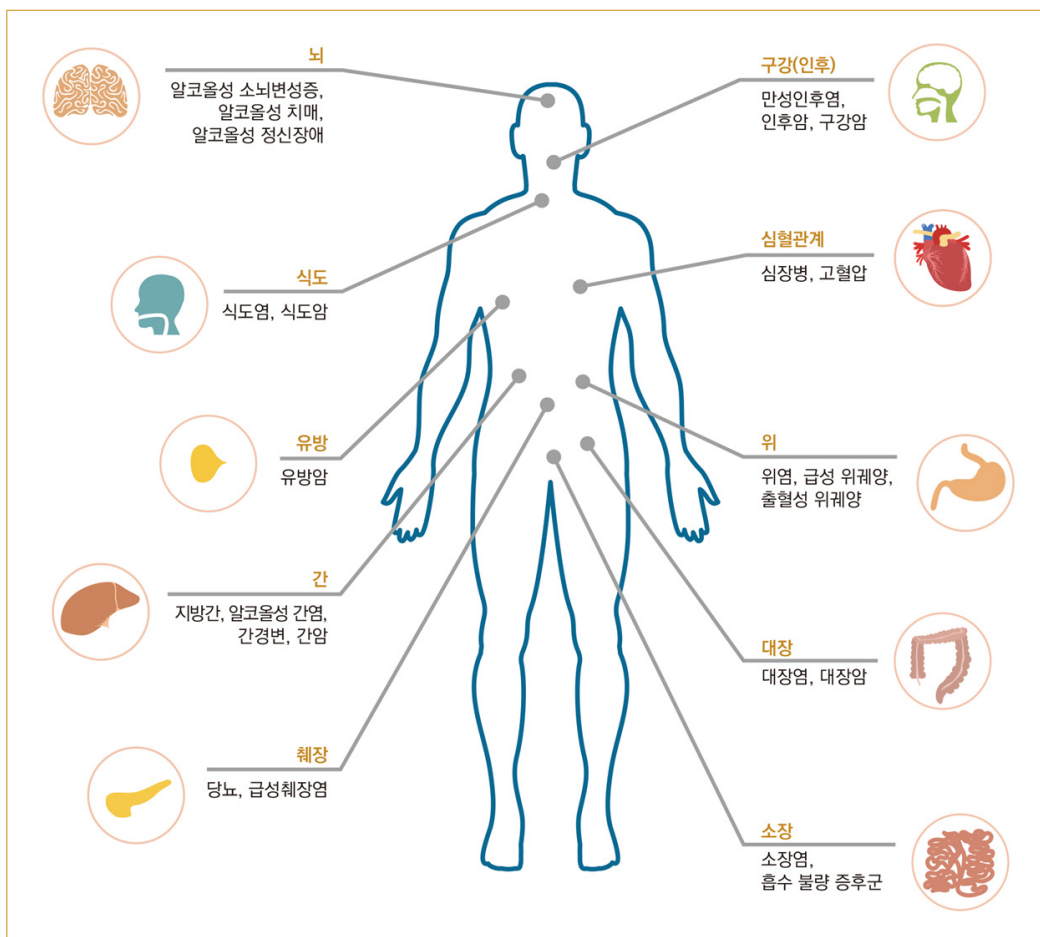
(1) 술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

- 음주는 전 세계 질병부담 요인 중 7위이며¹⁾, 2016년 기준 전 세계 사망의 5.3%, 즉 300만 명이 음주와 관련하여 사망함²⁾
 - 우리나라는 2020년 1일 평균 14.1명이 알코올과 관련하여 사망하며⁴¹⁾,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9년 기준 15조 806억원에 달함³⁾
- 알코올은 중독물질이며 1군 발암물질로 각종 질병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됨
 - 알코올은 중추신경계 억제계열의 중독성 물질로, 음주 시 어지럼증, 졸림, 두통, 의욕상실, 두드러기, 오심, 구토 등 신경·면역·소화기에 독성을 일으키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신체장애 및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태아알코올증후군의 원인임⁴⁾
 - 또한 알코올은 사람에게 암을 유발시키는 1군 발암물질로 음주 시 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등의 발생위험이 증가함⁵⁾
- 알코올은 우리 몸 전신에 작용하고 200여종의 질환과 관련됨²⁾
 - 알코올은 우리 몸의 뇌, 신장, 간, 피부, 호흡기, 소화기 등 전신에 광범위하게 작용하여 세포와 신경에 영향을 미침
 - 우리나라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알코올성 다발신경병증, 알코올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성,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 위-식도 열상 출혈증후군, 알코올성 심근병증 등의 질병발생 위험이 높음⁶⁾

○ 알코올은 뇌를 손상시키고 중독을 일으킴³²⁾

- 알코올은 뇌의 신경전달 활동을 방해하여, 단기적으로는 몸이 둔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며 장기적으로는 우울, 동요, 학습장애, 기억상실 등 기분장애와 행동장애가 발생하고 알코올 의존증상이 발생함

그림 1 음주로 인한 질병



* 자료 : 국가암정보센터, 음주 위해

(2) 술이 타인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

- 음주는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 중 유해성이 1위이며, 특히 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음⁸⁾
-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미치는 대표적인 피해는 음주운전과 폭행,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있음⁴⁴⁾⁴⁵⁾
 - 2020년 기준, 교통사고 사상자의 약 9.3%는 음주운전이 원인이며, 강력범죄의 약 26.0%는 주취상태에서 발생함
- 부모의 음주는 아동의 사회적·정서적·경제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등을 유발할 수 있음²⁵⁾²⁶⁾

나. 우리나라 음주현황

(1) 주류생산 및 알코올 소비

- 2020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7.9L로 OECD의 평균(8.4L)보다 적지만 크게 상이하지 않은 수준임⁹⁾

*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20년 주류 출고량×도수(%)×1,000÷인구수'로 산출

(2) 성인과 청소년의 음주실태

- 성인의 월간음주율은 전체 58.9%(남자 70.2%, 여자 47.8%)이며, 고위험 음주율은 전체 14.1%(남자 21.6%, 여자 6.3%), 월간폭음률은 전체 38.4%(남자 51.9%, 여자 24.7%)임¹⁰⁾
 - 성인의 음주지표는 하락과 상승추세를 나타내지만,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음
 - 남성의 경우 월간음주율, 고위험음주율, 월간폭음률 모두 지속 감소하였지만 2020년 고위험음주율이 상승하였고 여성의 고위험음주는 지속 상승하다 2019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¹⁰⁾
 - 연령별로 살펴보면 성인의 월간음주율 및 월간폭음률은 20~40대에서 높은 것으로, 고위험음주율은 30~4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¹⁰⁾
- 청소년의 평생 음주 경험율은 2021년 32.9%(남학생 37.6%, 여학생 27.8%)이고, 현재 음주율은 전체 10.7%(남학생 12.4%, 여학생 8.9%)임¹¹⁾
 - 2021년 청소년의 처음 음주경험 연령은 13.2세(남학생 13.0세, 여학생 13.6세)로 작년 13.4세(남학생 13.2세, 여학생 13.7세) 대비 음주경험 연령이 낮아짐¹¹⁾
 - 청소년 현재 음주자의 위험음주율은 전체 45.5%(남학생 42.5%, 여학생 49.8%)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위험 음주율이 증가함¹¹⁾
 - 청소년 중 구매 시도자의 주류 구매 용이성은 71.3%(남학생 69.4%, 여학생 74.8%)로 작년 6.35% 대비 큰 폭 상승하여 여전히 청소년이 쉽게 술을 살 수 있는 환경임¹¹⁾

표 1 성인 음주통계(2011~2020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음주(%)											
월간음주율 ¹⁾	전체	60.6	57.9	60.1	60.0	60.6	61.9	62.1	60.6	60.8	58.9
	남자	77.6	73.5	75.3	74.4	75.2	75.3	74.0	70.5	73.4	70.2
	여자	44.2	42.9	45.7	46.4	46.5	48.9	50.5	51.2	48.4	47.8
고위험음주율 ²⁾	전체	14.1	13.9	12.5	13.5	13.3	13.8	14.2	14.7	12.6	14.1
	남자	23.2	21.8	19.7	20.7	20.8	21.2	21.0	20.8	18.6	21.6
	여자	4.9	6.0	5.4	6.6	5.8	6.3	7.2	8.4	6.5	6.3
월간폭음률 ³⁾	전체	38.9	37.9	37.3	37.5	38.7	39.3	39.0	38.9	38.7	38.4
	남자	55.8	53.3	53.2	53	54.1	53.5	52.7	50.8	52.6	51.9
	여자	22.1	22.9	21.9	22.5	23.2	25.0	25.0	26.9	24.7	24.7

* 자료 : 질병관리청(2020), 2020 국민건강통계

1) 월간음주율 :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을

2) 고위험음주율 :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을

3) 월간폭음률 :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분을

표 2 청소년 음주통계(2011~2021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음주(%)											
현재음주율 ¹⁾	전체	19.4	16.3	16.7	16.7	15.0	16.1	16.9	15.0	10.7	10.7
	남자	22.7	19.4	20.5	20.0	17.2	18.2	18.7	16.9	12.1	12.4
	여자	15.8	12.8	12.6	13.1	12.5	13.7	14.9	13.0	9.1	8.9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 ²⁾	전체	47.6	46.8	47.5	50.2	50.4	51.3	52.5	52.2	49.0	45.5
	남자	45.6	44.9	46.1	48.2	49.1	48.5	48.9	48.4	46.2	42.5
	여자	50.8	49.9	49.9	53.6	52.3	55.4	57.3	57.4	52.9	49.8
처음 음주 경험 연령 ³⁾	전체	12.8	12.9	12.9	13.1	13.2	13.2	13.3	13.2	13.4	13.2
	남자	12.7	12.8	12.8	12.9	13.0	12.9	13.0	12.9	13.2	13.0
	여자	12.9	13.0	13.1	13.3	13.5	13.5	13.7	13.5	13.7	13.6
구매 시도자의 주류 구매 용이성률 ⁴⁾	전체	82.6	76.8	77.1	80.4	72.4	67.2	75.4	66.2	63.5	71.3
	남자	82.6	76.3	77.0	79.7	71.8	66.6	75.1	66.6	64.1	69.4
	여자	82.6	77.9	77.5	81.8	73.3	68.0	75.9	65.7	62.4	74.8

* 자료 : 질병관리청(2021), 청소년건강행태조사

1) 현재음주율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을

2)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 : 현재 음주자 중에서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분을

3) 처음 음주 경험 연령 : 평생 음주 경험자 중에서 처음으로 1잔 이상 술을 마신 연령 평균

4) 구매 시도자의 주류 구매 용이성 : 구매 시도자 중에서 최근 30일 동안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술을 사려고 했을 때 '많이 노력', '조금만 노력' 또는 '노력 없이도 쉽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의 분을

2 정책현황

가. 국외정책

(1)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⁸⁸⁾⁸⁹⁾

-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사회·경제 발전과 환경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함
-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목표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 UN 지속가능발전



* 자료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이 중 알코올 예방과 치료는 “목표 3. 모든 세대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 증진”을 위한 세부 목표임

(2) 세계보건기구(WHO), 비감염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s) 예방목표⁹⁰⁾

- 2025년까지 주요 비감염성질환(심혈관질환, 암, 만성폐질환, 당뇨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25% 감소하기 위해 모든 나라에서 추진해야 할 9가지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 비감염성질환 예방목표



* 자료 : WHO. NCD Global Monitoring Framework

- 이 중 음주는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위험요인으로 2025년까지 해로운 음주율 10% 감소를 목표로 제시함

(3) 세계보건기구(WHO), WHO 해로운 음주감소를 위한 세계전략¹²⁾

(Global strategy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alcohol)

* 2010년 5월 21일 제63차 세계 보건총회에서 채택(WHA63.13)

○ 배경

- 해로운 음주는 세계 질병부담의 중요 기여요인이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330만명 (2012년 기준)의 사람이 음주관련 원인으로 사망함
- 해로운 음주는 신경정신장애, 심장혈관질환, 간경변, 여러 가지 암 등 비감염성 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며, 교통사고, 폭력, 자살 등의 치명적 사고를 유발함
- 해로운 음주는 음주자의 연령, 성별, 기타 생물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음주상황에 따라 다르며, 고위험 또는 취약집단 및 개인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침
- 음주관련 폐해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개입들이 비용·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충분하나 정책대안들이 분절적인 경우가 많아서 효과적인 대응이 부족함

○ 목적

- 국제사회의 해로운 음주감소를 위해 국가, 지역사무소, 세계수준의 건강정책을 지원하고 활동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영역

- 10가지 권고 목표영역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정책대안과 개입을 제시함

연번	목표영역	연번	목표영역
1	리더십, 인식과 헌신	6	주류마케팅
2	보건서비스 분야의 대책	7	가격정책
3	지역사회 활동	8	음주와 알코올 독성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감소
4	음주운전관련 정책과 대책	9	불법 및 비공식적으로 생산된 알코올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감소
5	알코올 이용가능성	10	모니터링과 감시체계

○ 활동

- 세계 160여개 국가에서 각국의 법률과 환경에 따라 전략을 추진함

○ 관련자료

- WHO(2010), Global strategy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alcohol
- WHO(2011, 2014, 2018),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4) 세계보건기구(WHO), 음주폐해예방 및 감소를 위한 실행전략(SAFER)⁹¹⁾⁹²⁾

○ SAFER는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각 국가에서 시행해야 할 다섯 가지 전략임

그림 4 WHO SAFER



○ 이러한 전략 수행 시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의 삶을 구할 수 있음
- 1달러 투입으로 9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해로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으로부터 수십억 명을 보호할 수 있음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함

나. 국내정책

(1) 주류관련 정책

- 우리나라의 주류관련 정책은 제품, 유통, 세금, 건강, 안전, 식품 등 각 부처의 목적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주류산업관리) 주류 세금징수, 제조·판매 면허관리, 지방경제 육성, 농산물 수급 정책 등은 주세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관리됨
 - (음주폐해예방) 주류광고 규제 및 경고문구 표기, 음주운전 금지, 청소년 판매금지, 주류 안전관리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도로교통법,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등에 의해 관리됨

표 3 주류 관련 주요 법률 현황

소관부처	법령	내용
기획재정부, 국세청	주세법	주세징수, 주류제조·판매 면허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제조 및 판매촉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규제, 주류 경고문구 표기, 금주구역
경찰청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주류판매 및 이용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주류 안전관리
교육부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등급 표기
	방송법	주류 가상·간접 광고 금지

(2) 음주폐해예방 및 알코올 중독관리

- 보건복지부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과 중독자의 조기발견·치료·재활 및 복귀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함
- 음주폐해예방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국 보건소 등에서 모니터링, 과음 경고문구 표기, 금주구역 지정·관리, 절주사업 등 환경조성과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함
- 알코올 중독자의 조기발견·치료·재활 및 복귀지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함

표 4 음주폐해예방과 알코올 중독관리를 위한 주요사업 및 실행기관

사업명	실행기관	주요활동
음주폐해예방 및 정신건강	보건복지부	○ 음주폐해예방 정책 및 사업총괄 ○ 정신건강증진 정책 및 사업총괄
음주폐해예방 정책기획 및 사업개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정책개발 및 연구 ○ 사업매뉴얼 개발 등
주류광고 모니터링	보건복지부(위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수행)	○ 주류광고 모니터링 ○ 미디어 활동 모니터링
절주교육	보건복지부(위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수행)	○ 절주 전문강사 양성·관리·운영 ○ 음주폐해예방 교육콘텐츠 개발
학교금주교육사업	보건복지부(위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수행)	○ 청소년 대상 음주예방교육 수행 ○ 학교 금주교육 콘텐츠 개발
음주폐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보건복지부(위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수행)	○ 연간 홍보 및 캠페인 ○ 홍보 콘텐츠 개발 ○ 음주폐해예방의 달 캠페인
절주서포터즈 운영지원	보건복지부(위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수행)	○ 절주서포터즈 모집·관리·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음주폐해예방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 음주조장환경 개선 ○ 금주구역 지정·운영 ○ 음주폐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 ○ 조기선별 및 상담의뢰
지역사회 통합중독관리사업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중독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II

국가 음주폐해예방사업 현황

1 2023년 추진방향

가. 목적

- 성인의 절주와 청소년, 임산부 금주를 통한 음주폐해 예방
- 주류 접근성 제한, 과도한 주류광고 및 미디어 노출 제한 등 음주조장환경 개선

나. 목표

- 2030년까지 성인 고위험음주율, 중·고등학생 현재음주율 등 대상별 음주행태 개선
-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기준 강화 등 음주조장환경 개선

표 5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인 고위험 음주율과 중·고등학생 현재음주율 목표

성인 고위험 음주율 감소	2020년	2030년 목표
성인남자	19.0%	17.8%
성인여자	5.1%	7.3%
중·고등학생 현재음주율 감소	2020년	2030년 목표
남학생	17.3%	15.1%
여학생	11.4%	13.7%

* 자세한 세부지표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절주분야 목표 참조

다. 추진전략

- 지역사회 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
 - 고위험 음주 감소와 절주실천을 위한 홍보
 - 청소년 금주를 위한 홍보
 - 인구집단별 고위험음주예방 교육 및 상담
- 음주문제예방(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 지원)
 - 보건소, 직장, 민간전문단체의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 지원
- 음주조장환경 개선
 -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단속 강화
 - 공공장소 음주제한
 - 주류광고/음주장면 등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운영 및 제재조치
 -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 모니터링 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지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 개선
 - 인력 교육훈련 양성체계 구축
 - 국제협력 및 정책개발
 - 공공장소 음주 실태 및 주류광고 규제 모니터링 조사
 - 거버넌스 구축

그림 5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인 고위험 음주율과 중·고등학생 현재음주율 목표



2 국가 음주폐해예방사업

가.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1) 사업목적

- 위법 혹은 과도한 주류 광고·판촉·후원 등의 활동을 모니터링·개선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를 구축하고 음주조장환경을 개선함
 - 주류업계의 과도한 광고 및 마케팅 활동 방지
 - 드라마, 예능 등 과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미디어 활동 예방
 - 과음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이행 모니터링

(2) 사업내용

- 주류광고 모니터링 및 조치(방송·인쇄·통신·옥외매체)
- 드라마, 예능 등 방송을 통한 과도한 음주장면 모니터링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7).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참고
- 주류 과음경고문구 표기 이행 모니터링
-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근거구축 및 민·관·학 협력체계 마련

(3)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 주류광고 모니터링
 -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제28조(보고·검사) 1항, 제31조의2(벌칙) 제1호 (공포 20.12.29., 시행 21.06.3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주류광고의 기준)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주류),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 제43조의2(방송광고 시간의 제한) 제1항 제1호

○ 과음 경고문구 모니터링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4항, 제6항, 제31조의2(벌칙) 제2호 (공포 20.12.29., 시행 21.06.3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별표1의2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63호,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4) 주요내용

○ 주류 광고 모니터링 및 조치

① 모니터링 기준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로 변경 (공포 20.12.29., 시행 21.06.3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별표 1] 주류광고의 기준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43조, 제43조의2 제1항 1호

② 위반조치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광고내용 변경 혹은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31조의2(벌칙)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포 20.12.29., 시행 21.06.30.)

표 6 주류 광고 모니터링 주요 기준

구분	내용	법적 근거
표현 기준 위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시행령 별표 주류광고의 기준 1호, 심의규정 제33조제1항1호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2항5호, 심의규정 제33조제1항4호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심의규정 제33조제1항3호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근심, 걱정 해소)이 된다는 표현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2항5호, 심의규정 제33조제1항 4의2호
	운전이나 작업 중에(높은 경각심을 요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2항3호, 심의규정 제33조제1항5호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는 표현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2항2호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2항2호, 심의규정 제33조제2항
	음주가 사회적 성공에 필요하다고 암시하는 표현	심의규정 제33조제1항2호
형식 기준 위반	방송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 가. 텔레비전방송광고, 데이터방송광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 광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광고 : 07:00 ~ 22:00 나. 라디오 방송광고 : 17:00 ~ 익일 08:00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 그램 전후	시행령 별표 주류광고의 기준 4호, 심의규정 제43조의2제1항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간판을 이용하여 7시부터 22시까지 동영상 광고를 금지	시행령 별표 주류광고의 기준 7호
	제품 명칭, 음주 권장내용이 포함된 광고노래 방송	시행령 별표 주류광고의 기준 3호, 심의규정 제33조제3항
	경품·금품 제공(모든 광고) 및 할인판매(방송광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2항1호, 심의규정 제33조제3항
	알코올분 17도 이상 방송광고	시행령 별표 주류광고의 기준 2호, 심의규정 제43조제2항13호
	경고문구를 용기 혹은 하단에 미표기한 제품광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2항4호
	경고문구를 방송광고에 명확하게 고지	심의규정 제33조제5항
	미성년자 관람 영화 상영 전 광고 금지	시행령 별표 주류광고의 기준 5호
시설·장소 기준 위반	가.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 나.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 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시행령 별표 주류광고의 기준 6호

〈개정 : 국민건강증진법 2020.12.29., 동법 시행령 2021.06.15.〉

참고자료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주류광고 관련 개정 내용

구분		내용
광고주체	신설	- 주류광고 주체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로 명시
광고표현	신설	- 직접적,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는 표현 금지
	변경	-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 금지 ※ (기존) 음주가 체력, 운동 능력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치료, 정신건강 도움 표현 금지 → (변경) 음주가 체력, 운동 능력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치료, 정신건강 도움 등 국민 건강 관련 검증되지 않은 표현 금지
	유지	-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 및 경품을 제공한다는 표현 금지 - 임신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금지 -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금지 - 음주행위 미화 표현 금지
광고제한 매체	신설	-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 금지)
	변경	-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 방송매체 추가 ※ (기존) TV → (변경) TV, 데이터방송, IPTV, DMB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서의 주류광고 금지 확대 ※ (기존) 도시철도 역사, 차량의 동영상 광고, 스크린도어 주류광고 금지 → (변경)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 택시, 택시대기구역 등 주류광고 금지
	유지	- 라디오 17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광고 및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방송광고 금지 -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이상 관람가 영화의 시작 전과 종료 후에 주류광고 금지
행사후원	신설	-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 금지
광고노래	변경	- 주류광고 노래 사용 금지 확대 ※ (기존) 방송금지 → (변경) 모든 매체 사용금지
경고문구	변경	- 주류광고 내 경고문구 표기 대상 확대 ※ (기존) 주류용기가 등장하는 주류광고에 표기 → (변경) 모든 주류광고에 표기
도수제한	유지	-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 방송광고 금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2020.12.29., 동법 시행령 2021.06.15.)

③ 주요 위반사례

-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위반사례는 ‘방송광고시간 위반’과 ‘경품제공 광고’임
- (방송광고시간 위반) 주류의 TV 방송광고는 ‘7시~22시까지’ 금지
- (경품제공 광고) 주류판매 촉진을 위해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 금지

그림 6 주류광고 경품제공 사례 : 경품, 캐시백 등

▲ 제1호(경품 및 금품 제공) 위반사례 : 통신광고

위반내용 주류 구매 시 구매비용 일부 캐시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청요청(광고식제) 조치 (2020)

▲ 제1호(경품 및 금품 제공) 위반사례 : 통신광고

위반내용 주류회사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참여 시 경품 증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청요청(광고식제) 조치 (2020)

▲ 제1호(경품 및 금품 제공) 위반사례 : 통신광고

위반내용 주류구매 시 1박스 지원한다는 내용 포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청요청(광고식제) 조치 (2020)

▲ 제1호(경품 및 금품 제공) 위반사례 : 통신광고

위반내용 주류에 대한 스토리 당첨 이벤트 등으로 시청자 유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청요청(광고식제) 조치 (2020)

○ 주류 과음경고문구 이행 모니터링

① 모니터링 기준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과음 경고문구 표시방법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1의2〉

- 표기방법
 - 사각형 선 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글자 크기
 - 상표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크기
 - 최소크기
 - 용기용량이 300밀리리터 미만 7포인트 이상
 - 용기용량이 300밀리리터 이상 9포인트 이상
- 색상 : 상표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가 있는 선명한 색
- 글자체 : 고딕체
- 표시위치 : 상표에 표기할 경우 상표의 하단, 스티커를 사용할 경우 상표 밑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63호(2018.12.10.)〉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② 위반조치

-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벌칙)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 변경(2021.06.30.)

표 7 과음경고문구 표기 위반사례

적법한 표기안	표기방법 위반(글자크기)
	○ 상표(8cm*8.5cm)의 1/10면적은 6.8cm ² 이나 표시 크기는 4cm ² 로 1/10 미만임
	
표기방법 위반(사각형 선, 색상, 표시위치)	표기내용 위반
○ 표기방법 : 사각형 선 위반 ○ 색상 : 상표도안과 보색관계 위반 ○ 표시위치 : 상표 하단에 미표기	○ 경고문구 외 다른 문장 덧붙임

* 자세한 사항은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기 기준 안내서 참고

나.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1) 사업목적

- 보건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음주 조장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2) 사업내용

- 지역사회 환경조성 및 제도개선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찰서, 주민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 대학 및 지역축제, 주점 밀집지역, 주류 판매점 등 과도하고 불법적인 주류광고 및 마케팅 활동 모니터링
 - 지역 내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환경조성
- 절주교육
 -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배달 및 온라인 판매 주의사항 등
 - 음식점 내 과도한 주류판매 개선
 - 청소년 및 임산부 금주교육
 - 성인(대학생, 직장인,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절주교육
- 홍보 및 캠페인
 - 지역 방송 및 인쇄매체, 온라인 매체, 옥외광고 등 활용
 - 경찰서, 대학생 절주 서포터즈 등 유관 부서, 기관, 단체와 연계
 - 음주폐해예방의 달 캠페인(매년 11월) 등
- 단기개입 및 연계
 - 건강증진 및 질환관리를 위한 절주(또는 금주) 상담
 - 고위험음주자 및 알코올사용장애추정군 선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상담·치료·재활·복귀 연계

다. 음주폐해예방 홍보

(1) 사업목적

- 음주폐해 심각성에 대한 정확하고 비판적인 인식 제고
-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통한 절주생활 실천 유도

(2) 사업내용

- 온라인 홍보 활동
 - 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음주폐해예방 대국민 홍보
 - 절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알코올 및 음주폐해 관련 정보 제공·확산
- * 절주는 홈페이지(<https://www.khepi.or.kr/alcoholstop>)
- 오프라인 홍보 활동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활용자료 개발 및 제공
 - 지역사회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음주폐해예방 캠페인 운영
- 음주폐해예방의 달(11월)
 - 매년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알리기 위한 기념식 및 캠페인 실시
 - 음주폐해예방 및 절주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 포상
 -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유관단체 등과 연계한 전국 캠페인 및 심포지엄 운영 등

라. 절주서포터즈 운영

(1) 사업목적

- 대학생 및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잘못된 음주 인식 개선
 - * 19-70세 이상 중 19-29세 44.8%, 30-39세 46.3%로 월간폭음률이 높았고, 70세 미만 남성의 경우 평균 절반 이상, 여성의 경우 23.5%로 높은 편임(2020년 기준)
- 절주서포터즈 활동 강화를 통한 절주메시지 확산 및 절주문화 조성

(2) 사업내용

- 절주서포터즈 선정
 - 전국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모집 및 선정
 - 절주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절주서포터즈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절주서포터즈 활동 수행 * 절주서포터즈 활동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음주폐해예방 정책 홍보 활동 수행
 - (콘텐츠 기획 제작) 온라인 캠페인, 미디어 음주장면 모니터링, SNS·지역사회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결과, 절주 관련 콘텐츠 제작
 - *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타 서포터즈(금연 등) 등과 연계
 - (콘텐츠 확산) 절주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를 팀 SNS에 게시하여 절주문화 조성 홍보 및 활동 확산
 - (캠페인) 캠퍼스, 지역사회 내 온·오프라인 캠페인 홍보
- 절주서포터즈 사무국 운영
 - 절주서포터즈와 사무국간 의사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 원활한 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지원
 - 활동보고서 검토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 수여
- 절주서포터즈 우수사례 선정 및 확산
 - 우수 절주서포터즈 선정 및 시상 *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연계하여 시상
 - 절주서포터즈 활동 사례집 발간 및 확산

마. 절주교육

(1)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음주폐해예방 문화를 확산할 교육인프라(콘텐츠, 전문인력, 교육시스템) 구축 및 교육운영

(2) 사업내용

- 음주폐해예방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확산
- 절주전문인력(강사) 양성
- 절주전문인력(강사)를 통한 대국민 교육 운영

(3) 교육방법

- 절주 전문인력 기초양성과정 운영
 - (교육대상) 음주폐해예방 및 건강증진 관련 종사자 등
 - (교육일정) 2023년 6~7월 중(예정, 추후 세부일정 공지) * 추후 공지
 - (신청방법) 절주온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신청서 접수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절주전문인력 양성 기초과정 커리큘럼

차시	구분	교육명	교육내용	시간
1	총론	음주에 대한 이해	• 술의 특성 및 종류, 표준잔	30분
2			• 우리나라 음주문화 및 행동	30분
3	사회 경제	음주와 사회경제적 부담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40분
4			• 가정·경제·사회적 피해	40분
5	건강	음주와 신체건강	• 음주와 신체반응	40분
6			• 음주와 각종 신체질환과의 관계	40분
7		음주와 정신건강	• 음주와 정신건강	40분
8			• 알코올 사용장애(알코올 중독의 개념)	40분
9		음주와 뇌	• 뇌의 기능과 구조, 신경전달물질의 이해	40분
10			• 음주와 뇌생리학적 기전	40분
11	정책	국내외 음주폐해예방정책	• 해외 음주폐해예방 정책	40분
12			• 국내 음주폐해예방 정책	40분
13	사업	절주교육 사업안내 및 콘텐츠 활용법	• 절주교육 사업 및 전문인력 활동안내 • 교육콘텐츠 활용	20분
총 교육시간				8시간

○ 절주 전문인력 양성 심화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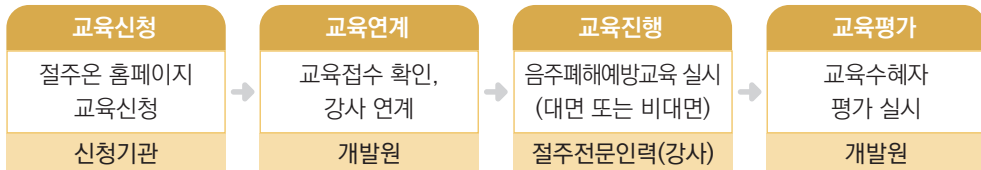
- (교육대상) 2020~23년 기초과정 교육수료자 * 격년단위 실시
- (교육일정) 절주 전문인력 양성 기초과정 운영 후(추후 세부일정 공지)
- (신청방법) 절주온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신청서 접수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절주전문인력 양성 심화과정 커리큘럼(안)

차시	구분	교육명	교육내용	시간
1	사업	음주폐해예방 관리	• 음주폐해예방에 대한 이해	30분
2			• 음주조장환경과 절주의 필요성	30분
3	정책	주류광고·마케팅에 대한 이해	• 주류회사의 마케팅 전략	30분
4			• 주류마케팅 노출로부터의 정책과 가이드라인	30분
5	제도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음주관련 최신 법·제도 개정내용	30분
6			• 전문인력으로서 음주폐해예방활동의 운영	30분
총 교육시간				3시간

○ 대국민 교육 운영 지원

- (교육대상) 전국민(학교, 군부대, 사업장, 보건·복지기관 등)
- (교육일정) 연중
- (신청방법) 절주온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신청
- (교육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 (교육내용) 음주(술)에 대한 이해와 음주 후 몸의 변화·대사과정, 음주로 인한 신체·가족·사회에 미치는 영향, 절주(금주)의 의미와 생활 속 실천수칙, 음주 수준 진단

바. 학교금주교육

(1)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술은 청소년 유해물질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32.9%가 음주 경험이 있음(2021년 기준)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처음 음주 시작 연령 13.2세

(2)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음주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 초·중·고등학생 등 교육 수혜자 대상 요구도 조사
- 초·중·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아동·청소년 음주예방교육 확산체계 구축을 통한 수혜자 확대

- 시·도 교육청 연계를 통한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홍보
- 시기별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음주예방교육 기획·운영

사. 지역사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참조

(1) 사업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 중독문제가 있는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2) 설치·운영

- 16개 시·도 50개 지역 설치·운영(2022년)

(3) 사업내용

- 기본적 중독관리사업
 - 중독 조기발견 및 단기개입 서비스사업
 - 중독질환 관리사업
 -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 중독예방 및 교육사업
 -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
 - 지역진단 및 기획
-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 유관기관 역량 지원
 - 사례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2부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 I. 개요
- II. 내용 및 방법
- III. 행정사항

I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지역사회 음주조장환경 개선과 절주문화 확산을 통한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
-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나. 사업대상

- 청소년, 대학생, 임산부, 직장인, 일반성인, 취약계층 등
- 지역사회 주류 제조 및 판매 등 관계자
- 지역사회 음주폐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

다. 사업목표

- 지역사회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 감소
- 지역사회 청소년의 현재음주율 감소

*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아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절주분야 목표>에 따라 사업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라. 주요사업

-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제도개선
- 생애주기별 음주폐해예방 교육
- 음주폐해예방 홍보 및 캠페인
- 지역사회 음주자 및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 단기개입 및 연계

그림 7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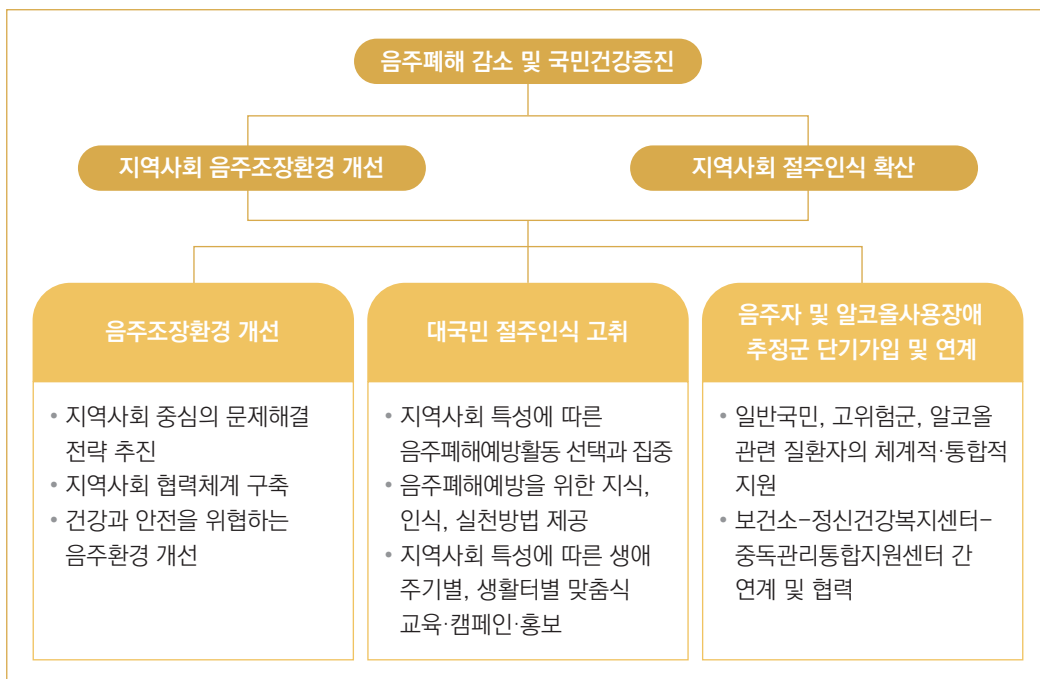


표 8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절주분야 목표

목표	지표명	2030년 목표
국가알코올소비량을 감소시킨다.	성인 남자 월간음주율(표준화) 감소	66.9%
	성인 여자 월간음주율(표준화) 감소	49.0%
	청소년 남학생 현재음주율 감소	15.1%
	청소년 여학생 현재음주율 감소	13.7%
	청소년 남학생 처음음주경험 연령 연기	14.0세
	청소년 여학생 처음음주경험 연령 연기	14.2세
위험음주행동을 감소시킨다.	성인 남자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표준화) 감소 -대표지표	17.8%
	성인 여자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표준화) 감소 -대표지표	7.3%
	중고등학교 남학생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 감소	45.4%
	중고등학교 여학생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 감소	55.2%
고위험계층의 위험음주행위를 낮춘다.	소득 1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연령 표준화)	17.6%
	소득 5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연령 표준화)	16.9%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0.7%p
	소득 1분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연령 표준화)	5.5%
	소득 5분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연령 표준화)	4.3%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1.2%p
음주관련 폐해를 감소시킨다.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감소	5.6%
	음주운전사고 발생률(15세 이상 인구 10만 명 당) 감소	5.6%
	음주관련 사망률(19세 이상 인구 10만 명 당) 감소	8.5명
	음주관련 폭력 비율 감소	19.4%
음주조장환경을 개선한다.	중고등학생 현재 음주자의 주류구매용이성 감소	25.6%
	주류광고 기준 위반율 감소	0.1%
	공공장소 금주구역 조례 지정 기초 지자체 수	130개소

2 추진체계

가. 보건복지부

- 국가 음주폐해예방사업의 종합적 계획 수립·조정·평가
- 국가 음주폐해예방 정책 및 사업 추진
 -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입법, 홍보, 사업, 연구 등 추진
 -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평가 등

나. 광역자치단체(시·도)

- 시·도 음주폐해예방사업 계획수립 및 조정
- 시·도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
- 시·도 음주폐해예방 홍보 및 사업추진
- 시·군·구 음주폐해예방사업 지원 및 평가 등

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시·군·구 음주폐해예방사업 계획수립 및 수행
- 시·군·구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
- 시·군·구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지침 및 매뉴얼 개발·공급
-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 음주폐해예방 정책 및 사업의 근거 구축·연구
-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 절주서포터즈 운영지원
- 음주폐해예방의 달 및 캠페인
- 절주교육
- 학교금주교육

마.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인력교육 총괄
 -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실시 및 교육이수 실적관리
 - 중앙 및 시도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운영
 -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협의체 운영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지원 등

바. 사회보장정보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성과관리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실시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성능보장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에서 저장·관리되는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 보안관리 등

사.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지역사회 여건분석을 통해 시도 정책방향 설정지원
- 시·도 및 시·군·구 계획수립 지원 및 계획서 종합검토
- 시·군·구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지원
- 시·군·구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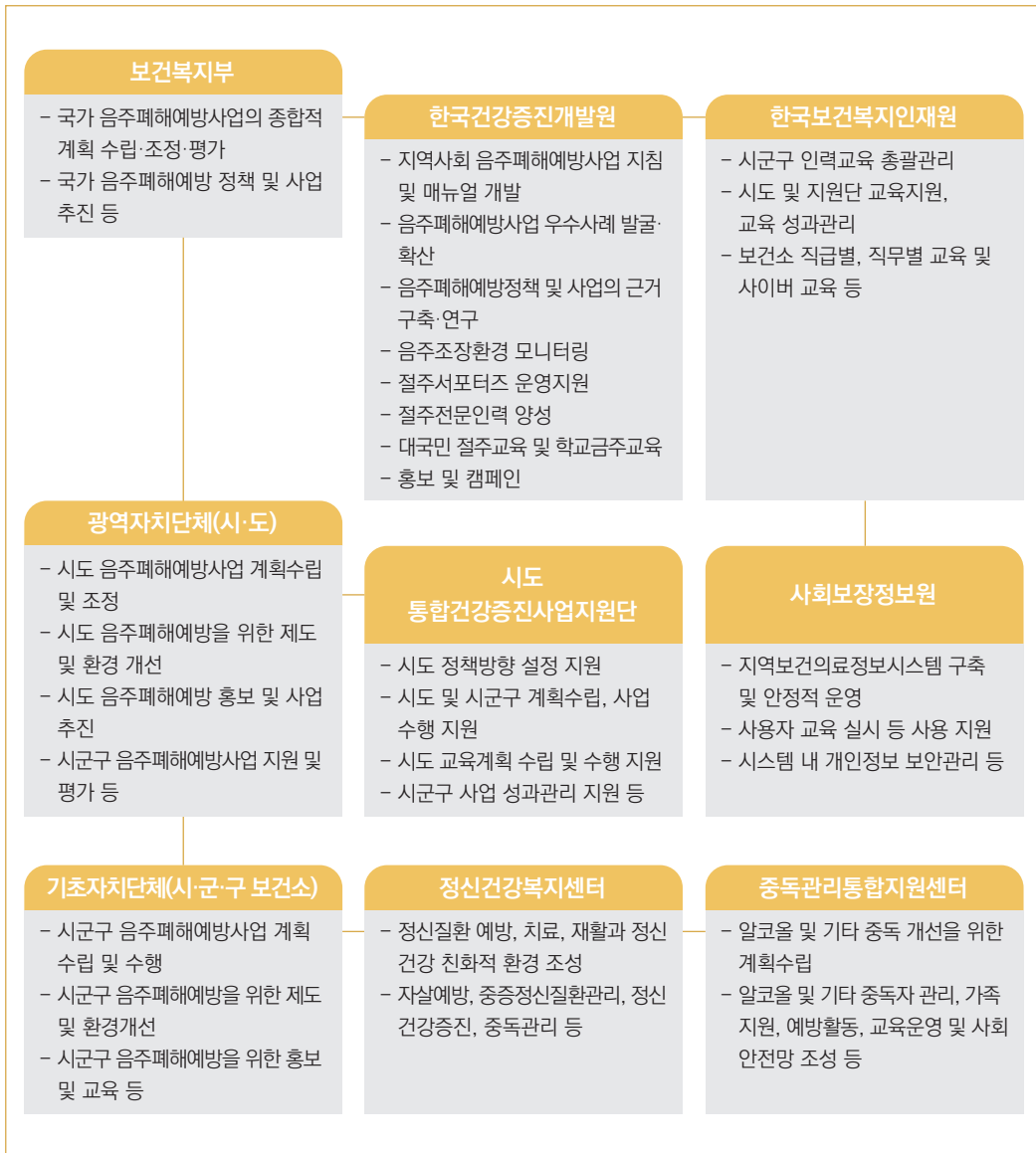
아.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 자살예방, 중증정신질환관리, 정신건강증진, 중독관리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

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지역사회 알코올 및 기타 중독(마약, 온라인 매체 게임, 도박 등)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수행
- 지역사회 알코올·기타 중독자관리·가족지원·예방활동·교육운영 및 사회안전망 조성 등

그림 8 사업추진체계도



II

내용 및 방법

1 환경조성 및 제도개선

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1) 목적

- 음주는 건강뿐만 아니라 폭력,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 사건·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음주폐해를 예방함

(2) 협력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찰서, 사회복지단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지역 내 주민단체(상인회, 반사회 등), 언론사 등

(3) 내용

- 지역사회 내 전문가 자원 및 유관기관·단체와 정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건강, 안전, 복지, 교육, 생활,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
- 음주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에 캠페인 및 교육활동 강화
 - 연말연시, 지역행사 및 축제기간 등 음주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에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활동 강화

나.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지역사회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가이드」 참조

(1) 목적

- 지역사회 내에 위법 혹은 과도한 주류 광고·판촉·후원 등을 모니터링 및 개선
- 지역사회 내 잘못 표기된 과음 경고문구 등을 모니터링 및 개선
- 음주조장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절주문화를 확산함

(2)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제28조(보고·검사) 1항, 제31조의2(벌칙) 제1호(신설 20.12.29., 시행 21.06.3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주류광고의 기준) 별표1(주류광고의 기준) (개정 2021.06.15. 시행 21.06.30)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제4항, 제6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제1항, 제2항 별표1의2(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4호 가목(청소년유해약물),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3) 방향

지역진단	우선순위 설정	모니터링 및 개선
- 도시유형, 인구, 음주관련지표, 주류회사 여부, 음주관련 사건 사고 등	- 대학교, 교육환경정화구역, 주류 회사 및 주점 밀집도 등 - 지역 특성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의 우선순위 설정	- 대상별 모니터링 정착 및 제도 보완·교육 등을 통한 개선

(4) 모니터링 대상

- 지역 대학 및 축제의 주류광고
-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청소년 이용시설 인근 음주실태 및 주류광고
- 주점 밀집지역, 공공장소 등의 음주실태 및 주류광고
- 지역사회 내 생산·유통되는 주류 과음경고문구
- 그 밖에 주류 판매점 등의 주류광고

(5) 내용

- 공공장소 음주행위 및 폐해 현황 파악 및 문제 진단
- 주류판매점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표시 여부 및 청소년 주류 판매 점검 및 제도
- 지역사회 주류광고 및 과음 경고문구 표기 실태 점검 및 문제 진단
 - * 과음 경고문구 표기위반은 지역 내 생산되는 주류를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개선함
 - **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기준 안내서>,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기 기준 안내서> 참고(<https://www.khepi.or.kr/alcoholstop>에 게시)
- 위법 혹은 과도한 주류광고, 위법한 과음 경고문구 표기 개선 요구
-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파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내·교육·협조요청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류광고 개선안내 : 주류 판매인 대상(예시)

- 본 지역에는 ○○○ 초·중·고등학교의 인근으로 우리지역 아이들의 통학로입니다.
- 아이들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지나치게 광고할 경우 아이들의 음주욕구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 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 판매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판매점 내에서 술과 일반 음료는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진열해주세요.
-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주류광고는 자제해주세요.

대학교 음주폐해예방 안내(예시)

- 매년 신학기에 대학생 과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해 학교 행사 및 모임 등에서 과음과 음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 바랍니다.

〈대학교 음주폐해 주요사례〉

- 대학 MT, 모임에서 음주 후 성희롱, 성폭행, 신입생 사망 등의 사건사고 발생사례¹³⁻¹⁶⁾
 - MT, 학과모임 등에서 음주 후 성희롱, 강제추행 사례
 - 오리엔테이션, 개강파티에서 음주 후 손가락 절단, 추락사 등 사고발생 등
- 2017년 2월 ○○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총학생회가 소주 약 8천병 구매사례¹⁷⁾
 - 1,700명이 참여하는 오리엔테이션에 8천병의 소주와 160상자 맥주 구매
 - 1인 기준 소주 4~5병을 마실 수 있는 양
- 대학 학생회에서 주류회사 후원, 주점운영,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등이 문제로 제기된 사례¹⁸⁻²⁰⁾
 - 지역 내 주류회사가 술 할인 혹은 무상제공, 회식후원, 금품제공 등 학생회를 불법 후원함
 - 대학생들은 관행적으로 받아온 후원이라 해명
 - 주류회사는 잠재적인 주요 고객인 젊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과음을 부추김
 - 대학축제 연예인 초청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주류회사의 과도한 후원 받음
 - 대학생들이 주점을 운영해서 과음을 부추김
 - 학교축제의 주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등

과음 경고문구 표기 개선안내 : 주류 생산자 대상(예시)

-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일부가 2018년 12월에 변경되었습니다.
 -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3호(2018.12.10.)
-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제조·수입되는 모든 주류용기에 변경된 과음 경고문구가 표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또한, 과음 경고문구 표기 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1의2],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12. 3.〉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제4조제2항 관련)

1. 표기방법 :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글자의 크기 등
 - 가. 경고문구는 판매용 용기에 부착되거나 새겨진 상표 또는 경고문구가 표시된 스티커에 상표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 나. 글자의 크기는 상표에 사용된 활자의 크기로 하되, 그 최소크기는 다음과 같다.
 - (1)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 7포인트 이상
 - (2)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이상인 경우 : 9포인트 이상
3. 색상 : 경고문구의 색상은 상표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 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밀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 지역사회 절주환경 조성

(1) 목적

-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감소와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을 조성함

(2) 방법

- 지역사회 특화사업 및 지자체 조례제정 등

(3) 대상

-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 유아·아동·청소년 이용시설
- 음주폐해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 등

(4) 내용

-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
 - 요일, 시간 등의 조건을 활용하여 금주구역을 지정·관리
 -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장소를 관리
- 청소년 보호 판매점(편의점) 확산
 -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주류진열 분리, 주류광고 노출제한 등 주류로부터 청소년 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판매점 지정·확산
- 주류 판매점(식당, 주점 등)의 절주캠페인 확산
 - 1인 주류 구매량 제한, 주류 판매 요일 및 시간제한, 절주 가이드라인 확산 등 성인의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고 건전한 상가문화 조성을 실시하는 판매점(예 : 절주서포터 음식점) 지정·운영·확산
- 그 밖에 지역사회 절주환경 조성사업 등

2 교육 및 상담

가. 음주폐해예방 교육

(1) 목적

- 지역주민에게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규범과 인식 변화를 유도함
-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 활동의 지지기반을 구축함
- 가정 및 지역사회 내 음주조장환경을 개선함
- 지역주민의 생활 속 절주 실천을 유도하여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함

(2) 방향

지역진단	대상 설정	교육 실시
- 생애주기별 음주 문제 및 현황 파악	- 청소년, 대학생, 성인, 임산부, 직장인, 노인, 판매인, 학부모 등 지역 현황에 따른 교육 대상의 우선순위 설정	-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및 환경 개선

(3) 대상

- 금주교육 : 청소년 및 임산부
- 절주교육 : 대학생, 직장인, 노인 등 성인
- 음주환경 개선교육 : 판매인, 학부모 등

* 각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은 3부. 활용자료 참고

(4) 내용

- 지역사회 진단과 교육대상의 요구도 및 역량분석
 - 지역사회의 인구·지형·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음주문제의 우선순위 도출함
 - * 예 : 고령, 관광지, 취약계층 지역 특성별 음주율, 주취 사건사고, 음주운전 등
 - 우선순위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특성을 파악함

- 지역사회 주민의 음주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방법 및 프로그램을 기획함
 - 교육의 목적, 목표, 과업을 설정함
 - 교육의 논리적 체계와 절차를 개발함
 - 교육의 중재 전략과 평가 방법을 기획함
 - 교육을 지지하고 도와줄 물적/인적 자원을 모집함
-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특성에 맞게 내용 및 방법을 구성함
 -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여 음주에 대한 의사결정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함
 - 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라 음주에 취약한 대상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 음주로 인한 직·간접 폐해를 알려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함
 - 음주를 조장하는 생활터 및 지역사회의 요인을 알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활동으로 내용을 구성함
 - 주류판매자 및 학부모 등 청소년과 밀접한 성인에게 술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알림
- 단독 진행 혹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다른 건강문제와 연계하여 진행함
-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학교, 주류판매와 관련한 업종단체 등),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함

나. 단기개입을 적용한 절주 상담

* 절주온 홈페이지(<https://www.khepi.or.kr/alcoholstop>) <절주상담 가이드> 참조

(1) 목적

- 지역주민에게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규범과 인식 변화를 유도함
- 지역주민의 생활 속 절주 실천을 유도하여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함
- 지역주민의 알코올 문제를 조기 선별하여 음주폐해를 예방·감소시킴

(2) 대상

- 보건소 내소자
- 건강생활실천 교육, 홍보·캠페인, 상담 시 만나는 지역주민

(3) 내용

- 보건소 내소자 및 음주폐해예방 캠페인·홍보·교육활동 시 만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음주습관의 위험수준을 진단함
- 건강증진 및 질환관리를 위한 절주(또는 금주)의 필요성을 교육·상담(단기개입)함
- 단독 진행 혹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다른 건강문제와 연계하여 진행함
- 대상자의 요구가 있다면 보건소 내 전문부서 또는 지역사회 내 관련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진단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참고자료 단기개입¹⁾

○ 단기개입 정의

- 단기개입을 통한 절주상담은 내담자의 음주습관을 진단하여 짧고 구조화된 대화를 통해 대상자 스스로가 음주행동변화를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하는 기법임
- 단기개입은 심각한 알코올중독 상태나 알코올에 이미 의존된 대상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닌 문제음주군, 알코올남용군이 간단한 중재를 통해 알코올 중독이나 의존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임

○ 단기개입 단계

- 단기개입은 단기충고, 단기개입, 집중단기개입으로 구분함
- ※ 단기개입 횟수는 1회부터 최대 3~5회로 구성되며 시간도 5분 동안 간단한 정보나 충고를 제공하는 것부터 동기면담에 근거해 30~60분까지 다양함

단기충고	단기개입	집중(확장된) 단기개입
- 선별검사 - 피드백 및 부가정보 제공 - 1회(~5분)	- 선별검사 - 피드백 및 부가정보 제공, 공감과 동기면담 - 1회 또는 1회 이상(5~15분)	- 선별검사 - 피드백 및 부가정보 제공, 동기면담 - 1회 또는 1회 이상(20~30분)

[그림] 대상자 관리 프로세스

1) 절주상담 가이드(2019),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3 홍보 및 캠페인

가. 연중 홍보·캠페인

(1) 목적

- 지역사회에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술과 음주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주기적·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음주폐해를 예방함

(2) 대상

- 지역주민, 상인, 청소년, 직장인 등

(3) 내용

- 연중 음주폐해와 술과 음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 홍보·캠페인 주제는 중앙 및 시도와 함께 하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진행함
 -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규범과 인식을 변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함
 -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요인을 알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함
 - 지역진단 및 주민 요구도를 고려하되 생활터별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함
- 지역 특성에 따라 효과가 높은 홍보매체를 활용함
 - 방송매체 : 지역 TV, 라디오 등
 - 인쇄매체 : 신문, 잡지, 리플릿, 포스터, 소책자 등
 - 온라인 매체 : 웹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등
 - 기타 : 현수막, 전광판, 옥외광고, 배너·패널·전시, 버스·지하철 광고 등
- 음주문제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 또는 건강관련 기념일과 연계하여 추진함
 - 음주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 : 연말연시, 휴가철, 대학 및 지역축제 기간 등
 - 건강관련 기념일 : 음주폐해예방의 달, 보건의 날, 정신건강의 날 등
- 절주서포터즈, 유관부서 및 기관, 지역주민 등과 연계하여 추진함
 - 절주서포터즈 : 매년 초 선정되는 보건복지부 절주서포터즈와 연계함
 - 유관부서 및 기관 : 금연, 영양, 정신 등 유관부서 및 기관과 연계함
 - 지역주민 : 반사회, 상인회, 지역 내 자체 서포터즈 등과 동참함

나. 음주폐해예방의 달 캠페인(매년 11월)

(1) 목적

- 연말연시에는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11월을 ‘음주폐해예방의 달’로 지정하여 활동함

(2) 대상

- 지역주민, 주류 판매자 등 지역사회 특성과 음주문제를 진단하여 정함

(3) 내용

- 지역사회 내 음주문제 개선을 위한 캠페인 주제를 선정함
- 보건복지부 음주폐해예방의 달 캠페인 연계활동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 경찰서, 보건복지부 절주 서포터즈,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추진함

보건복지부 음주폐해예방의 달 캠페인 및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소책자, 캠페인, 절주서포터즈 등 다양한 정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절주온’ 홈페이지 (<https://www.khepi.or.kr/alcoholstop>)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4 전문기관 연계

(1) 목적

- 지역주민의 알코올 문제를 조기에 선별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음주폐해를 감소 시킴

(2) 대상

- 보건소 내소자 또는 건강생활실천 교육, 홍보·캠페인, 상담 시 만나는 지역주민 중 알코올사용장애 의심자

(3) 협력기관

- 보건소 내 건강관련 클리닉, 상담실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4) 내용

- 절주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알코올사용장애 의심자를 발견할 경우 전문기관(정신건강 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등)에 연계함

Ⅲ

행정사항

1 실적보고

가. 보고 시기 및 방법

(1) 보고시기 : 매년 2월말

* 사업현황과 지역사회 실태파악을 위해 보고시기 외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2) 사업기간 : 전년도 1월 ~ 12월

(3) 보고방법 : 공문 시행

○ 실적제출 안내에 따라 실적보고

나. 보고범위 및 내용

* 필요 시, 보고범위 및 내용 일부 변동 가능

(1) 지자체 기본정보

○ 통합건강증진사업 전체 예산 및 음주폐해예방사업 예산, 인력 등

(2) 환경조성 및 제도개선

○ 협력체계 구성, 지역사회 절주환경 조성, 금주구역 지정 현황,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3) 생애주기별 교육(인원 및 횟수)

(4) 상담(단기개입) 및 연계 실적(인원 및 횟수)

(5) 홍보 및 캠페인

○ 절주서포터즈 연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 활동

다. 실적보고 서식

(1) 지자체 기본정보

시도 및 시군구	기관명	투입 인력(명)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천원)	음주폐해예방사업 예산(천원)	
				계획	집행

작성방법

○ 보건소 기본 정보 및 사업 예산, 인력을 작성함

* 기관명 : ○○○ 보건소 또는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사업수행 기관명 기입

(2) 환경조성 및 제도개선

협력기관·단체 명	주요 활동 내용	활동 횟수

작성방법

○ 협력기관·단체별 협력 활동 횟수와 주요 활동 내용을 작성함

* 협력 기관과 연계한 홍보(인쇄, 영상 게재·배포 등) 실적은 송출 수, 인쇄 부수가 아닌 홍보(활동) 횟수로 기입
(인쇄부수, 송출횟수 등을 기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요활동 내역에 기입)

* 예시

협력기관·단체 명	주요 활동 내용	활동 횟수
○○○ 행정복지센터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 송출(500회)	1건

○ 지역사회 절주환경 조성

청소년 보호 판매점 지정 수	절주서포터 음식점 지정 수	기타 환경조성 활동 횟수

작성방법

○ 청소년 보호판매점 지정 :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주류진열 분리, 주류광고 노출 제한 등 주류로부터 청소년 보호활동을 실시하는 판매점으로 지정된 개소수를 작성함

○ 절주서포터 음식점 지정 : 1인 주류 구매량 제한, 주류 판매 요일 및 시간제한 등 성인의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고 건전한 상가문화 조성을 실시하는 판매점으로 지정된 개소수를 작성함

○ 금주구역 지정·운영 현황

1. 조례제정		2. 금주구역 지정							
여부 (○,×)	도시 공원	어린이 공원	기타 공원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놀이시설	버스·택시 정류장	기타
3. 금주구역 운영									
위반자 단속							홍보	표지점검	
단속 횟수	단속 구역 수	적발 인원 수	사후조치		홍보 횟수	표지 점검 횟수			
			시정 횟수	계도·교육 횟수					

작성방법

- 금주구역 지정 : 시설별 지정된 금주구역 수를 작성함
- 도시공원 :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장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조)
 -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5조)
 - 기타공원 :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 이외의 공원
 -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학교시설(초·중등교육법 2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어린이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12조 등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도로교통법 12조)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조 등)
 - 버스·택시 정류장 : 대중교통 정류장 및 택시 정류장
 - 기타 : 상기 명시된 구역 이외의 장소
- 금주구역 운영 : 지역 내 금주구역 지정·운영 현황을 작성함
- 단속 횟수 :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단속한 활동 횟수를 작성함
 - 단속 구역 수 : 단속을 실시한 총 구역 수를 작성함
 - 적발 인원 수 :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된 총 인원 수를 작성함
 - 시정 횟수 : 적발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 횟수를 작성함
 - 계도·교육 횟수 : 적발대상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계도·교육 활동 횟수를 작성함
 - 홍보 횟수 : 금주구역에 대해 주민 또는 이용자 대상 홍보를 실시한 활동 횟수를 작성함
 - 표지 점검 횟수 : 금주구역 내의 금주안내표지의 상태 등을 점검한 횟수를 작성함

○ 주류 판매점(음식점, 소매점 등) 모니터링

1. 청소년 주류 판매 모니터링 현황		
구분	청소년 주류 판매	청소년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점검 횟수		
적발 횟수		
사후 조치	시정 횟수	
	계도·교육 횟수	

2. 주류 판매점 마케팅 모니터링 현황					
주류진열		주류판촉		주류광고 게시	
총 점검 개소수	혼합진열 개소수	총 점검 개소수	판촉 실시 개소수	총 점검 개소수	광고 게시 개소수

작성방법_청소년 주류 판매 모니터링 현황

- 점검 횟수 : 모니터링을 실시한 지점의 수를 작성함
- 적발 횟수 : 모니터링을 실시한 지점 중 적발된 지점의 수를 작성함
- 시정 횟수 : 적발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시정 횟수를 작성함
- 계도·교육 횟수 : 적발대상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계도·교육 활동 횟수를 작성함

작성방법_주류판매점 마케팅 모니터링 현황

- 혼합진열 : 한 냉장고에 주류와 음료가 같이 진열되어 있는 개소수를 작성함
- 주류판촉 : 할인행사, 세트판매, 시음, 경품증정 등의 판촉행사를 시행한 개소수를 작성함
- 주류광고 : 스티커, 포스터, 쇼카드 등 주류광고물을 게시한 개소수를 작성함

(3) 생애주기별 교육

○ 대면 교육 현황

미취학		초중고		대학생		성인		임산부		노인		취약계층		판매자		기타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작성방법

○ 대면 교육을 시행한 대상별 총 교육 횟수, 인원수를 작성함

○ 비대면 교육 현황

미취학		초중고		대학생		성인		임산부		노인		취약계층		판매자		기타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작성방법

○ 비대면 교육을 시행한 대상별 총 교육 횟수, 인원수를 작성함

(4) 상담(단기개입) 및 연계 실적

직접 상담		유관 기관 연계	
상담 횟수	수혜자 수(실인원)	연계기관	연계자 수

작성방법

- 직접 상담 : 보건소 내 건강관련 클리닉, 상담실 등에서 진행한 절주 상담 현황을 작성함
※ 절주 상담(단기개입)을 직접 실시한 경우에 작성함
- 연계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 내 상담센터 또는 병원 등 연계기관명을 작성함

(5) 홍보 및 캠페인

절주 서포터즈 연계 횟수	홍보물 제작·배포 횟수	대중매체 활용홍보 횟수				캠페인	
		방송	인쇄	온라인 매체	기타	음주폐해예방의 달 캠페인 시행여부	지역 캠페인 시행 횟수

작성방법

- 각 홍보 및 캠페인의 시행 횟수를 작성함
 - ※ 예 : 직장인 건전화식문화 조성 캠페인(2회 운영, 50명씩 총 100명 참석) → 실적 2회
 - ※ 예 : 임신부 금주,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리플릿 2종 제작 각 100부 배포 → 실적 2회
- '음주폐해예방의 달' 캠페인은 ○, ×로 표기함

2 직무교육

가. 교육목적

- 지역사회 음주폐해에 대한 이해와 이를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적용하기 위함

나. 교육대상

- 음주폐해예방사업 담당 공무원
- 보건소 내 금연, 영양, 신체활동, 심뇌혈관 사업 등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다. 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https://www.kohi.or.kr/gateway.do>

라. 교육과정 : 음주폐해예방사업과정(사이버교육)

- (정책 및 사업 이해) 음주폐해예방사업 정책과 국내외 동향, 지자체 음주폐해예방사업 운영 등
 - (사업 실무 등) 음주폐해예방사업 기획, 우수사례 등
- * 자세한 교육과정 운영은 운영기관의 계획에 따라 매년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부

활용자료

- I.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안)
- II. 음주폐해의 이론적 근거
- III. 관련통계
- IV. 관련법률
- V. 활용양식 및 자료

I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안)

1 청소년

- 술은 청소년 유해물질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제품임
 - 그러나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술을 사려고 시도한 학생 중 구매할 수 있었던 남학생은 64.1%, 여학생은 62.4%임¹¹⁾
- 우리나라 청소년의 첫 음주경험 연령은 13.2세이며, 전체 청소년의 10.7%가 현재 음주자임
 - 현재 음주자 중 중등도 음주량(남자 소주 5잔, 여자 소주 3잔 이상)을 보이는 위험 음주율은 45.5%로 음주학생의 2명 중 1명이 과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¹¹⁾
- 청소년의 음주는 대인관계 문제, 범죄, 성폭력 피해 등의 문제행동 및 범죄와 관련되며, 정신건강 문제나 자살행동 증가와 관련됨^{21~23)}
- 부모의 과도한 음주는 자녀에게 주취폭력, 방치, 경제적 부담 등을 유발하여 신체적·정서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성장한 자녀의 음주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24~25)}
- 청소년은 또래문화와 유행에 민감한 만큼 술에 대한 정확한 유해성과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함
-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안

대상	청소년		
목표	○ 청소년의 성장에 음주가 미치는 영향과 폐해를 이해한다. ○ 음주로 얻을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인식한다. ○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이해한다. ○ 음주를 권유하는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다. ○ 법적 허용 나이까지 음주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갖는다.		
프로그램 (안)	수업 단계	교육내용	활용자료
	도입	청소년 음주폐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 ○ 아이스 브레이크 ○ 교육 대상자가 궁금해 하는 음주 관련 질문 유도, 음주 예방 교육 필요성 제기	O, X 퀴즈
	전개	정보 제공 ○ 술의 정의 및 생리기전 - 술의 정의 - 인체 내 술의 대사과정 ○ 음주가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기 신체적 발육·발달 - 청소년기 정서적 발달 ○ 청소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로 인한 결과 - 의도하지 않은 일탈 행동 관여 - 청소년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 법적 문제 발생(주류불법구매, 신분증 위조 등)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PPT
		의사결정균형 ○ 청소년 음주/금주 동기 생각해보기 - 신체, 정신, 가정, 사회, 학업 등 ○ 청소년 음주 경험 비율 예측하기 ○ 음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결과 기대 - 술을 마셨을 때와 마시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비교	현황통계
		음주 조장 환경 및 대처기술 ○ 음주를 하게 되는 상황 - 또래, 부모님 등 개인 간 영향 - 주류광고 및 미디어 등 지역사회 영향 ○ 대처기술 -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방법 제시 및 연습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PPT
	마무리	내용 정리	○ 배운 내용 정리 및 소감 나누기

자료1: 김광기 등(2004)⁶⁷⁾ 자료2: 김용석 등(2001)⁶⁸⁾ 자료3: 남궁기 등(2001)⁶⁹⁾자료4: 대한보건협회⁷⁰⁾ 자료5: 최순희 등(2008)⁷¹⁾ 자료6: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6)⁷²⁾ 자료7: 김광기 등(2016)⁷³⁾

2 대학생(젊은 성인)

- 30대의 성인이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월간폭음률(46.3%)을 보임¹⁰⁾
 - 그러나 여성의 경우 월간음주율(60.0%)과 월간폭음률(40.4%)이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생은 음주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적인 음주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우려를 일으킴¹³⁻²⁰⁾
 - 매년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MT, 개강모임 등에서 과음, 성희롱, 성폭행, 폭력 등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함
 - 대학 축제기간에는 교내에서 불법 주점운영,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총학생회는 매년 관례적으로 주류회사로부터 회식, 술 할인 및 무료제공, 금품제공 등의 후원을 받기도 함
- 20대의 젊은 성인은 미성년과 성년의 과도기이며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하여 음주와 흡연 등 유해한 생활습관에 쉽게 노출되고 위험성을 인식하기 어려움
- 대학생(젊은 성인)의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학교의 협조를 통해 캠퍼스 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
 - * 대학생의 경우, 절주서포터즈 또는 건강·보건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음

대학생 교육프로그램 안

대상	대학생(젊은 성인)		
목표	○ 현재 음주습관의 위험도를 인식한다. ○ 음주행태에 대한 규범을 개선한다. ○ 음주로 얻을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인식한다. ○ 음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음주가 미치는 영향과 폐해를 이해한다. ○ 절주 또는 금주 실천을 위한 동기를 강화한다.		
프로그램 (안)	수업 단계	교육내용	활용자료
	도입	대학생 음주폐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 ○ 아이스 브레이크 ○ 인생 목표 실현 준비를 위한 대학생활 영위 시, 음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전개	음주문제 진단 및 규범 제시 ○ 개인별 음주 위험도 검사 - 음주 위험도 수준 분류 - 결과에 따른 음주행동 지침 제시 ○ 대학생 음주 경험 비율 예측 및 음주 실태	음주위험도 검사도구 대학생 음주 PPT
		의사결정균형 ○ 대학생 음주/금주 동기 생각해보기 - 신체, 정신, 가정, 사회, 학업 등 ○ 음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결과 기대 - 술을 마셨을 때와 마시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비교	
		정보 제공 ○ 술의 정의 및 생리기전 - 술의 정의 - 인체 내 술의 대사과정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변화 ○ 폭음/고위험음주 기준 제시 및 음주폐해 정보 - 우리나라 폭음 및 고위험음주 기준 제시 - 지나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폐해	음주폐해예방 표준교육 PPT, 대학생 음주 PPT, 현황통계
		음주상황에서의 행동기술 및 절주실천노력 ○ 음주상황에서의 행동기술 - 상황별 음주거절의 올바른지 못한/올바른 예시 - 자기주장을 통한 음주거절 방법 제시 및 연습 - 스트레스 및 감정관리 기술 ○ 절주 실천노력 공포 - 절주서약서 작성 등 실천의지 확고화	생활 속 절주 실천수칙, 음주폐해예방 교육용 영상
	마무리	내용 정리	○ 배운 내용 정리 및 소감 나누기

자료1: 김광기 등(2011)⁷⁴⁾ 자료2: 김 명 등(2011)⁷⁵⁾ 자료3: 대한보건협회⁷⁶⁾ 자료4: 박 경 등(2015)⁷⁷⁾
 자료5: 심성욱 등(2009)⁷⁸⁾ 자료6: 이혜일 등(2009)⁷⁹⁾ 자료7: 이상엽 등(2013)⁸⁰⁾

3 성인(직장인)

-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70.2%, 여자의 47.8%는 월간 음주자임¹⁰⁾
 - 이는 대부분의 남자성인과 약 절반의 여자성인이 매월 음주를 하는 것을 의미함
- 성인의 음주와 관련한 지표(월간음주율, 고위험음주율, 월간폭음률)는 20~50대까지 높은 수치를 보이다 70세 이상이 되면 감소함¹⁰⁾
 - 성인기에는 잦은 회식, 접대문화 등으로 지속적인 음주환경에 처해있으며, 특히 폭탄주, 과음 등에 노출됨
- 성인의 음주관련 지표는 성별에 따라 특성이 있음¹⁰⁾
 - 여자성인의 경우 음주관련 지표 모두 20대에 가장 높고 30대 이후 감소함
 - 남자성인의 경우 음주관련 지표 20대에 다소 낮으며, 30대에서 60대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성인의 지속적인 과음은 개인과 가족의 건강,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 감소 등 개인과 가정, 사회 전반과 관련됨
- 성인의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직장인 교육프로그램 안

대상	성인(직장인)			
목표	○ 현재 음주습관의 위험도를 인식한다. ○ 음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폐해를 이해한다. ○ 음주행태에 대한 규범을 개선한다. ○ 절주 또는 금주 실천을 위한 동기를 강화한다. ○ 조직 차원의 절주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프로그램 (안)	수업 단계	교육내용		활용자료
	도입	직장인 음주폐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	○ 아이스 브레이크 ○ 음주가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전개	음주문제 진단 및 규범 제시	○ 개인별 음주 위험도 검사 - 음주 위험도 수준 분류 - 결과에 따른 음주행동 지침 제시 직장인(성인)음주 실태 및 특성 - 직장인(성인) 폭음, 고위험음주, 회식문화 등	음주위험도 검사도구, 현황 통계
		의사결정균형	○ 음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결과 기대 - 직장관련 과음, 폭음 동기 - 술을 마셨을 때와 마시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비교	
		정보 제공	○ 술의 정의 및 생리기전, 음주폐해 정보 - 술의 정의 - 인체 내 술의 대사과정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변화 - 지나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폐해 ○ 직장 내 음주문제 해결 필요성 - 음주로 인한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감소, 사건·사고 발생 등 사례	음주폐해예방 표준교육 PPT, 음주와 건강 PPT
		절주실천노력	○ 개인수준에서의 절주실천 방안 - 표준잔 및 적정 음주량, 폭음, 고위험 음주 기준 - 절주서약서 작성, 대안활동 등 실천의지 확고화 ○ 조직수준에서의 절주실천 방안 - 절주 정책 시행 건의(안) 제시 - 회식문화 개선(대안회식) 사례 제시	「저위험음주 가이드라인」, 생활 속 절주 실천수칙, 음주폐해예방 교육용 영상
	마무리	내용 정리	○ 배운 내용 정리 및 소감 나누기	

자료1 : 대한보건협회⁸¹⁾ 자료2: 제갈정 등(2012)⁸²⁾

4 성인(학부모)

- 가정 내 올바른 음주환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위해 매우 중요함
- 청소년의 음주는 대인관계 문제, 범죄, 성폭력 피해 등의 문제행동 및 범죄와 관련되며, 정신건강 문제나 자살행동 증가와 관련됨^{21~23)}
- 부모의 과도한 음주는 자녀에게 주취폭력, 방치, 경제적 부담 등을 유발하여 신체적·정서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성장한 자녀의 음주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부모의 음주문제는 아동의 사회적·정서적·경제적 문제²⁴⁾²⁵⁾와 추후 자녀의 음주 문제 발생²⁴⁾ 등과 관련됨
-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안

대상	성인(학부모)		
목표	○ 청소년 음주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기 음주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인식한다. ○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녀에게 설명할 수 있다. ○ 가정 내 음주조장환경을 인식한다. ○ 미디어가 청소년 자녀의 음주에 미치는 영향과 가정 내 역할을 인식한다. ○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습득하고, 음주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프로그램 (안)	수업 단계	교육내용	활용자료
	도입	학부모 음주폐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 ○ 아이스 브레이크 ○ 교육 대상자가 궁금해 하는 음주 관련 질문 유도, 음주 예방 교육 필요성 제기	
	전개	청소년 음주 현황 및 정보 제공 ○ 청소년 음주 현황 자료 - 청소년 현재음주율, 위험음주율 추이 ○ 술의 정의 및 생리기전, 음주폐해 정보 - 술의 정의 - 인체 내 술의 대사과정 - 청소년기 육체적·정서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의도하지 않은 일탈 행동 및 사건·사고 - 청소년 음주와 성인기 음주와의 관계	현황통계, 음주와 건강 소책자, 음주폐해예방 표준교육 PPT,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학부모용)
		청소년 음주 관련 규제 법률 ○ 청소년 음주 관련 규제 법률 -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광고자율심의규정 등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학부모용)
		청소년 음주 동기 및 가정 내 역할 ○ 가정 내 음주문화 및 청소년 음주동기 간의 관계 - 부모·형제·친척 권유, 가정 내 주류 접근성이 청소년 음주에 미치는 영향 - 가정 내 음주문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 주류 광고와 청소년 음주동기 간의 관계 - 주류 광고가 청소년 음주에 미치는 영향 - 주류 광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정의 역할 ○ 음주를 주제로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 청소년 자녀와의 일반적 의사소통 방법 및 음주를 주제로 한 대화법 연습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학부모용)
	마무리	내용 정리	○ 배운 내용 정리 및 소감 나누기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6)⁷²⁾

5 임신부

- 임신 중 음주는 태아와 영아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됨^{27~29)}
 - 임신 중 음주는 유산, 사산, 조산, 영아돌연사증후군, 태아알코올증후군 등과 관련되며 이는 음주량, 종류와 무관하게 치명적임
- 임신 준비 중인 남성의 음주 또한 태아와 영아의 건강과 관련됨³⁰⁾³¹⁾
 - 남성의 장기적인 과음은 남성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정자의 운동성 저하, 정자의 DNA 구조 변화를 일으켜 아이의 선천성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
- 모유수유 기간 또한 엄마가 마신 술이 혈액을 통해 모유에 전달되어 아이의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침
- 임신부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안

대상	임산부		
목표	○ 음주가 임산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음주가 태아기, 영아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개인별 음주충동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습득한다.		
프로그램 (안)	수업 단계	교육내용	활용자료
	도입	임산부 음주폐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 ○ 아이스 브레이크 ○ 교육 대상자가 궁금해 하는 음주 관련 질문 유도, 음주 예방 교육 필요성 제기	
	전개	정보 제공 및 음주 위험도 파악 ○ 술의 정의 및 생리기전 - 술의 정의 - 인체 내 술의 대사과정 - 음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및 여성의 취약성 ○ 개인별 음주 위험도 검사 - 음주 위험도 수준 분류 및 행동지침 제시	임산부 음주 소책자, 임산부 음주 PPT, 음주폐해예방 표준교육 PPT, 음주 위험도 검사도구, 생활 속 절주실천 수칙
		음주폐해 ○ 음주가 임산부 및 태아에 미치는 영향 - 임신 초기 음주의 위험성(유산, 사산, 조산 등) - 임신부 음주 시 태아에 미치는 영향 (영아돌연사증후군, 태아알코올증후군 등) ○ 음주가 영아기에 미치는 영향 - 음주 후 모유수유로 인한 아기 사망 사례 - 모유수유 중 음주의 위험성	
		음주충동상황 및 대처방법 ○ 음주충동상황 및 대안활동 - 임신 중 음주충동상황에 대한 사례 - 음주충동상황별 대처방안 제시 및 연습 - 음주 외에 대안활동 제시	
	마무리	마무리 ○ 자녀에게 미치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부모로서의 역할 강조 ○ 배운 내용 정리 및 소감 나누기	

자료1 : 대한보건협회⁸³⁾ 자료2: ACOG.⁸⁴⁾ 자료3: 이소희 등(2016)⁸⁵⁾

6 노인

- 성인의 음주관련 지표는 70세 이상부터 감소하나 남성의 월간음주율은 48~63%의 높은 음주율을 보임¹⁰⁾
- 술은 신체능력을 감소시키고 약물과 작용하여, 신체능력이 감소하고 약물복용이 증가하는 노인의 건강에 특히 유해함
 - 술(알코올)은 중추신경계 억제제열의 약물로 졸림, 나른함, 기분장애(좋거나 나쁜) 등의 증상을 유발⁴⁾³²⁾³³⁾하여 신체능력이 감소한 노인기에 낙상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술은 약물과 작용하여 약물의 효과를 높이거나 혹은 낮춰 술과 약물을 함께 복용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약물효과가 건강을 해칠 수 있음^{34~36)}
- 노인의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노인 교육프로그램 안

대상	노인		
목표	○ 노년기 특성과 음주로 인한 폐해를 이해한다. ○ 습관화된 음주행태로 인한 위험도 및 문제점을 인식한다. ○ 음주로 얻을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인식한다. ○ 음주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절주 또는 금주 실천 의지를 강화한다.		
프로그램 (안)	수업 단계	교육내용	활용자료
	도입	노인 음주폐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 ○ 아이스 브레이크 ○ 교육 대상자가 궁금해 하는 음주 관련 질문 유도, 음주 예방 교육 필요성 제기 ○ 과거 및 현재 음주로 인한 문제 경험 공유	
	전개	의사결정균형 ○ 노인 음주/금주 동기 생각해보기 - 신체, 정신, 가정, 사회 등 ○ 음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결과 기대 - 술을 마셨을 때와 마시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비교	
		정보제공 ○ 노인 음주 현황 자료 제공 - 노인 현재음주율, 위험음주율 등 ○ 노년기 특성 및 음주와의 관련성 - 노년기 신체적, 정신적(우울, 고독, 분노 등) 변화와 음주 간의 관계 ○ 술의 정의 및 생리기전, 음주폐해 정보 - 알코올 대사 과정 - 음주로 인한 신체적 폐해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 약물과의 관계) - 음주로 인한 정신적 폐해 (치매, 우울장애, 성격 변화 등) - 음주로 인한 사건 및 사고 (낙상, 음주등산, 음주 운전 등)	음주관련 현황 통계, 음주와 건강 소책자, 음주폐해예방 표준교육 PPT, 음주와 건강 PPT, 인포그래픽
		음주상황에서의 행동기술 및 대안활동 ○ 음주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의 행동기술 및 대안 활동 제공 - 자기주장을 통한 음주거절 제시 및 연습 - 노년기 삶의 중요성과 의미 및 시간 활용 (일과 활동, 취미 생활 등)	생활 속 절주실천 수칙
	마무리	마무리	○ 배운 내용 정리 및 소감 나누기

자료1: 오숙희 등(2009)⁹⁶⁾

7 판매자

- 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술은 청소년 유해물질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제품으로, 청소년 시기의 음주는 신체적·정서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또한 청소년의 현재음주자 49.0%가 위험음주(과음)를 함¹¹⁾
- 술을 사려고 시도한 청소년 중 63.5%(남학생 64.1%, 여학생 62.4%)가 별다른 노력 없이 술을 구매할 수 있었음¹¹⁾
- 우리나라는 주류의 판매 시간, 이용 장소에 제한이 없음
 - 우리나라 대부분의 24시간 편의점은 주류를 판매하고, 대부분의 식당 또한 주류를 판매하며, 판매시간에 제한이 없음
 - 손쉽게 술을 구매하고 이용 장소에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과음이 가능한 환경임
- 과음은 폭력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판매자의 적절한 대응은 이러한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알코올은 졸림, 나른함, 구토, 두통 등을 유발하며 신경계와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정서변화(폭력, 화냄, 크게 웃음)를 일으키기도 함³³⁾
- 판매자의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판매자 교육프로그램 안

대상	판매자			
목표	○ 청소년 음주의 위험성을 인식한다. ○ 청소년의 주류 구매 실태를 인식한다. ○ 주류 판매 관련법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인식한다. ○ 주류 판매의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실천 의지를 다짐한다.			
프로그램 (안)	수업 단계	교육내용		활용자료
	도입	판매자 교육의 필요성	○ 아이스 브레이크 ○ 대상자에게 음주 관련 질문 유도 및 교육 필요성 제기	
	전개	청소년 음주의 현황 및 위험성	○ 청소년 음주 현황 - 음주시작연령, 현재 음주율, 고위험 음주율 등 ○ 청소년 음주의 위험성 정보 - 청소년기 육체적·정서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의도하지 않은 일탈 행동 관여 - 성인기 음주행동으로의 이행	음주관련 현황 통계,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교사용)
		청소년 주류 구매 실태 및 주류 판매 관련법	○ 청소년 주류 구매 실태 - 주류 구매 용이성, 청소년 대상 주류 불법판매 비율 등 ○ 주류 판매 관련 법령 - 주류 제조·유통·사용에 관한 법률,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법 등 -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 기준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주류 판매자 가이드라인 PPT,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음주 예방 ‘19금酒’,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환경가이드 소책자
		올바른 주류 판매 기본원칙	○ 주류 판매의 기본 원칙 - 청소년 주류 판매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행동절차	
	마무리	마무리	○ 배운 내용 정리 및 소감 나누기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4)⁸⁷⁾

II

음주폐해의 이론적 근거

1 주류와 알코올

가. 주류의 정의

(1) 주류란, 주정 혹은 알코올이 1도 이상 함유된 음료를 의미함

(2) 종류 : 제조방법에 따라 구분됨

- 주 정 :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발효주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일주
- 증류주 :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 기타 주류

(3) 첨가물 : 주류에는 맛과 향을 좋게 하기 위해 다음의 첨가물을 추가할 수 있음

- 당 분 :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또는 꿀
- 산 분 : 젖산, 호박산, 식초산, 푸말산, 글루콘산, 주석산, 구연산, 사과산, 탄닌산
- 조미료 : 아미노산류, 글리세린, 텍스트린, 홉, 무기염류 등
- 향 료 : 퓨젤유, 에스테르류, 알데히드류 등
- 색소, 탄산가스 등

(4) 알코올 함유량

○ 전체용량에 포함된 에틸알코올의 양을 말하며, 섭씨 15도에서 0.7947 비중을 말함

* 알코올 함유량(g) = 부피(ml) × 도수(%) × 비중(0.7947) / 100

예 : 20도 소주 1병의 알코올 함유량은 약 57g(= 360ml × 20% × 0.7947 / 100)임

(5) 알코올 도수

○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된 알코올분의 용량

* 자세한 내용은 「주세법」 참조

나. 술의 소화·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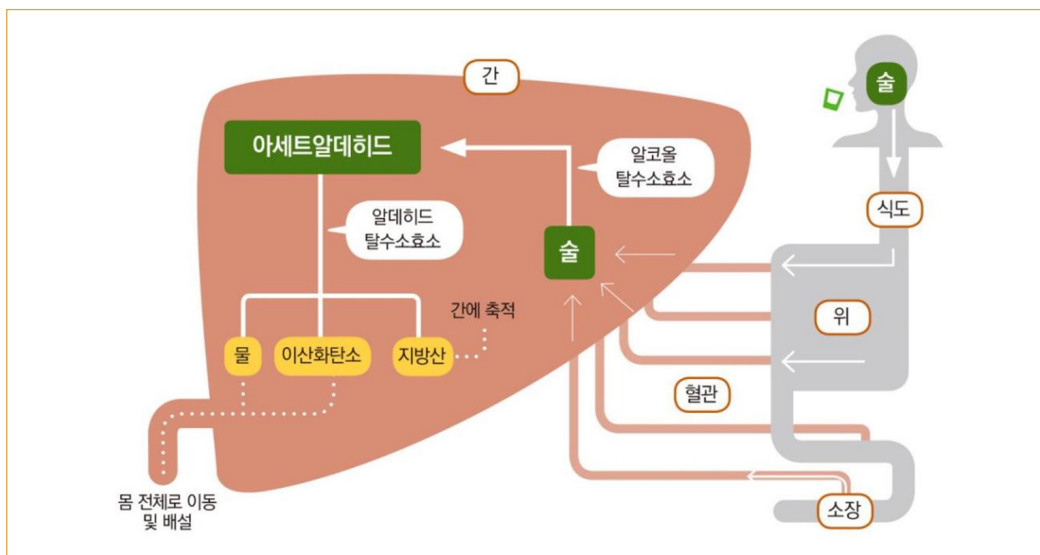
* 이하 설명은 술의 주요성분인 '알코올'을 의미함

(1) 대부분의 술은 소화기관에서 흡수하고 간에서 분해됨

○ 술은 소화기관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되어 간의 알코올 분해효소에 의해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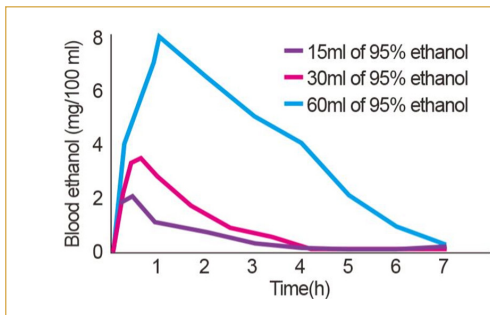
○ 95% 이상의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며, 그 밖에 호흡, 소변, 땀 등으로 배출됨

술의 소화·흡수·분해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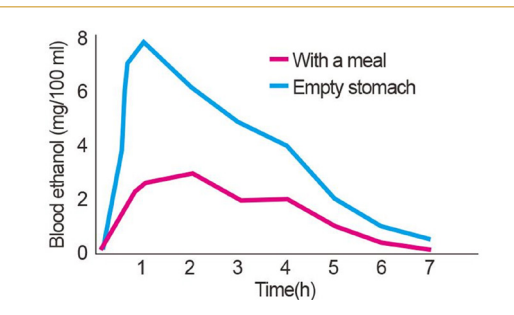


(2) 공복 상태에서 음주는 더 빨리, 더 많이 취함

- 건강한 성인은 공복 상태에서 음주 후 30분 이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로 상승함³³⁾
- 음식물과 함께 음주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서서히 상승하여 완전 분해까지 약 4~6시간 정도 소요됨³³⁾



A) 공복 시 알코올 도수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B) 공복여부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자료 : Meyer(2013)

2 음주로 인한 건강문제

가. 발암성

(1) 주류(Alcoholic beverage)는 1군 발암물질임

-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WHO IARC)에 따르면 주류는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유방암,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대장암, 간암 등의 암을 유발함⁵⁾

(2) 아세트알데히드는 2군 발암물질임

-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WHO IARC)에 따르면 알코올의 분해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2B군 발암물질임⁵⁾

나. 단기적 증상

(1) 알코올은 중추신경계 억제계열의 항정신성 약물임³³⁾³⁴⁾³⁶⁾

- 음주는 일반적으로 피로, 어지럼증, 졸림, 권태, 구토, 두통, 혼미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음주량이 많을 경우 체온이 낮아져 체온조절에 어려움이 있음
- 중추신경계의 기능 억제는 음주량과 비례하며, 지나친 음주는 말이 또렷하지 못하고 운동기능이 저하되고 기억력 장애가 와서 필름이 끊기는 등의 증상을 유발함

(2)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반응을 일으킴³³⁾³⁴⁾³⁶⁾

-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효소가 부족해서 분해가 안되거나, 과음으로 분해해야 할 알코올의 양이 많을 경우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킴
- 아세트알데히드가 유발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얼굴이 붉어지고 두통, 졸음, 어지럼증, 구토 등이 있음
- 약간의 술에도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아세트알데히드 분해효소가 부족한 사람이므로 금주해야함

(3) 알코올은 기분장애를 유발함³³⁾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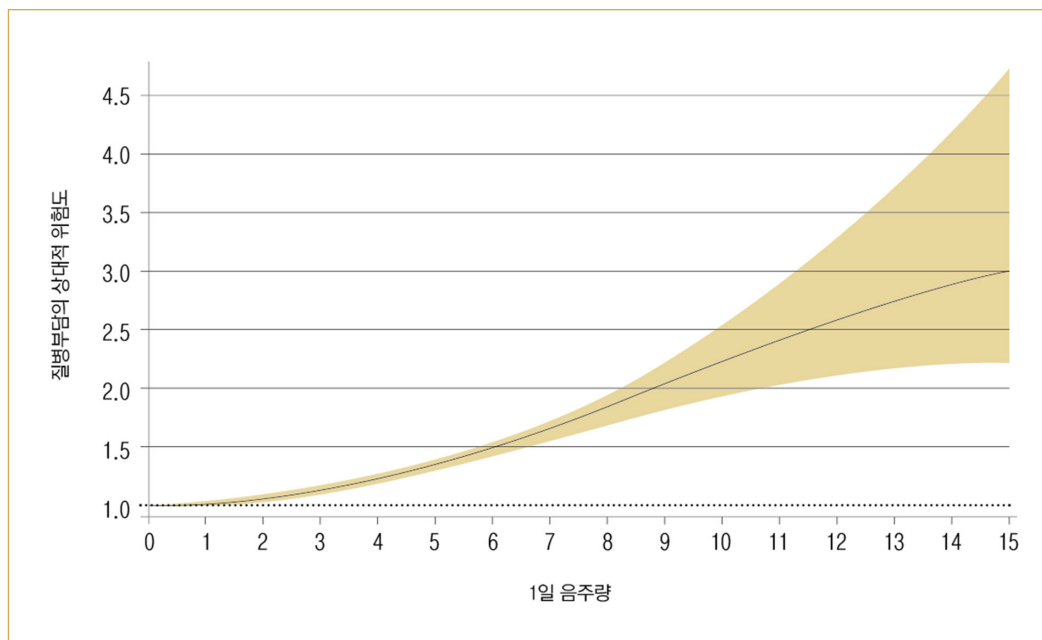
- 알코올은 신경전달물질과 반응하여 기분이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우며, 충동적인 행동과 말을 함. 또한 긴장을 완화시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을 갖게 되지만 신체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킴

다. 장기적 증상

(1) 우리 몸 전신에 작용하고 약 200여 종의 질병과 관련됨²⁾

- 술은 우리 몸의 뇌, 신장, 간, 피부, 호흡기, 소화기 등 전신에 광범위하게 작용하여 세포와 신경에 영향을 미쳐 약 200여종의 질병과 관련이 됨
- 기존에는 소량의 음주가 심뇌혈관 질환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1~2잔의 음주로도 질병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질병위험이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됨⁹³⁾⁹⁴⁾

음주량과 질병부담의 상대적 위험도



자료 : GBD 2016 Alcohol collaborators. (2018)

(2) 뇌와 신경을 손상시키고 중독을 일으킴^{33)34)37~40)}

- 알코올은 도파민과 아편성 신경의 전달을 증가시켜 음주 시 기분을 좋게 하는데, 이것이 지속될 경우 역 반응이 나타나 알코올 의존증을 유발시킴
-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는 뇌의 신경전달 활동, 효소와 분자의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유발하여 신경세포의 기능변화와 손상을 일으킴
- 또한 티아민(비타민B1)의 흡수와 형성을 방해해 근운동 부조화, 안구운동신경 마비, 학습기억 장애, 보행장애 등의 신경병증을 유발함

(3) 고혈압, 부정맥 등 혈관성 질환을 일으킴⁴⁰⁾

- 지속적인 과음은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을 유발해 현기증,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음
- 알코올은 혈관의 수축에 관여하여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부정맥과 고혈압 같은 질병은 뇌졸중을 일으키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4) 각종 간 질환 및 면역장애를 일으킴³³⁾³⁴⁾

-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 영양분 대사, 면역, 혈액응고 등 다양하고 중요한 화학적 작용을 담당하며, 알코올 또한 간에서 분해함
- 일반적으로 알코올 분해는 최대 1시간에 10~20g(소주 1~2잔), 1일 40~80g 정도임
- 최대 대사량의 한계에 달하는 음주를 지속할 경우 간세포가 손상되어 이를 회복하기 위해 휴식과 영양공급을 필요로 함
- 지속적인 과음과 선천적으로 아세트알데히드 분해효소(ALDH)가 부족한 사람의 음주는 간세포 손상, 지질대사 이상, 면역력 저하 등으로 간 기능 저하, 지방간, 황달, 간염, 간경화, 면역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5)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질병발생 위험도⁶⁾

-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해 식도암, 후두암,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성 신경계 이상, 뇌졸중, 각종 소화기 질환 및 간질환 등이 발생함
- 음주량에 따라서 저위험 음주자 대비 중위험·고위험 음주자는 음주로 인한 질병발생 위험도가 더욱 높음
- 특히 알코올성 다발신경병증(중위험 2.797배, 고위험 4.669배), 알코올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성(중위험 2.700배, 4.180배),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중위험 2.784배, 고위험 4.041배), 식도정맥류(중위험 2.328배, 고위험 3.779배) 알코올 사용장애(중위험 2.341배, 고위험 3.461배), 알코올성 심근병증(중위험 1.813배, 고위험 3.368배) 등이 매우 높음

음주관련 질환별 상대위험도 : 저위험 대비 중·고위험 음주자

구분	중위험음주자		고위험음주자	
	RelativeRisk	P-value	RelativeRisk	P-value
식도암	1.710	<.0001	2.246	<.0001
간암	1.107	<.0001	1.327	<.0001
후두암	1.409	<.0001	1.706	<.0001
당뇨	1.124	<.0001	1.258	<.0001
알코올 사용장애	2.341	<.0001	3.461	<.0001
단극성 우울장애	1.031	0.009	1.087	<.0001
알코올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성	2.700	<.0001	4.180	<.0001
간질	1.115	<.0001	1.293	<.0001
알코올성 다발신경병증	2.797	<.0001	4.669	<.0001
고혈압	1.084	<.0001	1.116	<.0001
알코올성 심근병증	1.813	0.0167	3.368	<.0001
심장부정맥	-		1.050	0.0219
심부전	1.079	<.0001	1.092	0.0014
출혈성 뇌졸중	1.282	<.0001	1.516	<.0001
허혈성 뇌졸중	1.058	<.0001	1.138	<.0001
기타 뇌혈관질환	1.080	<.0001	1.181	<.0001
식도정맥류	2.328	<.0001	3.779	<.0001
위-식도 열상-출혈증후군	1.766	<.0001	2.420	<.0001
알코올성 위염	1.780	<.0001	2.343	<.0001
알코올성 간질환	2.219	<.0001	2.953	<.0001
간경화증	1.670	<.0001	2.446	<.0001
담석증	-		1.105	0.0001
급성 및 만성 췌장염	1.731	<.0001	2.257	<.0001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	2.784	<.0001	4.041	<.0001
자연유산	-		1.230	0.0988
알코올중독	1.903	<.0001	2.477	<.0001
기타 비의도적인 상해	1.211	0.0041	1.392	0.0008

자료 : 이선미 등(2012)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방안

주 1) 성, 연령, 보험료, 흡연여부, 음주여부, 비만도 보정

2) RR값이 1 이하 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질병 제외

3) 저위험 음주자 : 1일 평균 순수알코올 소비량 남 1-40g, 여 1-20g

4) 중위험 음주자 : 1일 평균 순수알코올 소비량 남 41-60g, 여 21-40g

5) 고위험 음주자 : 1일 평균 순수알코올 소비량 남 61g 이상, 여 41g 이상

라. 사망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사망에 미치는 영향

- 술은 2016년 기준 매년 전 세계 300만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는 전체 사망의 5.3%에 해당함²⁾
- 과도한 음주는 장애보정수명(DALY)로 측정되는 전 세계 질병 및 상해부담의 5.1%를 차지하며, 전 세계 질병부담 요인 7위임¹⁾
- 2020년 우리나라는 매일 14.1명이 알코올로 인해 사망함⁴¹⁾
 - 알코올성 간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총 5,155명(1일 평균 14.1명)으로 전년 대비 461명 증가함
 - 알코올 관련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10.0명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함
 - 남자(17.3명)가 여자(2.8명)보다 6.2배 높음
 - 알코올 관련 사망은 30세 이후부터 급증하여 50대를 정점으로 감소함

(2) 사회경제적 비용³⁾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9년 기준 15조 806억원에 달함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중 남자가 83.9%로 여자에 비해 손실규모가 6.7배 큼
 - 비용 항목별로는 간접비 73.8%, 직접비 26.2%로, 간접비의 비중이 높음
 - 직접비 :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 간접비 :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손실액, 과도한 음주로 인한 생산성저하액,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손실액

3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

가. 개요

(1) 간접폐해의 의미

- 음주자로 인해 누군가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의됨⁴²⁾
- 그 동안 음주문제는 음주자 개인의 건강과 행태의 문제로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음

(2) 간접폐해 내용

- 음주 후 음주운전, 폭력 등 각종 사건사고가 대표적이며, 이는 음주자의 주변인 (가족, 친구, 동료, 낯설지만 음주자와 가까이 있는 주변인 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음주가 타인에게 미치는 대표적인 폐해에는 사회경제적 결과와 음주 기인성 상해, 정신건강문제, 태아알코올성 스펙트럼 장애(F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와 같은 중대한 건강문제가 포함됨⁴³⁾
- 특히 술은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 담배 등 다른 중독성 약물에 비해 타인에 미치는 폐해가 압도적으로 높아⁸⁾, 더욱 사회적·국가적 관심이 필요함

나. 주요 간접폐해

(1) 사건 및 사고

○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의 약 8.2%는 음주운전이 원인임⁴⁴⁾

- 연간 약 1만 7천여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함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7명이며, 부상자 수는 2만 8천여 명으로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9.2%를 차지함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의 약 26.1%는 주취자 범죄임⁴⁵⁾

- '20년 전체 범죄 중 주취자의 범죄율은 16.1%이며, 특히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의 강력범죄 중 주취자 범죄율이 26.1%를 차지함

연간 범죄 및 주취범죄 발생건수

(단위 : 명)

범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전체	1,492,971	1,552,517	1,594,925	1,457,544	1,372,137	1,728,027	1,612,424
	주취	417,868	409,394	400,909	362,946	316,025	283,575	257,904
강력범죄 (흉악)	전체	29,715	31,639	33,344	36,404	36,145	37,003	35,028
	주취	9,345	9,599	10,121	10,733	10,212	10,194	9,139
강력범죄 (폭력)	전체	329,614	342,526	347,523	330,548	315,571	310,600	278,122
	주취	106,667	103,176	101,816	94,216	86,459	83,242	73,133
기타범죄	전체	1,133,642	1,178,352	1,214,058	1,090,592	1,020,421	1,380,424	1,299,274
	주취	301,856	296,619	288,972	257,997	219,354	190,139	175,632

자료 : 대검찰청(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범죄분석(5.범행특성. 범행 시 정신상태)

주 : 1) 흉악범죄: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력범죄: 폭력,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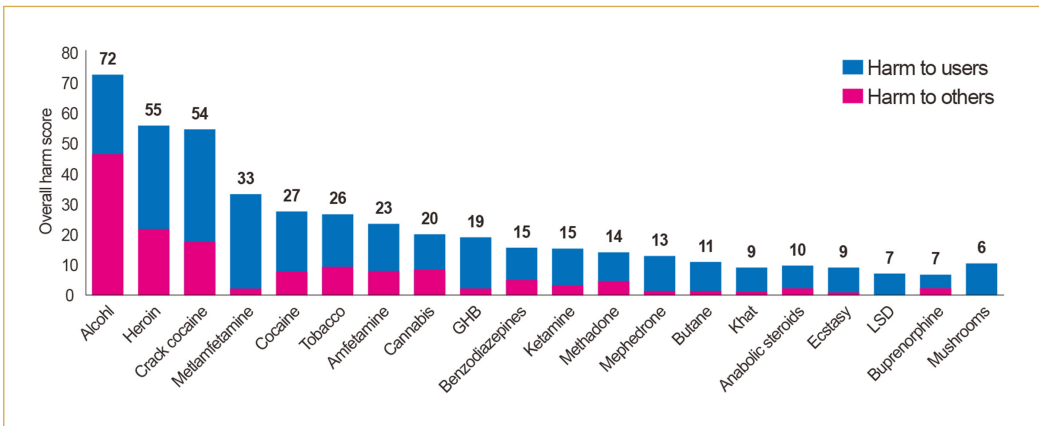
기타범죄: 재산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등

2) 범행 시 정신상태 통계는 2015년부터 보고서에 포함됨

○ 술은 중독성 약물 중 유해성 1위임⁸⁾

- 술은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 담배 등 다른 중독성 약물과 비교해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자신과 타인을 합한 전체적인 피해가 가장 큰 약물임 (담배 6위)

중독성 약물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유해성



자료 : David J Nutt et al.(2010)

다. 음주가 가족 및 가까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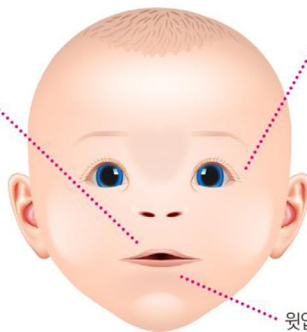
- 임신준비, 임신, 수유기의 음주는 태아와 영아에 유해함
 - 임신부의 습관적인 음주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F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 FASD)을 유발함⁴⁶⁾
 - 임신부의 사소한 음주, 아빠의 지속되는 음주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자폐아의 출생을 높임³⁰⁾³¹⁾

태아알코올증후군

- 태아알코올증후군을 가진 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은 안면기형으로, 정상 아이와 다른 눈, 코, 입의 형태를 보임

인중이 불명확합니다.

눈의 가로 길이가 짧습니다.



윗입술이 아랫입술에 비해 현저하게 가늘습니다.

- 태아알코올증후군은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결함을 야기하여 태어날 아기가 평생 동안 원활한 일상생활을 어렵게 함
 - 신체적 문제
 - : 또래에 비해 작은 키와 저체중, 몸 속 장기의 건강문제, 뇌의 기능적 손상 등
 - 지적 및 행동적 문제
 - : 낮은 지능, 학습 및 기억장애, 과잉행동, 주의산만, 언어발달 지연 등

- 아동, 배우자 등 가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부모의 음주문제는 아동에게 사회적·정서적·경제적 문제를 유발²⁴⁾²⁵⁾할 수 있으며, 추후 자녀의 음주문제 발생과 관련됨²⁶⁾
 - 가정폭력의 피해여성인 경우 폭력피해와 남편의 사회적 환경이 음주문제와 관련됨⁴⁸⁾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7). 「국민건강증진모범 통권 제5호: 음주문제의 최신 연구동향과 시사점」 참고

4 국내외 주요 정책

가. 가격정책

(1) 가격정책이란²⁾

- 주류소비자는 주류의 가격변화에 민감하며, 가격정책은 미성년자 음주감소, 과음과 폭음억제, 주류소비자의 제품선택에 영향을 미침
- 주류가격 인상은 세수확보와 수요통제 효과가 있으며, 음주폐해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⁴⁹⁾ 중 하나로 세계 155개 국가에서 가격정책을 시행함

(2) 주세 적용방법²⁾⁵⁰⁾

- 주류 가격정책은 주류의 종류 및 국가에 따라 추진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종량세, 종가세, 이 두 가지를 복합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적용함
 - 종량세 : 알코올 함유량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함
 - 종가세 : 제조장 출고가 혹은 수입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
 - 그 밖에 종량세와 종가세를 복합으로 운영하기도 함
- 세계보건기구는 종량제를 기반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미국, EU국가 등은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종가세와 종량세(맥주, 탁주)를 적용함²⁾
 - 우리나라는 탁주, 약주 및 과실주, 청주, 맥주, 증류주 등 술의 종류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음

* 2020년 1월 1일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

(3) 주요사례²⁾⁵⁰⁾

- 여러 국가에서는 종량·종가세와 같은 기본 세법 외에 지나친 가격인하로 주류구매가 증가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가격인하를 규제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함
 -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주류가격을 일정수준 유지하기 위해 주류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최저가격제’를 추진함
 - 독일은 무알코올 음료보다 저가판매하거나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 스웨덴에서는 할인판매를 제한함

나. 알코올의 이용가능성

(1) 알코올의 이용가능성 제한이란²⁾⁵⁰⁾

- 알코올의 상업적·공공적 이용 가능성을 법, 정책, 프로그램으로 규제하는 전략임
- 주류의 소비·판매·이용을 규정하여 주류 판매와 소비를 조절함
- 대표적으로 주류 생산·판매 면허제도, 소비연령 규제, 주류 판매점 영업시간·요일·밀집도 조정, 음주장소 규정, 비공식적 알코올 규제 등이 있음

(2) 판매 및 소비제한 방법²⁾⁵⁰⁾

- 생산·판매 면허제도
 -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주류의 공식적인 유통관리를 통해 세수, 수요와 공급, 품질 등을 통제함
 - 약 32개 국가에서는 국가가 맥주 혹은 와인의 생산·소비를 독점하여 생산과 판매를 통제함
- 판매점 영업시간, 요일, 밀집도 통제
 - 판매점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시간, 요일을 정하거나 판매점의 밀집도를 조절하여 이용 가능성을 제한함
 - 세계 약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점 영업시간을 규제함

○ 구매연령 제한

- 국가에 따라 연령기준에 차이(10~25세)가 있으나 청소년의 음주를 금지함
-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주류를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하고,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주류 판매를 금지함

○ 공공장소 음주제한

- 음주폐해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교육기관, 의료시설, 도로, 대중교통, 작업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함
- 태국⁵¹⁾, 러시아⁵²⁾는 개인 거주지, 클럽, 술집 외의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함
- 캐나다⁵³⁾는 주류 판매점을 제외한 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함
- 호주⁵⁴⁾⁵⁵⁾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길거리, 공원, 해변 등을 공공장소로 지정하여 음주를 금지함
- 싱가포르는 정해진 시간동안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함⁵⁶⁾
- 영국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길거리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음주자의 불쾌한 행위를 경찰이 즉시 규제함⁵⁷⁾

주요 국가별 공공장소 음주 규제 현황

(○ : 완전규제, △ : 부분규제, × : 규제없음, □ : 자발적 규제)

국가	학교	정부 기관	의료 기관	레저 행사	공원 및 거리	대중 교통	종교 장소	스포츠 행사	직장
러시아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호주	□	□	□	△	△	△	□	△	□
프랑스	○	×	○	×	×	△	○	△	△
영국	□	×	□	△	△	△	×	△	□
일본	×	×	×	×	×	×	×	×	×
중국	○	○	×	×	×	×	×	×	×
싱가포르	×	×	○	△	△	△	×	△	×
태국	△	△	△	×	△	○	△	×	△
한국	△	△	△	△	△	△	△	△	△

주 :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1.6.30.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한해 음주가 제한됨
싱가포르는 2015년 법령개정을 통해 공공장소(문화·예술·오락장소, 종교장소 등)에서 금주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자료 :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 Alcohol Policy Report(2018)

<http://apps.who.int/gho/data/node.main.A1190?lang=en>

https://www.who.int/substance_abuse/publications/en/Alcohol%20Policy%20Report.pdf(규제정도 및 단속주체)

다. 주류 마케팅 규제

(1) 주류 마케팅 규제란²⁾⁵⁰⁾

- 마케팅이 젊은 사람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함
- 과도한 주류의 광고·판촉·후원활동을 통제하여 음주를 미화·왜곡하거나 청소년의 음주를 유도하는 광고내용을 금지하고, 방송, 인쇄, 통신 등 광고매체를 제한함
- 국가와 주종에 따라 시행방법과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음

(2) 주류 마케팅 규제방법²⁾⁵⁰⁾

- 일반적으로 약 10개의 광고매체(공영·민영방송, 공영·지역라디오, 인쇄물, 옥외광고, 판매시점관리, 영화, 온라인 매체, 소셜미디어)에 따라 규제를 실시함
 - 광고허용 매체, 매체별 광고시간 및 방법, 내용 등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법적인 제재 외에도 비정부기구(NGO), 주류협회의 협약 등을 통해 자발적인 가이드 라인을 적용함

(3) 주요사례

- 프랑스⁵⁸⁾, 핀란드⁵⁹⁾, 호주⁶⁰⁾, 네덜란드⁶¹⁾, 터키⁶²⁾ 등에서는 TV, 온라인 매체, 인쇄매체의 광고시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영화관 광고, 후원 및 프로모션 활동, 실외 공공장소 광고 등을 제한함
- 노르웨이는 모든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함⁶³⁾
- 호주⁶⁰⁾, 캐나다⁶⁴⁾, 네덜란드⁶¹⁾는 구체적인 주류광고 가이드라인을 정부규제 혹은 자율 규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의 경우 ‘호주 알코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벗어나는 음주행위 묘사, 휴식, 파티, 스포츠 활동, 성취, 축하 등의 내용을 모두 제한함
-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을 통해 주류광고를 일부 제한함

주요 국가별 주류마케팅 규제 현황

(○ : 완전규제, △ : 부분규제, × : 규제없음, □ : 자발적 규제)

국가	주종	공영 방송	민영 방송	공영 라디오	지역 라디오	인쇄물	영화	옥외 광고	판매시점 관리	온라인 매체	소셜 미디어
프랑스	맥주	△	○	△	△	△	○	△	△	△	△
	증류주	△	○	△	△	△	○	△	△	△	△
	와인	△	○	△	△	△	○	△	△	△	△
핀란드	맥주	△	△	△	△	△	○	○	△	△	△
	증류주	△	○	○	○	○	○	○	○	○	○
	와인	△	△	△	△	△	○	○	○	△	△
호주	맥주	△	△	△	△	△	△	△	△	△	△
	증류주	△	△	△	△	△	△	△	△	△	△
	와인	△	△	△	△	△	△	△	△	△	△
네덜란드	맥주	△	△	△	△	□	□	□	□	□	□
	증류주	△	△	△	△	□	□	□	□	□	□
	와인	△	△	△	△	□	□	□	□	□	□
터키	맥주	○	○	○	○	○	○	○	○	○	○
	증류주	○	○	○	○	○	○	○	○	○	○
	와인	○	○	○	○	○	○	○	○	○	○
한국	맥주	△	△	△	△	×	×	×	×	×	×
	증류주	△	○	○	○	×	×	×	×	×	×
	와인	△	△	△	△	×	×	×	×	×	×

자료 :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 Alcohol Policy Report(2018)

<http://apps.who.int/gho/data/node.main.A1131?lang=en>

https://www.who.int/substance_abuse/publications/en/Alcohol%20Policy%20Report.pdf

라. 음주운전 금지

(1) 음주운전 금지란²⁾⁵⁰⁾

- 알코올은 신체능력과 판단능력을 저하시켜 음주운전 시 음주자 자신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상태의 운전을 규제함

(2) 음주운전 금지 방법²⁾⁵⁰⁾

- 대표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정해진 농도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벌금,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음
-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는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준은 0.03%임

(3) 주요사례

-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은 차량 내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운전 시작 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도록 함⁶⁵⁾
- 미국과 영국의 경우 차량 내 주류소지를 금지하며, 프랑스는 주유소 내 주류 판매를 금지함⁶⁶⁾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7). 「Weekly Issue 제24호 : 절주정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참고

Ⅲ

관련통계

1 성인 음주통계

성인 음주통계

(단위: %)

지표	구분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생 음주율	전체	-	87.4	88.7	88.3	89.2	89.8	89.4	89.2	90.0	90.2	90.5	-	-	-	-
	남자	-	95.1	95.0	95.2	95.8	95.8	95.7	96.0	95.4	95.8	95.9	-	-	-	-
	여자	-	79.8	82.5	81.4	82.7	84.0	83.4	82.7	84.9	84.7	85.2	-	-	-	-
연간 음주율	전체	78.4	74.8	76.4	77.0	79.0	79.2	77.1	77.0	78.1	78.5	79.2	-	-	-	-
	남자	86.4	85.0	85.6	86.0	88.1	88.0	85.8	85.9	86.2	86.6	87.1	-	-	-	-
	여자	70.9	65.1	67.6	68.4	70.4	71.1	69.1	68.7	70.6	70.8	71.6	-	-	-	-
월간 음주율	전체	54.6	57.2	59.5	59.4	60.4	60.6	57.9	60.1	60.0	60.6	61.9	62.1	60.6	60.8	58.9
	연령															
	19-29	65.5	68.9	69.9	69.6	67.3	73.0	66.6	72.4	69.1	67.4	70.8	70.5	64.6	68.3	64.4
	30-39	60.0	62.1	65.5	64.5	67.5	67.5	63.9	67.4	66.4	65.5	69.6	69.0	67.9	68.6	69.2
	40-49	57.7	60.4	64.2	64.0	65.5	59.5	59.4	60.7	63.9	66.1	64.6	66.3	66.6	62.8	62.2
	50-59	50.1	56.0	54.2	54.5	57.3	57.8	55.3	56.7	54.0	57.9	58.0	56.2	56.5	56.2	54.6
	60-69	37.7	38.3	41.6	43.7	43.9	46.6	42.6	42.4	41.9	46.6	46.5	47.9	49.6	48.7	44.4
	70+	25.7	24.3	28.3	27.7	29.2	28.7	32.8	28.0	35.4	31.3	30.1	31.4	29.1	31.7	26.1
	남자	72.6	73.5	74.6	75.7	77.8	77.6	73.5	75.3	74.4	75.2	75.3	74.0	70.5	73.4	70.2
	연령															
	19-29	78.4	74.6	75.6	82.7	81.6	84.8	74.9	81.2	77.1	76.9	76.8	74.2	63.5	71.6	68.5
	30-39	77.8	79.9	79.9	78.1	84.9	81.9	79.0	78.5	79.0	80.0	82.6	78.6	75.2	80.8	77.6
	40-49	76.1	79.4	80.5	79.1	79.8	75.4	73.8	78.7	77.8	79.3	76.5	77.6	77.7	74.9	74.2
	50-59	71.5	75.8	74.1	75.1	78.1	81.2	75.6	74.9	72.1	74.0	74.1	73.4	71.5	71.9	69.7
	60-69	60.7	58.3	65.6	66.4	66.6	70.6	64.8	67.4	65.0	65.0	68.2	69.9	69.8	72.5	63.7
	70+	45.3	47.8	50.3	50.5	51.1	51.4	58.8	47.6	57.6	57.8	55.8	53.2	53.6	54.7	48.5
	여자	36.9	41.5	44.9	43.3	43.3	44.2	42.9	45.7	46.4	46.5	48.9	50.5	51.2	48.4	47.8
	연령															
	19-29	51.8	63.1	63.8	55.4	52.1	60.2	57.7	62.3	60.3	56.6	64.1	66.3	65.7	64.5	60.0
	30-39	41.2	43.5	50.3	50.1	49.1	52.6	48.0	56.4	53.9	50.6	55.5	58.6	60.0	55.0	59.9
	40-49	38.6	40.6	47.5	48.6	50.6	43.3	44.6	43.1	50.4	52.9	52.3	54.7	55.1	50.5	49.6
	50-59	28.6	36.0	34.4	33.9	36.4	34.9	35.7	39.1	36.6	42.1	42.0	39.0	41.4	40.6	39.6
	60-69	17.9	20.6	20.4	23.2	23.4	24.8	23.2	20.3	21.1	29.3	26	27.1	30.2	26.3	25.9
	70+	14.5	10.4	15.0	13.8	15.5	14.4	16.3	15.3	20.3	13.8	13.5	16.6	12.5	15.9	10.2
고위험 음주율	전체	11.6	12.5	15.4	13.5	13.8	14.1	13.9	12.5	13.5	13.3	13.8	14.2	14.7	12.6	14.1
	연령															
	19-29	9.7	11.2	15.9	14.4	12.9	14.2	14.4	14.1	11.9	12.7	13.8	14.2	15.9	11.2	11.4
	30-39	11.4	15.7	17.1	15.2	18.0	18.8	17.2	15.6	17.6	15.8	16.4	16.9	15.2	13.8	16.6
	40-49	16.0	17.4	19.3	16.8	16.8	16.2	17.2	15.1	16.4	16.2	15.8	16.9	18.1	15.3	19.0
	50-59	13.1	10.4	16.9	13.0	13.8	14.1	13.3	12.1	14.5	13.8	15.4	14.5	14.6	13.9	13.9
	60-69	8.8	7.3	7.8	7.9	6.7	6.5	6.5	4.6	7.4	9.1	9.0	9.1	11.2	10.4	10.9
	70+	5.2	1.8	3.8	2.8	3.6	2.0	2.8	1.7	3.3	2.5	2.7	3.2	3.0	4.7	3.5

지표	구분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고위험 음주율	남자	19.9	21.3	24.5	21.4	22.0	23.2	21.8	19.7	20.7	20.8	21.2	21.0	20.8	18.6	21.6
	연령															
	19-29	13.0	16.8	21.0	20.2	17.8	19.7	19.3	18.7	14.6	14.6	17.7	17.0	16.7	13.1	14.3
	30-39	19.3	26.9	26.7	23.6	27.1	30.5	25.4	23.7	26.2	25.1	23.5	24.1	20.6	19.0	23.3
	40-49	28.1	30.2	31.1	27.3	26.7	28.1	27.8	25.9	26.0	27.6	25.7	27.2	27.7	23.2	30.1
	50-59	23.6	18.6	30.1	22.3	25.2	25.8	24.5	20.3	24.8	23.1	26.0	23.5	24.1	24.0	24.3
	60-69	17.8	14.9	16.3	14.6	13.7	12.7	13.1	8.9	14.0	16.7	17.5	15.2	20.6	17.7	21.2
	70+	12.8	3.8	8.7	7.1	8.6	4.4	6.8	4.3	6.6	5.8	6.3	7.2	7.2	10.5	7.9
	여자	3.4	3.5	6.2	5.4	5.6	4.9	6.0	5.4	6.6	5.8	6.3	7.2	8.4	6.5	6.3
	연령															
	19-29	6.2	5.4	10.4	8.1	7.8	8.2	9.2	8.8	8.9	10.6	9.6	11.1	14.9	9.0	8.3
	30-39	3.1	4.0	7.0	6.3	8.3	6.9	8.4	7.6	9.1	6.2	8.6	9.0	9.5	8.1	9.1
	40-49	3.4	4.2	7.1	6.0	6.6	4.2	6.4	4.4	7.1	4.7	5.7	6.4	8.0	7.2	7.3
	50-59	2.5	2.1	3.7	3.8	2.5	2.6	2.5	4.2	4.5	4.7	4.9	5.5	5.1	4.0	3.5
	60-69	1.0	0.5	0.4	2.0	0.3	0.8	0.7	0.8	1.4	2.0	0.9	3.4	2.3	3.5	1.0
	70+	0.9	0.6	0.8	0.2	0.4	0.5	0.2	0.0	1.0	0.3	0.3	0.5	0.2	0.8	0.3
월간 폭음율	전체	36.2	37.0	39.4	39.9	39.8	38.9	37.9	37.3	37.5	38.7	39.3	39	38.9	38.7	38.4
	연령															
	19-29	46.1	50.7	50.3	50.0	49.6	51.5	45.9	47.4	48.6	48.5	49.8	50.6	48.2	48.0	44.8
	30-39	40.5	40.6	44.9	43.6	46.9	44.7	44.7	43.0	42.4	44.9	45.6	42.6	42.1	45.0	46.3
	40-49	40.3	40.2	43.3	44.3	42.2	38.0	38.6	38.6	38.7	40.1	41.0	41.2	43.0	38.6	40.5
	50-59	31.5	32.2	35.7	36.7	36.8	37.2	37.6	35.2	33.5	34.2	34.7	34.3	34.7	34.3	34.4
	60-69	19.8	19.5	21.1	25.6	20.9	23.5	22.5	22.6	22.0	25.5	24.4	26.0	27.3	28.3	25.6
	70+	10.2	7.3	9.0	9.3	10.8	8.5	11.8	8.6	12.3	10.9	9.9	10.5	10.3	12.3	11.3
	남자	55.2	53.7	56.6	57.6	57.5	55.8	53.3	53.2	53.0	54.1	53.5	52.7	50.8	52.6	51.9
	연령															
	19-29	60.6	59.2	60.6	62.6	63.3	63.2	55.3	56.2	56.8	58.7	53.5	54.8	46.8	51.6	48.7
	30-39	62.1	62.1	63.1	62.2	66.8	65.1	60.5	59.4	60.8	64.1	62.8	57.9	55.9	62.0	59.7
	40-49	61.9	61.9	62.7	64.1	61.4	54.6	55.3	59.3	56.2	56.5	58.5	59.1	59.3	54.1	58.0
	50-59	52.3	49.1	60.4	58.5	57.5	59.0	57.9	54.5	52.4	51.3	53.0	52.5	51.5	50.9	53.9
	60-69	38.2	35.4	39.6	45.2	38.1	42.0	40.2	41.1	39.7	42.0	42.3	43.3	47.0	49.8	43.6
	70+	25.0	17.8	20.7	22.3	24.6	19.4	27.4	19.0	26.4	22.2	23.9	23.0	23.9	27.1	24.4
	여자	17.2	20.5	22.3	22.1	22.1	22.1	22.9	21.9	22.5	23.2	25.0	25.0	26.9	24.7	24.7
	연령															
	19-29	30.7	41.9	39.0	36.2	35.2	38.9	35.9	37.2	39.5	37.0	45.7	45.9	49.8	44.1	40.4
	30-39	17.9	18.0	25.9	23.9	25.9	23.7	28.0	26.5	24.2	25.1	27.1	26.0	27.1	26.2	31.6
	40-49	17.8	17.7	23.1	23.8	22.2	21.0	21.4	18.5	21.8	23.6	23.0	22.8	26.0	22.8	22.1
	50-59	10.7	15.2	10.9	14.7	16.3	15.9	17.9	16.5	15.3	17.3	16.5	16.2	17.9	17.9	15.0
	60-69	3.9	5.5	4.8	7.9	5.4	6.6	7.1	6.2	6.1	10.0	7.4	9.6	8.5	8.0	8.4
	70+	1.8	1.0	2.0	1.4	2.2	1.6	1.8	2.0	2.7	3.4	1.0	2.0	1.0	2.1	2.0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각년도)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2005년 평생음주율은 표준화 안됨

주 1) 평생 음주율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분을

2) 연간 음주율 :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한 분을

3) 월간 음주율 :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을

4) 고위험음주율 :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을

5) 월간 폭음율 :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분을

시도 성인 음주통계

(단위: %)

지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월간 음주율	서울	57.8	58.1	60.4	62.3	60.3	62.3	62.2	63.6	63.8	63.8	62.8	62.1	56.5
	부산	58.5	60.2	61.3	62.4	63.0	63.5	64.1	64.3	64.0	63.7	64.0	61.9	56.0
	대구	55.7	58.2	56.6	59.9	60.9	62.2	62.0	61.3	60.6	60.9	61.5	58.6	51.1
	인천	55.2	56.8	59.1	60.6	59.6	59.2	62.7	62.1	62.7	64.0	63.8	60.7	55.3
	광주	51.2	55.4	59.2	59.3	59.5	59.6	60.6	61.9	58.6	61.6	60.3	61.1	52.9
	대전	53.2	53.5	53.5	58.7	59.6	59.6	59.6	60.7	61.5	61.9	60.5	58.7	56.5
	울산	59.9	59.1	59.4	58.8	60.5	60.3	63.3	63.8	63.7	63.2	62.6	63.5	57.4
	세종	-	-	-	-	62.0	58.9	57.2	54.9	59.6	62.5	56.6	60.8	47.4
	경기	55.9	57.5	57.8	59.8	59.9	60.9	62.5	62.8	62.5	63.0	61.9	61.0	56.1
	강원	58.9	59.0	60.8	60.0	60.8	62.2	63.0	63.5	62.2	63.7	62.2	60.5	57.2
	충북	53.6	55.0	56.2	58.4	59.9	62.0	60.1	61.6	61.9	63.4	61.1	61.7	57.4
	충남	51.3	53.8	53.3	57.3	55.4	56.6	60.6	60.2	60.7	62.2	62.9	58.8	53.7
	전북	50.1	48.8	51.3	52.9	51.6	55.7	56.5	56.4	56.6	56.2	58.7	56.9	50.6
	전남	50.4	53.4	52.3	54.3	54.4	55.4	58.1	58.1	57.9	59.2	57.8	58.4	52.5
	경북	53.1	54.9	56.7	57.6	56.8	57.8	59.6	60.7	59.6	60.1	59.9	58.9	55.1
	경남	54.5	57.8	61.7	59.8	61.2	63.1	64.1	63.6	63.1	63.7	63.5	61.6	57.3
	제주	51.8	54.8	58.5	63.0	58.2	61.3	64.7	58.7	61.9	62.6	60.1	58.8	55.2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서울	19.0	16.2	15.2	17.8	15.8	17.2	16.6	17.6	16.0	17.2	17.0	17.0	12.9
	부산	17.5	17.0	16.5	19.3	18.0	19.5	18.4	19.3	18.4	18.4	21.2	17.5	15.5
	대구	16.8	16.3	13.9	16.0	14.9	14.9	15.9	16.4	15.6	15.6	14.7	15.3	12.9
	인천	21.2	15.6	15.6	20.2	18.3	18.3	19.6	18.5	20.0	20.4	19.4	18.3	16.3
	광주	16.0	12.8	12.2	17.0	14.1	16.8	16.0	16.5	16.9	15.6	15.9	16.4	13.7
	대전	19.2	15.6	13.7	17.3	17.0	17.5	17.1	17.8	16.8	15.9	15.6	15.0	14.5
	울산	18.3	14.5	12.4	17.0	16.0	15.6	17.7	18.0	18.6	19.9	18.8	17.9	15.0
	세종	-	-	-	-	20.4	17.3	16.8	14.5	15.3	16.1	13.8	14.0	9.7
	경기	20.0	17.4	14.6	17.7	15.7	17.9	18.5	18.2	18.1	18.5	17.9	17.3	14.5
	강원	24.1	20.7	18.9	21.4	19.5	21.5	21.1	23.0	21.3	22.5	22.6	20.8	19.7
	충북	19.0	17.7	16.9	19.6	16.6	19.1	21.7	19.9	21.5	21.2	20.1	22.2	18.2
	충남	18.5	18.8	13.5	19.1	15.1	17.5	18.4	19.3	19.5	20.3	18.6	19.1	17.0
	전북	12.8	11.6	13.1	16.6	13.7	17.2	16.6	18.7	17.0	15.4	17.7	16.7	14.3
	전남	15.6	14.0	10.8	16.6	13.5	16.9	18.9	18.1	18.4	19.3	20.3	20.4	16.1
	경북	17.3	15.9	14.2	18.2	15.2	18.3	19.1	19.2	18.9	19.8	18.9	18.2	15.6
	경남	17.3	14.8	18.1	18.1	18.0	19.7	20.4	20.2	19.4	19.5	19.4	19.5	14.4
	제주	17.1	19.0	17.4	23.2	18.8	19.9	20.9	18.8	21.9	17.7	19.7	18.3	18.6

※ 시·군·구 통계치는 아래의 자료 출처에서 확인 가능함

자료 : 질병관리청. 2008-2020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https://chs.cdc.go.kr/chs/index.do>)

주 1) 월간음주율 :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2)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비율

2 청소년 음주통계

청소년 음주통계

(단위 : %)

구분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평생 음주 경험률	전체	54.1	59.7	58.6	58.0	56.1	54.8	51.0	47.0	43.5	43.0	40.8	38.8	40.2	42.3	39.4	33.4	32.9
	남자	53.0	59.9	59.6	59.6	57.8	57.1	53.8	51.0	48.0	48.4	46.3	43.5	44.0	46.4	43.0	37.5	37.6
	여자	55.4	59.3	57.5	56.1	54.1	52.2	47.9	42.6	38.5	37.0	34.9	33.6	36.1	37.8	35.5	29.1	27.8
현재 음주율	전체	27.0	28.6	27.8	24.5	21.1	21.1	20.6	19.4	16.3	16.7	16.7	15.0	16.1	16.9	15.0	10.7	10.7
	남자	27.0	30.5	29.6	26.1	23.7	23.5	23.7	22.7	19.4	20.5	20.0	17.2	18.2	18.7	16.9	12.1	12.4
	여자	26.9	26.5	25.7	22.6	18.2	18.3	17.1	15.8	12.8	12.6	13.1	12.5	13.7	14.9	13.0	9.1	8.9
위험 음주율	전체	12.2	13.7	12.8	10.9	10.0	9.9	10.0	9.2	7.6	7.9	8.4	7.5	8.2	8.9	7.8	5.2	4.9
	남자	10.5	13.0	12.5	10.7	10.6	10.4	11.0	10.3	8.7	9.5	9.6	8.5	8.8	9.1	8.2	5.6	5.3
	여자	14.2	14.4	13.1	11.1	9.3	9.4	9.0	8.0	6.4	6.3	7.0	6.5	7.6	8.6	7.5	4.8	4.4
현재 음주자의 위험 음주율	전체	44.2	47.3	46.0	44.6	47.4	47.2	48.8	47.6	46.8	47.5	50.2	50.4	51.3	52.5	52.2	49.0	45.5
	남자	37.9	42.3	42.2	41.0	44.6	44.4	46.3	45.6	44.9	46.1	48.2	49.1	48.5	48.9	48.4	46.2	42.5
	여자	51.2	53.6	51.0	49.2	51.4	51.3	52.5	50.8	49.9	49.9	53.6	52.3	55.4	57.3	57.4	52.9	49.8
구매 시도자의 주류구매 용이성	전체	86.1	87.3	84.8	82.1	81.7	82.5	82.6	82.6	76.8	77.1	80.4	72.4	67.2	75.4	66.2	63.5	71.3
	남자	85.9	86.8	83.9	80.6	80.3	81.7	81.6	82.6	76.3	77.0	79.7	71.8	66.6	75.1	66.6	64.1	69.4
	여자	86.3	87.9	85.9	84.2	83.9	83.6	84.4	82.6	77.9	77.5	81.8	73.3	68.0	75.9	65.7	62.4	74.8
연간 음주예방 교육 경험률	전체	-	-	-	-	-	36.3	35.2	34.3	38.0	33.1	34.6	38.8	41.2	42.0	-	-	33.0
	남자	-	-	-	-	-	37.3	34.7	34.0	37.7	33.1	35.3	39.5	41.9	43.4	-	-	34.3
	여자	-	-	-	-	-	35.3	35.6	34.6	38.3	33.2	33.9	38.1	40.5	40.4	-	-	31.6
중1학생의 중학교 입학 전 음주 경험률	전체	28.7	29.7	27.9	27.6	27.8	26.8	21.4	21.0	20.0	19.4	17.5	16.0	16.9	17.4	16.0	13.5	12.8
	남자	30.0	32.4	30.4	30.8	30.0	29.7	22.9	23.2	21.7	22.1	20.7	19.4	20.2	21.6	19.3	17.3	16.1
	여자	27.3	26.5	25.1	24.1	25.5	23.6	19.8	18.7	18.0	16.6	13.9	12.3	13.4	12.8	12.5	9.4	9.2
처음 음주경험 연령(단위:세)	전체	12.6	12.7	12.8	12.8	12.8	12.8	13.0	12.8	12.9	12.9	13.1	13.2	13.2	13.3	13.2	13.4	13.2
	남자	12.4	12.6	12.7	12.7	12.7	12.7	12.9	12.7	12.8	12.8	12.9	13.0	12.9	13.0	12.9	13.2	13.0
	여자	12.8	12.9	12.9	13.0	13.0	13.0	13.1	12.9	13.0	13.1	13.3	13.5	13.5	13.7	13.5	13.7	13.6

자료 : 질병관리청(2021).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 1) 평생 음주 경험률 : 평생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2) 현재음주율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3) 위험음주율 :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비율

4) 현재 음주자의 위험음주율 : 현재 음주자 중에서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비율

5) 구매 시도자의 주류 구매 용이성 : 구매 시도자 중에서 최근 30일 동안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술을 사려고 했을 때 '많이 노력', '조금만 노력' 또는 '노력 없이도 쉽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

6) 연간 음주예방 교육 경험률 :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술(알코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7) 중1 학생의 중학교 입학 전 음주 경험률 : 중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중학교 입학하기 이전에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8) 처음 음주 경험 연령 : 평생 음주 경험자 중에서 처음으로 1잔 이상 술을 마신 연령의 평균 기준('05~'09년)에는 학년의 평균 연령으로 계산하였으나, '10년 이후에는 만나이로 계산하였으며, 연도비교를 위해 '10년 기준으로 '05~'09년 결과 재산출

3 주류 생산·판매

(1) 1인당 알코올 소비량(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15세 이상)

국가	2000년 (혹은 가까운 연도)	2018년 (혹은 가까운 연도)	국가	2000년 (혹은 가까운 연도)	2018년 (혹은 가까운 연도)
Australia	10.2	9.5	Korea	8.9	8.5
Austria	13.7	12.2	Latvia	7.1	12.6
Belgium	11.3	9.4	Lithuania	9.7	11.2
Canada	7.6	8.2	Luxembourg	13.3	11.0
Chile	6.2	7.9	Mexico	5.0	4.4
Colombia	4.5	4.3	Netherlands	10.1	8.3
Czech Republic	11.8	11.8	New Zealand	8.9	8.8
Denmark	13.1	9.7	Norway	5.7	6.0
Estonia	7.9	10.1	Poland	8.4	10.7
Finland	8.6	8.4	Portugal	13.1	10.4
France	13.9	11.6	Slovak Republic	11.0	10.1
Germany	12.9	10.8	Slovenia	11.2	10.0
Greece	9.2	6.1	Spain	11.8	10.4
Hungary	12.0	10.7	Sweden	6.2	7.2
Iceland	6.2	7.7	Switzerland	11.2	9.1
Ireland	14.2	11.0	Turkey	1.5	1.4
Israel	2.6	3.0	United Kingdom	10.4	9.8
Italy	9.8	7.8	United States	8.3	8.9
Japan	8.6	7.2	OECD average	9.4	8.8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 주류 출고량

○ 주류 출고량(kℓ) : 최근 5년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 내 분	총계	4,073,615	3,995,297	3,974,522	3,931,778	3,841,169	3,611,777
	소계	3,804,100	3,679,829	3,551,405	3,436,313	3,376,714	3,214,807
	탁주	416,046	399,667	409,407	402,580	370,500	379,976
	약주	11,332	11,490	10,820	11,479	11,213	9,483
	청주	18,459	18,753	18,312	19,068	17,784	17,113
	맥주	2,040,833	1,978,699	1,823,899	1,736,927	1,715,995	1,566,914
	과실주	15,737	16,721	13,193	12,054	10,926	11,315
	증류식소주	954	1,203	1,857	1,651	1,714	1,929
	희석식 소주	955,507	932,258	945,860	917,959	915,596	874,537
	위스키	439	470	205	126	72	56
	브랜디	71	84	77	1	-2	-1
	일반증류주	5,449	3,903	3,861	1,740	1,683	1,559
	리큐르	29,856	13,720	5,604	3,255	2,536	1,989
	기타 주류	3,921	6,140	15,167	28,645	29,178	35,951
	주정	305,496	296,721	303,143	300,828	299,519	313,986
수입분		269,515	315,468	423,117	495,465	464,455	396,97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주세신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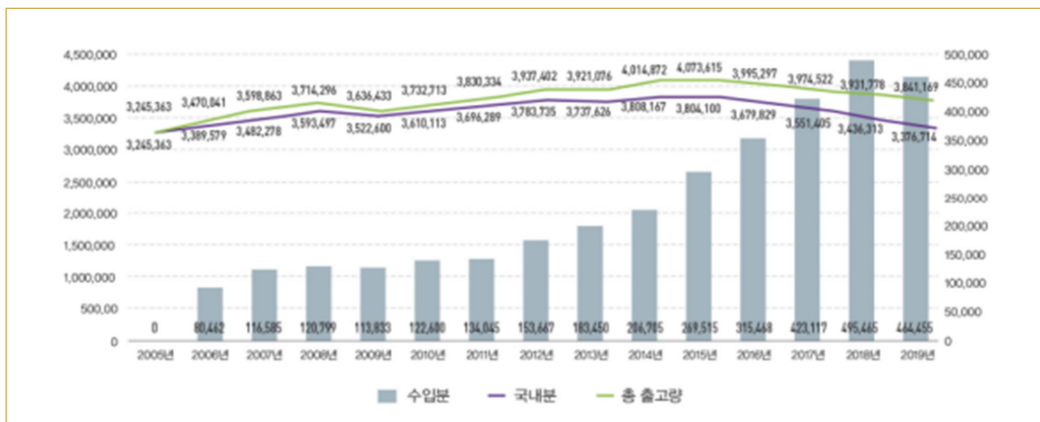
주 1) 해당연도 출고를 기준으로 작성함

2) 주정은 타 주류 및 식품 제조원료임

3) 총계는 국내분과 수입분의 합산임

○ 주류 출고량(kℓ) 추이 : 2005년 ~ 2020년

주류 출고량 추이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주세신고현황

(3) 주류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5	'15년대비
알코올음료 제조업	4,042,750(50.2%)	5,485,651(48.7%)	135.7%
비알코올음료 및 알음 제조업	4,005,173(49.8%)	5,774,747(51.3%)	144.2%
음료제조업계	8,047,923(100.0%)	11,260,398(100.0%)	139.9%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2010, 2015) : 산업세세분류 및 매출액 규모별 총괄 > 제조업 > 음료제조업

4 음주로 인한 사망·질병·사건·사고

(1) 국내 알코올 관련 사망

- 알코올성 간질환 등의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2021년 4,928명(1일 평균 13.5명),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6명임
- 알코올 관련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으며, 사고, 타살, 태아알코올증후군과 같은 알코올 관련 간접사망은 제외됨

〈알코올 관련 사망 원인〉

- 알코올 유발성 가성 쿠싱 증후군
- 알코올성 간 질환
- 알코올 유발성 만성 췌장염
- 혈액 내 알코올의 발견
- 알코올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알코올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 알코올성 위염,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 알코올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성
- 알코올 다발 신경병증
- 알코올성 근육병증
- 알코올성 심장근육병증
- 알코올에 의한 의도 미확인의 중독 및 노출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 추이

(단위 : 명)

성별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4,676	4,535	4,476	4,487	4,746	4,747	4,809	4,910	4,694	5,155	4,928
남	4,289	4,111	3,955	3,927	4,140	4,121	4,207	4,233	4,054	4,426	4,229
여	387	424	521	560	606	626	602	677	640	729	699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 추이

(단위 : 인구 10만 명당, %)

성별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9.6	9.1	8.9	8.8	9.3	9.3	9.4	9.6	9.1	10.0	9.6
남	17.6	16.5	15.6	15.5	16.3	16.1	16.4	16.5	15.8	17.3	16.5
여	1.6	1.7	2.1	2.2	2.4	2.4	2.3	2.6	2.5	2.8	2.7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알코올 관련 성·연령별 사망 추이, 2016 ~ 2020년

(단위 : 인구 10만 명당, %)

연령	전체						남자						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9.3	9.4	9.6	9.1	10.0	9.6	16.1	16.4	16.5	15.8	17.3	16.5	2.4	2.3	2.6	2.5	2.8	2.7
20~29세	0.3	0.3	0.3	0.3	0.3	0.3	0.4	0.3	0.3	0.3	0.3	0.3	0.2	0.3	0.2	0.2	0.4	0.3
30~39세	2.8	2.7	2.5	3.2	3.2	2.9	3.4	3.5	2.9	4.1	3.7	3.2	2.1	1.8	2.2	2.3	2.7	2.7
40~49세	11.4	11.8	11.7	10.1	11.1	10.7	18.0	18.7	17.9	15.4	17.0	16.1	4.7	4.7	5.4	4.7	5.1	5.1
50~59세	21.9	22.8	22.2	21.6	22.7	20.7	38.6	40.9	39.3	38.5	39.8	36.0	4.8	4.4	4.8	4.6	5.4	5.1
60~69세	21.0	19.1	20.9	18.7	21.5	20.7	39.9	36.3	39.1	34.9	40.1	38.9	3.2	2.8	3.4	3.3	3.7	3.3
70~79세	15.3	14.8	14.1	13.6	13.3	13.3	32.6	31.1	29.5	27.9	27.2	26.8	2.3	2.2	1.9	2.2	2.0	2.2
80세 이상	10.4	9.7	10.1	8.2	9.7	8.0	29.3	25.5	26.6	21.8	24.7	20.0	1.9	2.4	2.3	1.6	2.3	1.9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2) 음주관련 질환별 상대위험도

- 저위험 음주자와 비교하여 중위험, 고위험 음주자는 각종 질병의 발생위험성이 더 크며, 대부분의 질병이 고위험 음주자일수록 발생 위험성이 높음
- 특히 알코올성 다발신경병증(중위험 2.797배, 고위험 4.669배), 알코올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성(중위험 2.700배, 4.180배),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중위험 2.784배, 고위험 4.041배), 식도정맥류(중위험 2.328배, 고위험 3.779배) 알코올 사용장애(중위험 2.341배, 고위험 3.461배), 알코올성 심근병증(중위험 1.813배, 고위험 3.368배) 등이 매우 높음

음주관련 질환별 상대위험도 : 저위험 대비 중·고위험 음주자

구분	중위험음주자		고위험음주자	
	RelativeRisk	P-value	RelativeRisk	P-value
식도암	1.710	<.0001	2.246	<.0001
간암	1.107	<.0001	1.327	<.0001
후두암	1.409	<.0001	1.706	<.0001
당뇨	1.124	<.0001	1.258	<.0001
알코올 사용장애	2.341	<.0001	3.461	<.0001
단극성 우울장애	1.031	0.0090	1.087	<.0001
알코올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성	2.700	<.0001	4.180	<.0001
간질	1.115	<.0001	1.293	<.0001
알코올성 다발신경병증	2.797	<.0001	4.669	<.0001
고혈압	1.084	<.0001	1.116	<.0001
알코올성 심근병증	1.813	0.0167	3.368	<.0001
심장부정맥	-	-	1.050	0.0219
심부전	1.079	<.0001	1.092	0.0014
출혈성 뇌졸중	1.282	<.0001	1.516	<.0001
허혈성 뇌졸중	1.058	<.0001	1.138	<.0001
기타 뇌혈관질환	1.080	<.0001	1.181	<.0001
식도정맥류	2.328	<.0001	3.779	<.0001
위-식도 열상-출혈증후군	1.766	<.0001	2.420	<.0001
알코올성 위염	1.780	<.0001	2.343	<.0001
알코올성 간질환	2.219	<.0001	2.953	<.0001
간경화증	1.670	<.0001	2.446	<.0001
담석증	-	-	1.105	0.0001
급성 및 만성 췌장염	1.731	<.0001	2.257	<.0001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	2.784	<.0001	4.041	<.0001
자연유산	-	-	1.230	0.0988
알코올중독	1.903	<.0001	2.477	<.0001
기타 비의도적인 상해	1.903	0.0041	1.392	0.0008

자료 : 이선미 등(2012)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방안

주 1) 성, 연령, 보험료, 흡연여부, 음주여부, 비만도 보정

2) RR값이 1 이하 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질병 제외

3) 저위험 음주자 : 1일 평균 순수알코올 소비량 남 1-40g, 여 1-20g

4) 중위험 음주자 : 1일 평균 순수알코올 소비량 남 41-60g, 여 21-40g

5) 고위험 음주자 : 1일 평균 순수알코올 소비량 남 61g 이상, 여 41g 이상

(3) 음주운전

○ 2021년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7.3%,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의 8.1%를 차지함

전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고의 발생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연도	전체 교통사고			음주운전					
	발생건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	%	사망자	%	부상자	%
1990	255,303	12,325	324,229	-	-	-	-	-	-
1991	265,964	13,429	331,610	-	-	-	-	-	-
1992	257,194	11,640	325,943	10,319	4.0	483	4.1	14,971	4.6
1993	260,921	10,402	337,679	14,961	5.7	596	5.7	21,765	6.4
1994	266,107	10,087	350,892	17,900	6.7	565	5.6	26,918	7.7
1995	248,865	10,323	331,747	17,777	7.1	690	6.7	26,300	7.9
1996	265,002	12,653	355,962	25,764	9.7	979	7.7	38,897	10.9
1997	246,452	11,603	343,159	22,892	9.3	1,004	8.7	36,023	10.5
1998	239,721	9,057	340,564	25,269	10.5	1,113	12.3	40,489	11.9
1999	275,938	9,353	402,967	23,718	8.6	998	10.7	39,282	9.7
2000	290,481	10,236	426,984	28,074	9.7	1,217	11.9	47,155	11.0
2001	260,579	8,097	386,539	24,994	9.6	1,004	12.4	42,165	10.9
2002	231,026	7,222	348,149	24,983	10.8	907	12.6	42,316	12.2
2003	240,832	7,212	376,503	31,227	13.0	1,113	15.4	55,230	14.7
2004	220,755	6,563	346,987	25,150	11.4	875	13.3	44,522	12.8
2005	214,171	6,376	342,233	26,460	12.4	910	14.3	48,153	14.1
2006	213,745	6,327	340,229	29,990	14.0	920	14.5	54,255	15.9
2007	211,662	6,166	335,906	28,416	13.4	991	16.1	51,370	15.3
2008	215,882	5,870	338,962	26,873	12.4	969	16.5	48,497	14.3
2009	231,990	5,838	361,875	28,207	12.2	898	15.4	50,797	14.0
2010	226,878	5,505	352,458	28,641	12.6	781	14.2	51,364	14.6
2011	221,711	5,229	341,391	28,461	12.8	733	14.0	51,135	15.0
2012	223,656	5,392	344,565	29,093	13.0	815	15.1	52,345	15.2
2013	215,354	5,092	328,711	26,589	12.3	727	14.3	47,711	14.5
2014	223,552	4,762	337,497	24,043	10.8	592	12.4	42,772	12.7
2015	232,035	4,621	350,400	24,399	10.5	583	12.6	42,880	12.2
2016	220,917	4,292	331,720	19,769	8.9	481	11.2	34,423	10.4
2017	216,335	4,185	322,829	19,517	9.0	439	10.5	33,364	10.3
2018	217,148	3,781	323,037	19,381	8.9	346	9.2	32,952	10.2
2019	229,600	3,349	341,712	15,708	6.8	295	8.8	25,961	7.6
2020	209,654	3,081	306,194	17,247	8.2	287	9.3	28,063	9.2
2021	203,130	2,916	291,603	14,894	7.3	206	7.1	23,653	8.1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주 : 비율(%)는 전체사고 대비 음주운전 비율임

(4) 주취범죄

○ 2020년 전체 범죄 중 주취자의 범죄율은 16.1%이며, 특히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의 강력범죄는 전체 범죄의 26.1%를 차지함

범죄 유형별 범죄자 중 주취자 비율

연도	구분	전체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 (폭력)	기타범죄
			소계	살인	강도	방화	강간(성폭력)		
2006	전체(명)	1,033,914	14,851	895	2,836	1,039	10,081	283,683	735,380
	주취자(명)	165,764	4,256	287	453	465	3,051	103,072	58436
	%	16.03	28.66	32.07	15.97	44.75	30.26	36.33	7.95
2007	전체(명)	1,008,253	14,114	873	2,922	982	9,337	305,386	688,753
	주취자(명)	180,122	4,104	296	435	390	2,983	109,220	66,798
	%	17.86	29.08	33.91	14.89	39.71	31.95	35.76	9.70
2008	전체(명)	1,179,445	18,961	909	3,737	1,413	12,902	401,691	758,793
	주취자(명)	210,679	5,655	333	559	687	4,076	136,003	69,021
	%	17.86	29.82	36.63	14.96	48.62	31.59	33.86	9.10
2009	전체(명)	1,278,802	21,365	1,075	5,030	1,407	13,853	400,136	857,301
	주취자(명)	210,536	5,948	405	762	633	4,148	132,853	71,735
	%	16.46	27.84	37.67	15.15	44.99	29.94	33.20	8.37
2010	전체(명)	1,108,307	22,267	1,002	3,286	1,286	16,693	342,589	743,451
	주취자(명)	187,421	6,250	368	547	596	4,739	115,202	65,969
	%	16.91	28.07	36.73	16.65	46.35	28.39	33.63	8.87
2011	전체(명)	1,114,495	25,019	1,120	4,319	1,389	18,191	336,529	752,947
	주취자(명)	189,818	6,870	426	621	584	5,239	110,460	72,488
	%	17.03	27.46	38.04	14.38	42.04	28.80	32.82	9.63
2012	전체(명)	1,287,401	24,863	1,098	3,503	1,398	18,864	374,354	888,184
	주취자(명)	210,976	7,145	425	522	608	5,590	121,324	82,507
	%	16.39	28.74	38.71	14.90	43.49	29.63	32.41	9.29
2013	전체(명)	1,276,886	27,580	1,028	2,718	1,382	22,452	344,376	904,930
	주취자(명)	205,655	8,137	371	413	645	6,708	114,781	82,737
	%	16.11	29.50	36.09	15.19	46.67	29.88	33.33	9.14
2014	전체(명)	1,492,974	29,715	1,036	2,097	1,444	25,138	329,614	1,133,645
	주취자(명)	417,868	9,345	357	324	679	7,985	106,667	301,856
	%	27.99	31.45	34.46	15.45	47.02	31.76	32.36	26.63
2015	전체(명)	1,552,517	31,639	1,002	2,021	1,479	27,137	342,526	1,178,352
	주취자(명)	409,394	9,599	350	316	672	8,261	103,176	296,619
	%	26.37	30.34	34.93	15.64	45.44	30.44	30.12	25.17
2016	전체(명)	1,594,925	33,344	1,012	1,738	1,350	29,244	347,523	1,214,058
	주취자(명)	400,909	10,121	390	277	579	8,875	101,816	288,972
	%	25.14	30.35	38.54	15.94	42.89	30.35	29.30	23.80
2017	전체(명)	1,457,544	36,404	929	1,478	1,263	32,734	330,548	1,090,592
	주취자(명)	362,946	10,733	335	217	503	9,678	94,216	257,997
	%	24.90	29.48	36.06	14.68	39.83	29.57	28.50	23.66
2018	전체(명)	1,372,137	36,145	890	1,186	1,360	32,709	315,571	1,020,421
	주취자(명)	316,025	10,212	299	182	586	9,145	86,459	219,354
	%	23.03	28.25	33.60	15.35	43.09	27.96	27.40	21.50
2019	전체(명)	1,728,027	37,003	914	1,389	1,290	33,410	310,600	1,380,424
	주취자(명)	283,575	10,194	295	111	484	9,304	83,242	190,139
	%	16.41	27.55	32.28	7.99	37.52	27.85	26.80	13.77
2020	전체(명)	1,612,424	35,028	822	1,226	1,160	31,820	278,122	1,299,274
	주취자(명)	257,904	9,139	234	117	424	8,364	73,133	175,632
	%	15.99	26.09	28.47	9.54	36.55	26.29	26.3	13.52
2021	전체(명)	1,343,179	33,937	728	758	916	31,636	230,596	1,078,646
	주취자(명)	220,606	7,565	218	81	342	6,924	59,361	153,680
	%	16.42	22.29	29.95	10.69	37.34	21.89	25.74	14.25

자료 : 대검찰청(2021), 범죄분석(정보자료)범죄분석)범죄통계표)범행특성)범행당시 범죄자의 상태)범죄자 성별 범행 시 정신상태)

주 : 2013년까지는 “강간”, 2014년부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통계치임

IV

관련법률

1 주류광고의 기준 : 국민건강증진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6. 12.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 9. 27., 2008. 2. 29., 2010. 1. 18.>

1. 삭제 <2020. 12. 29.>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신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28조(보고·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제8조제4항, 제8조의2,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0. 12. 29.>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4. 7., 2006. 9. 27., 2007. 12. 14., 2011. 6. 7., 2014. 3. 18., 2015. 6. 22., 2020. 4. 7., 2020.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주류광고의 기준) 법 제8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6.15] [[시행일 2021.6.3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15.>

주류광고의 기준(제10조 관련)

1.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것
2.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를 방송광고하지 않을 것
3.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노래를 사용하지 않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하지 않을 것
 - 가. 「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한 7시부터 22시까지의 방송광고
 - 나. 「방송법」에 따른 라디오방송을 통한 17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의 방송광고 및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방송광고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광고를 상영하지 않을 것
6. 다음 각 목의 시설, 장소나 행사에서 광고를 하지 않을 것
 - 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 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
 -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을 이용하여 7시부터 22시까지 동영상 광고를 하지 않을 것.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 시설의 간판을 이용하여 자사(自社)의 주류를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삭제 <2021. 6. 15.>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주류) ①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2.21.>

1.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4.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5.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 ②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어린이·청소년·임산부(의상, 분장, 연출 등을 통해 외형적으로 시청자가 어린이·청소년·임산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인물을 포함한다)를 등장시키거나, 어린이·청소년의 목소리를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1.>

- ③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명칭이나 주류의 구매 또는 음주를 권장·유인하는 표현 등 주류의 판매를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류의 제공 및 할인 판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1.>
- ④ 주류가 아닌 상품의 방송광고에서도 제1항 각 호에서 금지한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1.>
- ⑤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법령에 따른 과음 경고문구를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 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12.1., 2016.12.28.>
- 13.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 ③ 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의2(방송광고 시간의 제한) ① 주류광고 또는 대부업광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10.15.>

- 1. 주류
 - 가. 텔레비전 방송광고 : 07:00 - 22:00
 - 나. 라디오 방송광고 : 17:00 - 익일 08:00. 다만, 08:00 - 17:00의 시간대라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2 절주 교육·홍보·과음경고문구 표기: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2020. 12. 29.>

⑤ 삭제 <2002. 1. 19.>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 19., 2007. 12. 14.,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2. 주류의 광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3.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폐해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4. 7., 2006. 9. 27., 2007. 12. 14., 2011. 6. 7., 2014. 3. 18., 2015. 6. 22., 2020. 4. 7., 2020. 12. 29.>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개정 2007. 2. 8., 2018. 12. 1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08. 10. 10., 2010. 3. 19., 2012. 12. 7.>

② 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 12. 7., 2021. 12. 3.>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12. 3.>**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제4조제2항 관련)****1. 표기방법**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글자의 크기 등

가. 경고문구는 판매용 용기에 부착되거나 새겨진 상표 또는 경고문구가 표시된 스티커에 상표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나. 글자의 크기는 상표에 사용된 활자의 크기로 하되, 그 최소크기는 다음과 같다.

- (1)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 7포인트 이상
- (2)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이상인 경우 : 9포인트 이상

3. 색상

경고문구의 색상은 상표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밀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10. 10., 2010. 3. 19., 2012. 12. 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0., 2012. 12. 7.>

-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주류
-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주류
[전문개정 2003. 4. 1.][제목개정 2012. 12. 7.]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

[본조신설 2013. 12. 31.]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시행 2018.12.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63호, 2018.12.10., 타법개정]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재검토기한 규정>

- 삭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63호, 2018.12.10. 타법개정]

V

활용양식 및 자료

1 생활 속 절주실천수칙

 1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절주 실천 수칙	 2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3 원샷을 하지 않는다.		 4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5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이런 사람들은 꼭 금주해야 해요!			
			
19세 이하 청소년	술 한 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약 복용 중인 사람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나의 음주 습관은?



다음 각 문항 중 당신에게 해당하는 대답에 ‘○’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나오는 1잔이란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1잔의 양을 의미합니다.

즉, 맥주의 경우 맥주잔 1잔, 소주의 경우 소주잔 1잔, 양주의 경우 양주잔 1잔 등 각 술에 따른 술자에서의 1잔을 뜻합니다.

일시 : 20 년 월 일 장소 : 성별 : 남 여 연령 : 만 세

112

음주 수준별 행동지침

남 0~9점

여 0~5점

정상 음주
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건강하고 안전한 음주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정음주량을 유지하고 행동지침을 지켜주세요.

- 음주량을 지킵니다.
 - 한 번에 남자 2~4잔 이하, 여자 1~2잔 이하, 일주일에 2~3일은 금주하기
 - 65세 이상의 노인도 일주일에 5잔 미만으로 마시기
- 음주폐해 취약자는 금주합니다.
 - 임신부, 청소년, 알코올의존 가족력이 있는 경우 등은 술을 마시지 않기
- 신체질환이 있거나 음주 후 난폭행동, 폭력, 사고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 예 : 고혈압, 당뇨, 협심증, 불면 등의 신체질환
- 행동지침을 지킵니다.
 - 빈 속에 마시지 않기
 - 안주(야채, 과일, 생선, 두부)를 충분히 먹기
 - 술 마신 후 2~3일은 안 마시기
 -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마시기
 - 술 마시는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고 술을 섞어 마시지 않기

남 10~19점

여 6~9점

위험 음주
단계입니다

음주량과 음주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은 술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음주문제 예방을 위해 아래 행동지침을 지켜주세요.

- 행동지침을 지킵니다.
 - 빈 속에 마시지 않기
 - 안주(야채, 과일, 생선, 두부)를 충분히 먹기
 - 술 마신 후 2~3일은 안 마시기
 -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마시기
 - 술 마시는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고 술을 섞어 마시지 않기
- 과음으로 인한 음주폐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 전문요원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 음주를 유발하는 상황과 음주패턴의 특징은?
 - 과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찾기
 - 예 : 음주일지작성, 작은 잔으로 마시기, 음주 속도 제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 훈련, 폭탄주 혹은 독주 피하기, 안주 충분히 먹기, 술 마시지 않는 날 정하기 등
- 주기적으로 음주행동을 점검하고 AUDIT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합니다.

남 20점 이상

여 10점 이상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단계
입니다

음주량과 음주횟수 조절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술을 마셔야 기분도 좋고, 일도 잘되고, 관계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줄이는 단계가 아니라 끊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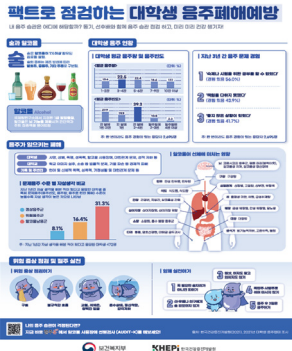
- 신체 질환이 있습니까?
- 사회적 역할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 예 : 직장, 가정, 지역사회에서 술로 인한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사회적 혹은 법적 문제를 일으킴
- 가까운 전문 병원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신체에 질병이 생기면 치료받아야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알코올 사용장애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 인쇄용 파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주On 홈페이지(<https://www.khepi.or.kr/alcoholstop>)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작·발간 자료 목록

* 아래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절주On 홈페이지(www.khepi.or.kr/alcoholstop)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용 자료

목록	내용
	대학생 절주교육 영상 (나를 술로 망치는 사람들) - 알코올의 유해성 - 음주의 신체 및 사회적 폐해 - 대학생 음주문화 및 음주인식 - 음주문제 경험
	대학생 절주 실천방법 안내 - 코로나 19 이후 대학생 음주행태 -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실시 - 학생 절주 실천방법 안내
	팩트로 점검하는 대학생 음주폐해예방 - 술과 알코올 - 대학생 음주현황 - 음주가 일으키는 폐해 - 음주 후 위험 증상 점검 및 절주실천
	대학생 절주실천수칙 - 대학생 절주를 위한 5가지 실천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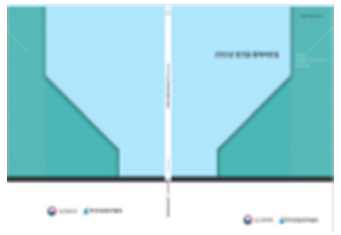
목록	내용	
	유아 음주예방 교육영상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이 아파요)	- 술이 몸에 미치는 영향 -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
	유아 음주예방 교육영상 (술은 안 돼요)	-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 - 술이 몸에 미치는 영향
	유아 음주예방 교육영상 (동요)	- 알코올의 유해성을 알 수 있도록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와 가사로 구성
	유아 음주예방 교육 워크북 (2종)	- 유아 음주예방교육 영상 캐릭터 및 이야기 소개 - 이야기 생각해보기 - 색칠공부 - 다른 그림 찾기
	음주폐해예방 표준교육자료 (일반인 대상) ※ 2022년 개정판	- 알아보기 : 술과 음주현황 - 이해하기 : 음주폐해 - 실천하기 : 절주실천 - 참고 : 음주폐해예방 정책
	청소년과 함께하는 음주예방 ※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활용 매뉴얼	- 청소년과 음주 - 청소년 음주예방정책 - 청소년 음주예방 콘텐츠 - 청소년 음주 단기개입 등

목록		내용
	음주폐해예방 강사매뉴얼 ※ 2020년 개정판	- 음주현황 및 예방정책, 알코올의 영향, 음주폐해예방 교육안 등
	음주폐해예방 표준교육자료 (일반인 대상) ※ 2019년 개정판	- 알아보기 : 술과 음주현황 - 이해하기 : 음주폐해 - 실천하기 : 절주실천
	청소년 음주예방, 지금부터 시작해요 (교육용 PPT)	- 19세와 음주 - 타인에게 미치는 2차폐해 - 내가 선택해야 한다면
	청소년과 함께하는 음주예방	-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활용매뉴얼
	모르면 손해보는 절주상식 - 남성 근로자 절주실천 - (교육용 PPT)	- 우리나라 음주행태 - 음주폐해 - 절주실천하기
	모르면 손해보는 절주상식 - 여성 근로자 절주실천 - (교육용 PPT)	- 우리나라 음주행태 - 음주폐해 (여성 음주) - 절주실천하기

목록	내용	
	음주폐해예방 교육용 프레지	- 중독 및 음주폐해예방 교육
	음주폐해예방 교육용 PPT 5종	- 음주와 건강 - 임신부 음주 - 대학생 음주 -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 주류판매 가이드라인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 교사용 지도서 - 학부모용 리플렛 - 교육용 PPT - 워크북
	인포그래픽 8종	- 절주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술과 혈중알코올농도 - 술과 심장·혈관 질환 - 음주,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가? - 해로운 음주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 - 내가 마신 순수 알코올 양은? - 음주와 체중 - 청소년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주류 광고를 보고 있을까? - 청소년이 술 사는 것 어렵지 않았나?
	음주위험도 검사도구	- 음주위험도 검사도구(AUDIT-K) 및 음주 수준별 행동지침

목록		내용
	폭탄주 마시지 않기 교육 영상	- 폭탄주의 위험성 홍보 영상
	음주폐해예방 교육용 영상 (모션그래픽)	- 5가지 절주실천수칙 교육 영상
	청소년 음주예방 에듀라마 5차시	- 너에게 중독되고 싶어 : 청소년 음주의 유해성 - 그놈의 한 잔 : 청소년 음주의 신체적, 사회적 폐해 - 이려다 손절 각 : 청소년 금주를 위한 개인적 노력 - 알지도 못하면서 :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 - 너를 위해 하는 말 : 스트레스 해소방법
	대상별 교육영상 4종	- 대학생, 여성, 직장인, 노인 대상 음주 폐해예방 - 교육용 콘텐츠(영상)

(2) 책자/리플릿

목록	내용	
	2022 절주서포터즈 활동 사례집	- 2022 절주서포터즈 활동 사례
	지역사회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가이드	- 주류광고 및 주류용기 과음 경고문구 표기, 공공장소 금주구역 등 모니터링 운영 방법 및 내용 - 관련 법적 근거 및 내용 최신화
	2022년 알코올 통계자료집	- 알코올 생산과 소비 - 음주폐해 - 알코올 조세 및 가격 - 성인 음주행동유형 - 청소년 음주행동 - 주류광고 - 국외통계지표 등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사례집	- 미디어 음주장면 노출과 음주와의 관계 - 2021년 미디어 음주장면 모니터링 개요 (TV, 유튜브, OTT) -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위반 음주장면 사례
	주류 광고 모니터링 매뉴얼	- 주류 광고 모니터링 체계 - 주류 광고 모니터링의 범위 및 방법 - 판단기준 및 사례
	노인 절주교육 인포그래픽 3종	- 노인음주와 수면/ 약물복용/ 인지 등 노인 대상 절주교육 시 활용

목록		내용
	부모 대상 음주예방 교육 리플릿	-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를 위한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가이드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서	- 음주폐해와 주류광고 - 주류광고 법령 - 주류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 주요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및 제재 사례 ※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 (시행 '21.06.30.)내용 설명
	2021 전주서포터즈 활동 사례집	- 2021전주서포터즈 활동 사례
	2021년 알코올 통계자료집	- 알코올 생산과 소비 - 음주폐해 - 알코올 조세 및 가격 - 성인 음주행동유형 - 청소년 음주행동 - 주류광고 - 국외통계지표 등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개요 - 주요 추진실적 - 추진과제별 추진실적 - 총평 및 제언

목록		내용
	절주실천수칙 ※ 2021년 개정판	- 생활 속 절주실천수칙(2종)
	2020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집	- 광역자치단체(3개) 및 기초자치단체 (12개)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2020 절주서포터즈 활동 사례집	- 2020절주서포터즈 활동 사례
	알코올 팩트시트	- 코로나19와 음주(3종) - 한국의 공중보건문제 : 음주(1종)
	근로자 절주교육 포스터	- 절주가 필요한 이유 - 함께 실천해요!(사업주, 근로자)

목록	내용	
	코로나-19와 음주 포스터	- 코로나-19 관련 절주 지침
	음주와 흡연 리플릿	- 음주와 흡연의 연관성 - 음주자가 흡연을 할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 - Q&A
	음주와 영양 리플릿	- 술의 영양적 특징 - 음주로 인한 영양 문제 - Q&A
	지역사회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가이드	- 지자체에서 적용 가능한 절주환경 조성 활동 내용 및 사례 - 지역사회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방법 및 내용
	2019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집	- 광역자치단체(3개) 및 기초자치단체(12개)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목录		내용
	2019 절주서포터즈 우수활동 100선	- 2019 절주서포터즈 우수 활동 사례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기 안내	- 올바른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기 안내
	SAFER Brochure 번역자료	- WHO에서 발표한 SAFER Brochure 번역자료
	SAFER Framework 번역자료	- WHO에서 발표한 SAFER Framework 번역자료
	2018년 지역사회 우수사례집	- 15개 보건소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목록		내용
	음주폐해예방 상담가이드	- 절주상담, 금연, 영양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9개 분야에 대한 개념, 음주와의 상관관계, 상담 전략 등
	음주폐해예방 콘텐츠 자료집	- 음주폐해예방 홍보 콘텐츠 모음 - 2018 절주서포터즈 우수 활동 사례
	음주폐해예방 바인더형 책자 (소그룹 교육용)	- 알아보기 : 술과 음주현황 - 이해하기 : 음주폐해 - 실천하기 : 절주실천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기 기준 안내서	- 과음경고문구 표기 법적 근거 - 과음경고문구 표기 실태 - 과음경고문구 표시 방법 해석 등
	2018 알코올 통계자료집	- 알코올 생산과 소비 - 알코올 조세 및 가격 - 음주폐해 - 음주행동 유형 - 주류 광고 등 알코올 관련 분야 통계

목록	내용	
	2017 알코올 통계자료집	- 알코올 생산과 소비 - 알코올 조세 및 가격 - 음주폐해 - 음주행동 유형 - 주류 광고 등 알코올 관련 분야 통계
	음주폐해예방 가이드 소책자 3종	- 음주와 건강 - 임신부 음주 -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환경 가이드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주류판매 가이드라인	- 주류판매자 교육 리플릿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매뉴얼 소책자	- 청소년 불법주류판매 실태조사 모니터링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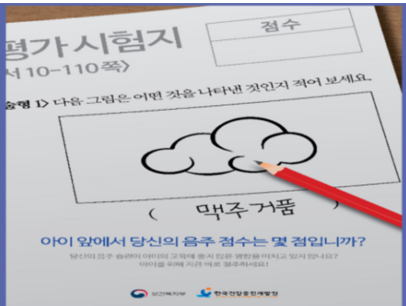
목록		내용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	저위험 음주 가이드 리플릿	- 음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음주량 안내
 세계보건기구 해로운 음주감소를 위한 세계 전략 Global strategy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alcohol	세계보건기구 해로운 음주감소를 위한 세계전략	- 배경, 목적과 목표, 국가 정책 및 수단 등 해로운 음주감소를 위한 세계 전략 안내
 2012 청소년 음주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가이드북 국립보건연구원 제공	청소년 음주예방 프로그램 가이드북	-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예방 교육프로그램

(3) 홍보 캠페인용 자료

목록	내용
	공공장소 금주구역 홍보 포스터 3종 - 공공장소 금주구역 홍보 - 공원, 어린이 관련 시설 금주구역 지정 안내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금지 홍보물 - 술담배 대리구매 관련 홍보물 3종* * 소형등신대, 스티커, 포스터
	공공장소 금주구역 표지 활용 가이드라인 - 금주구역 계도활동을 위한 공공장소 금주구역 표지 활용 가이드라인
	브랜드 홍보 가이드북 - 음주폐해예방 브랜드 로고 및 캐릭터 규정집
	음주고글RC카 레이싱체험 - 음주 고글 RC카 레이싱 체험 트랙
	공공장소 금주 안내 포스터 - 공공장소 금주 안내
	과음경고문구 표기 안내 포스터 - 올바른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기안내

목록	내용	
	캐릭터 인형	- 절주캐릭터 의지미 인형
	가상음주 고글체험	- 가상 음주 보행체험용 바닥
	음주관련 OX퀴즈	- 술에 대한 진실! OX 퀴즈
	2017년도 리스타트 캠페인 홍보물	- 캠페인 배너 3종 - 포스터 2종 - 포토월 2종 - 현수막 3종
	청소년 음주폐해예방 홍보물 [19금酒]	- 19금酒 로고 - 청소년 주류판매 유해표시 도안 - 주류 판매자 매뉴얼 - 홍보포스터, 스티커 2종
	음주폐해예방 포스터 2종	- 성인 및 청소년용 포스터

(4) 공모전 수상작

목록	내용
	절주송 UCC 공모전 입상작 8종 - 'Get 절주 With me', '우리 같이 절주할래' 등"
	리스타트 캠페인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입상작 16종 - '당신의 음주 점수는?', '술에서 당신의 행복을 찾지 마세요.' 등
	리스타트 캠페인 콘텐츠 공모전 모바일광고 입상작 17종 - '건전한 음주 문화를 위해 건배', '절주실천에 의한 우리 몸의 변화' 등
	리스타트 캠페인 콘텐츠 공모전 캘리그래피 입상작 5종 - 알코올 멈추면, '당신의 봄날도 시작 됩니다', '가족의 행복이 시작 됩니다', '가족의 웃음이 시작 됩니다' 등

(5) 웹툰/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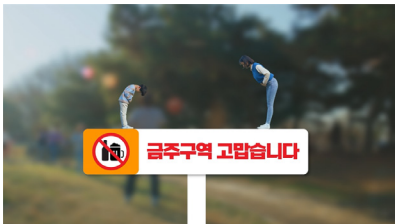
목록	내용	
	금주구역 안내 카드뉴스	- 금주구역이란? - 금주구역의 필요성 - 금주구역 해외 사례"
	가정 내 음주폐해예방 카드뉴스	- 청소년 음주 현황 - 청소년 음주 관련 규제 - 청소년 음주 예방 가이드
	대학생 음주폐해예방 카드뉴스	- 대학생 연간 음주율 - 대학생 음주행태 조사관련 결과 - 대학생 절주실천수칙"
	음주와 환경 카드뉴스	- 음주 폐해 관련 통계 - 주류용기와 환경오염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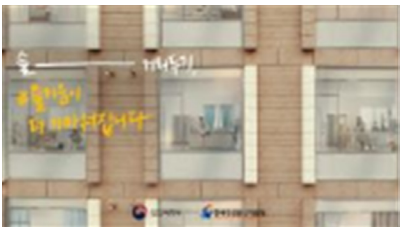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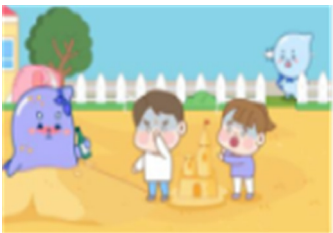
목록	내용	
	노인 음주폐해예방 카드뉴스	- 노인 연간 음주율 - 노인 음주가 특히 더 위험한 이유 - 노인 음주폐해예방 가이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음주실태 비교 카드뉴스	- 2021년 하반기 음주실태조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후 음주실태 비교결과’를 통해 절주실천수칙의 중요성 강조
	숙취해소제 관련 카드뉴스	- 2021년 대국민 음주실태조사에서 ‘숙취해소제 응용경험’을 통한 숙취해소제 오해와 진실을 밝히다
	코로나19와 음주소비 변화 카드뉴스	- 2021년 상반기 대국민 음주인식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음주량은 줄었으나 혼술·홀술 음주문화에 대한 절주실천 수칙의 중요성 강조

목록		내용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 카드뉴스	- 사례를 통한 주류광고 준수사항을 통해 주류광고 위반사례를 알아보다
	음주와 흡연 카드뉴스	- 음주와 흡연의 연관성을 알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자!
	음주폐해예방(중독) 웹툰 8종	- “술 가르치는 세상”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등
	음주폐해예방 카드뉴스 25종	- ‘술자리에서 살아남는 방법’, ‘연말 음주생존수칙’, ‘생활 속 절주수칙’, ‘TV로 술 배우는 아이들’ 등

(6) 영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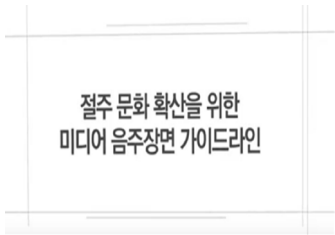
목록		내용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 '술은 답이 아닙니다'	- 음주폐해예방 홍보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 '술은 답이 아닙니다'	- 음주폐해예방 홍보
	초등학생 음주예방교육 저학년 1화	- (해룡해룡의 유혹편) 술에 대한 이해
	초등학생 음주예방교육 저학년 2화	- (술의 저주편) 술이 우리 몸에 미치는 나쁜 영향
	초등학생 음주예방교육 저학년 3화	- (몸을 위한 주문, 'NO!' 편) 술을 권하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는 내용
	초등학생 음주예방교육 고학년 1화	- (Catch Alcohol) 술과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무엇일까요?

목록		내용
	초등학생 음주예방교육 고학년 2화	- (알코올의 모험, 우리 몸의 던전 퀘스트) 술이 일으키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초등학생 음주예방교육 고학년 3화	- (알코올 브레이커) 술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요.
	노인과 음주	- (노인 음주교육 영상) 음주가 노인의 몸에 미치는 영향
	노인과 절주	- (노인 절주교육 영상) 노인에게 맞는 적절한 음주 방법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 '금주구역, 고맙습니다'	- 공공장소 금주구역 홍보
	공공장소 금주구역 홍보 영상	- 공공장소 금주구역 홍보

목록	내용	
	생활 속 절주실천수칙	- 절주캐릭터를 활용 절주실천수칙 홍보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 '술과 거리두기'편	- 건강한 일상을 위한 다양한 혼자만의 시간 보내기 방법 홍보
	공공장소 금주구역 공익광고 공원편	- 공공장소(공원) 금주구역 홍보
	공공장소 금주구역 공익광고 어린이집편	- 공공장소(어린이집) 금주구역 홍보
	피하자, 술! 음주예방교육 -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금주이유 -	- 음주폐해 - 알코올중독 - 저위험음주량 - 청소년음주의위법성 - 속지말자! 주류마케팅! - 금주를 실천하려면?
	피하자, 술! 음주예방교육 - 예비성인 편 -	- 고3음주의위법성 - 음주폐해와 사례(신체, 중독, 사회) - 저위험음주량 - 속지말자! 주류마케팅 - 금주를 실천하려면?

목록	내용
	피하자, 술! 음주예방교육 - 청소년 금주교육을 위해 선생님들이 명심해야 할 것 - -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지도영상
	절제하자, 술! -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절주 - - 음주 습관 확인하기 - 음주 동기와 음주폐해 - 저위험 음주가이드라인 - 절주, 함께 실천해 나가요!
	절제하자, 술! -여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절주 - - 음주 습관 확인하기 - 음주 동기와 음주폐해(여성) - 저위험 음주가이드라인 - 절주, 함께 실천해 나가요!
	알코올 통계 영상 성인편 - 성인 음주폐해를 통계 수치로 알아보는 영상
	알코올 통계 영상 청소년편 - 청소년 음주폐해를 통계 수치로 알아보는 영상
	절주행동수칙 회식편 - 회식 상황에서 절주를 돕는 뒤집잔 소개

목록	내용	
	절주행동수칙 가족모임	- 가족 모임 상황에서 가족과의 건강한 시간을 위한 뒤집잔 소개
	절주행동수칙 혼술편	- 혼술 상황에서 나를 위한 뒤집잔 소개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무집행 방해편)	- 주취자로 인한 공무집행의 어려움 전달
	회식 때 직장인들이 피하고 싶은 순간 (술자리 문화편)	- 직장 내 술을 권하는 문화 존재 전달
	그렇게 적당히 마시라니까... (공공장소 주취자 편)	-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음주의 사회적 폐해 전달
	음주폐해예방 교육용 영상 (모션그래픽)	- 5가지 절주실천수칙 교육 영상

목록		내용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주제 영상	- 건전한 절주문화 확산 및 실효성 있는 음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 설명 영상
	리스타트 캠페인 바이럴 영상	-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폐해를 강조하는 영상
	폭탄주 마시지 않기 교육 영상	- 폭탄주의 위험성 홍보 영상
	2017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주제 영상	- 잘못된 음주행태를 조장하는 미디어 속 음주장면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 설명 영상
	2017년 보건복지부 중독폐해예방 광고 영상	- 5가지 절주실천수칙 홍보 영상
	보건복지부 알코올 리쌍크 캠페인 영상	-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알리는 영상

목록	내용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주제 영상	- 건전한 절주문화 확산 및 실효성 있는 음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 설명 영상
	리스타트 캠페인 바이럴 영상	-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폐해를 강조하는 영상
	폭탄주 마시지 않기 교육 영상	- 폭탄주의 위험성 홍보 영상
	2017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주제 영상	- 잘못된 음주행태를 조장하는 미디어 속 음주장면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 설명 영상
	보건복지부 알코올 리스킹 캠페인 영상	-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알리는 영상

4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1)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번호	시도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1	서울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로구 동숭3길 40 일석기념관 3,4층	02-3444-9934
2	부산	부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남구 수영로 299 루미너스타원 12층	051-242-2575
3	대구	대구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라파엘관 5층	053-256-0199
4	인천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4	032-468-9911
5	광주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동구 제봉로 27 한일빌딩 5층	062-600-1930
6	대전	대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구 대종로488번길 9(은행동)	042-486-0005
7	울산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남구 화합로 105 (달동) 로하스빌딩 2층	052-716-7199
8	세종	세종 정신건강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1, 2층	044-865-4597
9	경기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정자동) 경기도의료원 2층	031-212-0435
10	강원	강원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춘천시 춘천로 306-5	033-251-1970
11	충북	충청북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1	043-217-0597
12	충남	충청남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별관 301호	041-633-9183
13	전북	전라북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57 아이원빌딩4층	063-251-0650
14	전남	전라남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나주시 세남로 1328-31	061-350-1700
15	경북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87, 복지동3층	054-748-6400
16	경남	경상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457번길 48	055-239-1400
1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 교병원 내 별관	064-717-3000

(2)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도	시군구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서울 (25)	강남구	강남구 일원로9길 38	02-2226-0344
	강동구	강동구 성내로 45, 1층	02-471-3223
	강북구	강북구 삼양로 19길 154	02-985-0222
	강서구	강서구 공항대로561, 강서구보건소 지하1층	02-2600-5926
	관악구	관악구 관악로 145, 4층	02-879-4911
	광진구	광진구 긴고랑로 110 중곡종합건강센터 4층	02-450-1895
	구로구	구로구 새말로60, 제중요양병원 지하1층	02-861-2284
	금천구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 5층	02-3281-9314
	노원구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5층	02-2116-4591
	도봉구	도봉구 방학로3길 117, 1층	02-900-5231
	동대문구	동대문구 홍릉로 81(청량리동) 홍릉문화복지센터 2층	02-963-1621
	동작구	동작구 사당로 253-3	02-820-4072
	마포구	마포구 성산로4길 15 3층	02-3272-4937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290 4층	02-3140-8081
	서초구	서초구 내곡동 염곡말길 9 느티나무쉼터3층	02-2155-8215
	성동구	성동구 행당로12	02-2298-1080
	성북구	성북구 화랑로 63	02-2241-6313
	송파구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02-2147-030
	양천구	양천구 목동서로 339 양천구보건소 지하1층	02-2061-8881
	영등포구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4층	02-2670-4793
	용산구	용산구 녹사평대로150 용산보건소 1층	02-2199-8140
	은평구	은평구 연서로34길 11, 3층(불광동, 보건분소)	02-351-8680
	종로구	종로구 성균관로 15길 10	02-745-0199
	중구	중구 서소문로 6길 16 중림종합복지센터 3층	02-2236-6606
	종랑구	종랑구 면목로 238 종랑구민회관 1층	02-3422-5921
부산 (16)	강서구	강서구 공항로 811번길 10 강서브라이트센터 보건소 3층	051-970-3417
	금정구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 별관 5층	051-518-8700
	기장군	기장군 기장읍 용수로 11 정관보건지소 4층	051-727-5386
	남구	남구 유엔평화로 4번길 61	051-626-4660
	동구	동구 구청로 1, 동구청 동구의회 2층	051-911-4600
	동래구	동래구 명륜로187번길 56 동래구보건소 4층	051-507-7306
	부산진구	진구 시민공원로30, 부산 진구청별관건강증진센터내 2층	051-638-2662
	북구	북구 만덕대로 89번길 9	051-334-3200
	사상구	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 3층 (학장동, 다누림센터)	051-314-4101
	사하구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41 한국메디컬빌딩 5층	051-265-0512
	서구	부산 서구 부용로 30 서구보건소 202호	051-246-1981
	수영구	부산 수영구 수영로 637-5, 수영구보건소 2층	051-714-5681

시도	시군구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부산 (16)	연제구	부산 연제구 연제로2 연제구보건소2층	051-861-0404
	영도구	영도구 동삼북로2, 주택공사영구임대아파트 상가 209호~211호	051-404-3379
	중구	부산 중구 중구로 70-1, 4층	051-257-7057
	해운대구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 해운대구보건소 305호	051-741-3567
대구 (8)	남구	남구 대명2동 연선길34 남구보건소 4층	053-628-5863
	달서구	달서구 학산로50 월성문화관 내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637-7852
	달성군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458길 6-2, 3층	053-643-0199
	동구	동구 동촌로79, 동구보건소 4층	053-983-8340
	북구	북구 성북로 43, 4층	053-353-3631
	서구	서구 북비산로71길 7	053-564-2595
	수성구	수성구 수성로213 별관4층	053-756-5860
	중구	중구 태평로45, 중구보건소 3층	053-256-2900
인천 (11)	강화군	강화군 강화읍 총렬사로 26-1	032-930-4077
	계양구	계양구 장기서로8 장기보건지소 3층	032-547-7087
	남동구	남동구 인주대로819 문화빌딩 6층	032-465-6412
	동구	동구 인중로377 2층	032-765-3690~1
	미추홀구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032-421-4045
	부평구(부평)	부평구부흥로287보건소별관2층	032-330-5602
	부평구(삼산)	부평구 평천로 447번지 108동 2층	032-330-1371
	서구	서구 탁옥로 39 서구보건소 4층	032-560-5006
	연수구	연수구 예술로 20번길 15 기억과마음치매정신통합센터 3층	032-899-9431
	옹진군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보건소	032-899-3122
	중구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1 중구보건소 5층	032-760-6090
광주 (5)	광산구	광산구 상무대로 239-1 3, 3층	062-941-8567
	남구	남구 효사랑길14	062-676-8236
	동구	동구 서남로 1 동구보건소 2층	062-233-0468
	북구	북구 북문대로 43, 2층	062-267-5510
	서구	서구 운천로 172번길 32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정신보건팀	062-350-4195
대전 (5)	대덕구	대덕구 석봉로 8번길 55, 대덕구보건소 별관 2층	042-931-1671
	동구	동구 현암로 22 (삼성동) 동구보건지소	042-673-4619
	서구	서구 만년로 74 서구보건소 6층	042-488-9741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51, 유성구보건소 2층	042-825-3527
	중구	중구 수도산로 15 (대흥동)	042-257-9930
울산 (5)	남구	남구 삼산중로 132(삼산동),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3층	052-227-1116
	동구	동구 봉수로 155 동구보건소 3층	052-233-1040
	북구	북구 산업로 1018 북구보건소 2층	052-288-0043
	울주군	울주군 서향교1길 67-12 울주군보건소 2층	052-262-1148
	중구	중구 외솔큰길 225(남외동) 중구보건소 3층	052-292-2900
세종	세종	조치원읍 대접로 32 별관 2층	044-865-5225

시도	시군구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경기 (37)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5	031-581-8881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현대빌딩 2층(주교동)	031-968-2333
	고양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마두동) 일산동구보건소 2층	031-908-3567
	과천시	과천시 관문로 69 보건소 1층	02-504-4440
	광명시	광명시 오리로 613, 광명시보건소 3층	02-897-7787
	광주시	광주시 파발로 194	031-762-8728
	구리시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84, 보건소 3층	031-523-8672
	군포시	군포시 군포로 221(부곡동)	031-461-1771
	김포시	김포시 사우중로 108, 보건소별관 2층	031-998-4005
	남양주시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신관 1층	031-592-5891
	동두천시	동두천시 거북마루로 49, 2층(동두천시보건소 별관)	031-863-3632
	부천시	부천시 성오로 172, 오정어울마당3층	032-654-4024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경인오토 73 소사어울마당 4층	032-654-4024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수정구보건소 5층	031-754-3220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수정구보건소 4층	031-751-2445
	수원시(장안)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101, 1층(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031-253-5737
	수원시(팔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031-242-5737
	수원시(팔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9 2층(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031-247-0888
	수원시(영통)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96 4층(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031-273-7511
	시흥시	시흥시 호현로 55	031-316-6661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031-411-7573
	안성시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8	031-678-5367
	안양시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	031-469-2989
	양주시	양주시 삼송로 61번길 10	031-840-7320
	양평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21, 3층	031-771-3521
	여주시	여주시 세종로338, 여주대학교대학본부 2층	031-886-3435
	연천군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연천군보건의료원 내	031-832-8106
	오산시	오산시 경기동로 59, 보건소 2층	031-374-8680
	용인시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84번길 10, 신갈동행정복지센터 내3층	031-286-0949
	의왕시	의왕시 오봉로 34, 의왕시보건소 별관 1층	031-458-0682
	의정부시	의정부시 범골로 131 의정부시보건소 3층	031-838-4181
	이천시	이천시 이섭대천로 1119, 이천상공회의소 2층	031-637-2330
	파주시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1층	031-942-2117
	평택시	평택시 평택5로 56 평택보건소 A동 2층	031-658-9818
	포천시	포천시 포천로 1612, 보건소 3층	031-532-1655
	하남시	하남시 대청로 9, 우정빌딩 4층	031-790-6552
	화성시	화성시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내 1층	031-352-0175
강원 (18)	강릉시	강릉시 강릉대로 313번 6, 동부보건지소 1층	033-651-9668
	고성군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	033-680-3856

시도	시군구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강원 (18)	동해시	동해시 청운로 96 (새운동)	033-533-0197
	삼척시	삼척시 척주로 76	033-574-0190
	속초시	속초시 중앙로 17번길 6	033-633-4088
	양구군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42	033-480-2789
	양양군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 2층	033-673-0199
	영월군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6-43	033-370-2556
	원주시	원주시 원일로 139 학습관 4층	033-746-0198
	인제군	인제군 인제로 140번길 34	033-461-7427
	정선군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33 1층	033-562-4000
	철원군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6	033-450-5104
	춘천시	춘천시 효제길 35	033-244-7574
	태백시	태백시 태백로 905	033-554-1378
	평창군	평창군 평창읍 중부로 61	033-333-0199
	홍천군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5 홍천군건강증진센터 2층	033-430-7482
	화천군	화천군 화천읍 강변로 111	033-440-2863
	횡성군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79	033-345-9901
충북 (14)	괴산군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길 43	043-832-0330
	단양군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53	043-420-3243
	보은군	보은군 보은읍 동광길 45	043-544-6991
	영동군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 7	043-740-5600
	옥천군	옥천군 삼양로8길 10 건강증진센터 3층	043-730-2199
	음성군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74	043-872-1883
	제천시	제천시 의림대로 242 종합보건복지센터 3층	043-646-3074
	증평군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043-835-4276
	진천군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8, 별관2층	043-536-8387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043-298-0199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35(위너스빌딩 4층)	043-291-0199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38 청원보건소 1층	043-215-6868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5번길 16	043-234-8686
	충주시	충주시 사직산21길 34 충주시보건소 4층	043-855-4006
충남 (16)	계룡시	계룡시 장안로 54	042-840-3572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23, 공주시보건소 1층	041-853-1094
	금산군	금산군 금산로 1559 다락원스포츠센터 1층	041-751-4721
	논산시	논산시 논산대로 382(관촉동)	041-746-8173
	당진시	당진시 서부로 56	041-352-4077
	보령시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234	041-930-4184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05	041-830-8600
	서산시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 6로 6	041-661-6551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 26	041-950-6737

시도	시군구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충남 (16)	아산시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041-537-3451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041-339-8093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40	041-521-5012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29	041-578-9709
	청양군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7길 54, 보건의료원 3층	041-940-4570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041-671-53408
	홍성군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06	041-630-2588
전북 (14)	고창군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90	063-563-8751
	군산시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063-451-0363
	김제시	김제시 성산길 138 보건소 2층	063-542-1350
	남원시	남원시 동문로 42-1	063-625-4122
	무주군	무주군 한풍루로 413 4층	063-320-8333
	부안군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24	063-581-5830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063-650-5373
	완주군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89	063-262-3066
	익산시	익산시 무왕로 975, 익산시보건소 1층	063-841-4235
	임실군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80	063-640-3124
	장수군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55-10	063-350-2800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덕진진료실 2층	063-273-6996
	정읍시	정읍시 수성1로 61 정읍시보건소 2층	063-535-2101
	진안군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9	063-430-4000
전남 (22)	목포시	목포시 석현로 48 하당보건지소 3층	061-270-4266
	여수시	여수시 시청서4길 47(학동)	061-659-4255
	순천시	순천시 석현동 중앙로 232 순천시보건소 3층	061-749-6695
	나주시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32 나주시 보건소 2층	061-333-6200
	광양시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061-797-3778
	구례군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30	061-780-2047
	고흥군	고흥군 고흥읍 등암3길 5	061-830-6673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13	061-862-4644
	강진군	강진읍 강진읍 목리길 11	061- 430-3570
	해남군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6	061-531-3768
	무안군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061-450-5052
	함평군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54-8	061-320-2512
	영광군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4길 17	061-350-5666
	장성군	장성군 장성읍 청운11길 13번지	061-390-8373
	완도군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4	061-550-6745
	진도군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9	061-540-6058
	보성군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53, 2층	061-850-5692
	곡성군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4, 2층	061-360-7584

시도	시군구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전남 (22)	담양군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11 2층	061-380-2972
	화순군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62 화순보건소 3층	061-374-4600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9	061-470-6028
	신안군	신안군 압해리 천사로 100	061-271-1004
경북 (25)	경산시	경산시 남매로 158	053-816-719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300 경주시보건소 2층	054-777-1577
	고령군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6-5	054-950-7980
	구미시	구미시 선산대로 111	054-480-4045
	구미시 선산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21	054-483-4376
	군위군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	054-380-7422
	김천시	김천시 체육공원길 21, 3층	054-433-4005
	문경시	문경시 점촌1길 9	054-554-0802
	봉화군	봉화군 봉화읍 1203 3층	054-674-1126
	상주시	상주시 경상대로 3023	054-536-0668
	성주군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12, 3층	054-930-8264
	안동시	안동시 경동로 663 (남부빌딩 2층)	054-842-9933
	영덕군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53	054-730-7161
	영양군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82	054-680-5197
	영주시	영주시 영주로 159번길 73 영주시치매안심센터 2층	054-639-5727
	영천시	영천시 조양공원길 21(창구동)	054-331-6770
	예천군	예천군 군청길 33	054-650-8035
	울릉군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	054-790-6821
	울진군	울진군 울진읍 읍내8길 61-8	054-789-5000
	의성군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1122-30	054-833-0046
	청도군	청도군 화양읍 산성강변길 472	054-373-8006
	청송군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9	054-870-7361
	칠곡군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1길 30	054-973-2023
	포항시 남구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054-270-4091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	054-270-4191
경남 (20)	거제시	거제시 수양로 506	055-639-6200
	거창군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055-940-8383
	고성군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79번길 103-3 (고성군보건소 2층)	055-670 4057~8
	김해시	김해시 분성로 227	055-329-6323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055-860-8694
	밀양시	밀양시 삼문중앙로 41 (보건소별관 2층)	055-359-7078
	사천시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1(보건소 2층)	055-831-2794
	산청군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055-970-7500
	양산시	양산시 중앙로 7-32(양산시보건복지센터 4층)	055-367-2255
	의령군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8길 16	055-570-4022

시도	시군구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경남 (20)	진주시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83	055-749-5774
	창녕군	창녕군(읍) 우포2로 1189-35	055-530-6283
	창원시 마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055-225-6031
	창원시 진해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62 (서부보건지소 3층)	055-225-6151
	창원시 창원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2번길 9(보건소 4층)	055-287-1223
	통영시	통영시 안개4길 108	055-650-6540
	하동군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읍내리)	055-880-6648
	함안군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 4길 10	055-580-3100
	함양군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39	055-960-5331
	합천군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39	055-930-4835
제주 (2)	서귀포시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 52(서홍동)	064-760-6553
	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264 (제주보건소 2층)	064-728-4074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시도	시군구	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울 (3)	강북구	강북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강북구 삼양로 19길 1547, 2층	02-989-9223~4
	도봉구	도봉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도봉구 방학로 53 백운빌딩 2층	02-6082-6793~4
	노원구	노원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노원구 노원로 16길 15, 중계주공 9단지 아파트 912동 1층	02-6941-3677
부산 (3)	서구	부산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서구 구덕로 179 융합의학연구동 2층	051-246-7574
	해운대구	해운대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해운대구 반송로 853 반송보건지소 1층	51-545-1172
	사상구	사상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 3층 (학장동, 다누림센터)	051-988-1191
대구 (2)	동구	대구동부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동구 아양로 246-1 3층	053-957-8817~8
	달서구	달서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달서구 학산로 50 월성문화관내	053-638-3778
인천 (5)	계양구	계양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계양구 계양대로 126 계양구의회청사 1층	032-555-8765
	부평구	부평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부평구 마장로 410번길 5 청천 2동 178-44	032-507-3404
	연수구	연수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연수구 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 2층	032-236-9477~8
	동구	동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동구 인종로 377 2층	032-764-1183
	남동구	남동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남동구 간석동 169-1, 5층	032-468-6412
광주 (5)	서구	광주서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서구 회재로 897-1 용현빌딩 2층	062-654-3802
	북구	광주북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북구 중가로 26, 4층	062-525-1195
	동구	광주동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동구 구성로 190 2층	062-222-1195
	남구	광주남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남구 독립로 25-1	062-413-1195
	광산구	광주광산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광산구 상무대로 239-1 5층	062-714-1233
대전 (3)	대덕구	대전대덕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대덕구 중리서로42, 3층	042-635-8275~6

시도	시군구	기관명	주소	연락처
대전 (3)	서구	대전서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서구 갈마로40, 3층	042-527-9125
	동구	대전동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동구 동대전로 333, 3층	042-286-8275
울산 (2)	남구	울산남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남구 달동 화합로 105 로하스 빌딩 5층	052-275-1117
	중구	울산중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중구 학성로 84-1번지 3층	052-245-9007
경기 (8)	고양시	고양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86 (백석동) 1층	031-932-7071
	성남시	성남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성남시 수정로 218, 수정구보건소 5층	031-751-2768~9
	수원시	수원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9 구중부소방서 2층	031-256-9478
	안산시	안산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 구단원보건소2층	031-411-8445
	안양시	안양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9 계양빌딩 7층	031-464-0175
	의정부시	의정부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의정부시 둔야로 33번길 8, 광희빌딩 5층	031-829-5001
	파주시	파주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2층	031-948-8004
	화성시	화성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본소) 경기도 화성시 서봉로998 정남면보건지소 1층 (분소) 경기도화성시노작로226-9동탄보건지소2층	031-354-6614
강원 (3)	강릉시	강릉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강릉시 경강로 2279 강맥빌딩 A동 2층	033-653-9667~8
	원주시	원주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원주시 원일로 139 원주건강문화센터 지하 1층	033-748-5119
	춘천시	춘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춘천시 삭주로 84 수인빌딩 3층	033-255-3482
충북 (1)	청주시	청주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172번길 21 (흥덕보건소별관) 3층	043-272-0067
충남 (2)	아산시	아산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아산시 번영로 216번길 18, 아산시보건소 별관 1층	041-537-3453
	천안시	천안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 1층	041-577-8097~8
전북 (2)	군산시	군산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063-464-0061~3
	전주시	전주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10, 2층	063-223-4567~8

시도	시군구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전남 (2)	목포시	목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목포시 석현로 48 3층	061-284-9694
	여수시	여수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여수시 시청서4길 47(학동)	061-659-4295~7
경북 (2)	구미시	구미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구미시 검성로 115-1	054-474-9791~2
	포항시	포항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 북구보건소, 별관 2층	054-270-4147~9
경남 (5)	김해시	김해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김해시 주촌면 주선로 29-1, 건강생활지원센터 (김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층)	055-314-0317
	마산시	마산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 3층	055-247-6994
	진주시	진주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20, 2층	055-758-7801
	창원시	창원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2번길 9, 신월동 창원보건소 4층	055-261-5011
	양산시	양산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양산시 중앙로 7-32 양산시 보건복지센터 5층	055-367-9072
제주 (2)	제주시	제주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제주시 서광로175 아세아 빌딩 5층	064-759-0911
	서귀포시	서귀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기 52	064-760-6552

참고문헌

1. GBD 2016 Risk Factors Collaborators. (2017),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comparative risk assessment of 84 behavioural,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and metabolic risks or clusters of risks, 1990–2016: a systemat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6. The Lancet; 390:1345~422.
2. WHO.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8.
3. 이선미 등. (2021).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2015~2019년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4. CCOHS. MSDS. <http://ccinfoweb.ccohs.ca/msds/search.html>에서 인출.
5. IARC. (2012).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 Personal habits and indoor combustion. vol 100E.
6. 이선미 등. (2012).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7. 국가암정보센터. 음주위해. <https://www.cancer.go.kr/lay1/S1T231C232/contents.do> 에서 인출.
8. David J Nutt, Leslie A King, Lawrence D Phillips, on behalf of the Independent Scientific Committee on Drugs. (2010), Drug harms in the UK: a multi criteria decision analysis. The Lancet; i376: 1558–1565.
9. OECD. OECD Health statistics data 2020.
10. 질병관리청. 2020 국민건강통계. 2021.
11.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1.
12. WHO. Global strategy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alcohol. 2010
13. 중앙일보. 술자리서 “키스할 수 있어?” 묻는 선배…, 대학 내 성폭력, 왜 자주 되풀이될까, 2017.05.21.
14. 경북매일. 포항서도 대학교 MT 성추문… ‘지성의 전당’ 성범죄로 얼룩, 2017.02.27.
15. 머니투데이. 대학 새내기 잡는 OT·MT 사건사고, 군기잡기도 여전, 2017.02.27.
16. MBC뉴스. 개강파티 후 대학생 ‘추락사’, 폭음 즐기는 20대, 2016.09.07.
17. YTN. ‘얼마나 마시려고’… 신입생 OT에 소주만 8천 병, 2017.03.05.
18. 부산일보. 주류업체 리베이트에 취한 대학 총학, 2017.03.02.
19. 연합뉴스. 여기가 대학인지 주류회사인지, 2017.05.22.
20. 연합뉴스. 술 마시고 ‘흥청망청’… 대학축제로 ‘탈선’하는 청소년, 2017.05.25.
21. Bagge C, Sher KJ. (2008). Adolescent alcohol involvement and suicide attempts: Toward the development of a conceptual framework.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1283–1296.
22. Conner KR, Huguet N, Caetano R, Giesbrecht N, McFarland BH, Nolte KB, Mark S, Kaplan MS. (2014). Acute Use of Alcohol and Methods of Suicide in a US National Sample. Am J Public Health; 104:171–178.

23. Sher L. (2006), Alcohol consumption and suicide, QJM; 99(1):57-.61.
24. 이진아, 권영란. (2014).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10:495-503.
25. 김석형 외. (2011). 부모의 음주문제와 자녀의 행동 및 심리사회적 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2:162-168.
26. 김남초 외. (2013).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인식·태도. 정신간호학회지; 12(1):56-64.
27. CDC. Fatal Alcohol Spectrum Disorders.
<https://www.cdc.gov/ncbddd/fasd/facts.html>에서 인출.
28. nofasd. Individuals, Parents, Families.
<http://www.nofasd.org.au/intro/individuals-parents-families>에서 인출.
29. 대한모유수유의사회. 엄마의 웰빙과 모유수유, 음주와 모유수유.
<http://www.bfmed.co.kr/subView.html?cate=7&cate=7&idx=762>에서 인출.
30. Brys, I, Pupe, S and Bizarro, L. (2014). Attention, locomotor activity and developmental milestones in rats prenatally exposed to ethanol. Int J Dev Neurosci; 38:161-8.
31. Schneider, ML. (2011). The Effects of Prenatal Alcohol Exposure on Behavior: Rodent and Primate Studies. Neuropsychol Rev; 21(2):186-203.
32.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Fact Sheet. <https://www.niaaa.nih.gov>에서 인출.
33. Meyer, JS, Quenzer LF. (2013). Alcohol. In Psychopharmacology, 2nd ed, pp.262-302S. underland. Sinauer Associates, Inc.
34. Katzung, BG, Masters, SB and Trevor, AJ. (2015). The alcohols. In Basic and clinical pharmacology, 13rd ed. pp.384-395. NY: McGraw-Hill.
35. Weathermon, R and Crabb, DW. (1999). Alcohol and Medication Interactions. Alcohol Research & Health; 23(1):40-54.
36. Monforte, R, Estruch, R, Valls-Solé, J, Nicolás, J, Villalta, J and Urbano-Marquez A. (1995). Autonomic and peripheral neuropathies in patients with chronic alcoholism. A dose-related toxic effect of alcohol. Arch Neurol; 52(1): 45-51.
37. Nevo, I and Hamon, M. (1995). Neurotransmitter and neuromodulatory mechanisms involved i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eurochem. Int; 26(4):305-336.
38. Pitel, AL, Zahr, NM, Jackson, K, Sassoon, SA, Rosenbloom, MZ, Pfefferbaum, A and Sullivan, EV. (2011). Signs of preclinical Wernicke's encephalopathy and thiamine levels as predictors of neuropsychological deficits in alcoholism without Korsakoff's syndrome. Neuropsychopharmacology; 36(3):580-588.
39. Colella, C, Savage, C and Whitmer, K. (2010). Alcohol Use in the Elderly and the Risk for Wernicke-Korsakoff Syndrome. J.Nurse Practitioners; 6(8):614-6213.
40.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Fact Sheet. <https://www.niaaa.nih.gov>에서 인출.
41. 통계청. 2020년 사망원인 통계. 2021.

42. Laslett A-M, Room R, Ferris J, Wilkinson C, Livingston M, Mugavin J. (2011). Surveying the range and magnitude of alcohol's harm to others in Australia. *Addiction*; 106(9):1603-11.
43. Navarro HJ, Dorani CM, Shakeshaft AP. (2011). Measuring costs of alcohol harm to othe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Drug Alcohol Depend*; 114:87-99.
44. 도로교통관리공단. 2020년 교통사고통계. 2021.
45.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1.
46. Smith, SM, Garic, A, Berres, ME and Flentke, GR. (2014). Genomic factors that shape craniofacial outcome and neural crest vulnerability in FASD. *Front Genet*; 5:224.
47. Schneider, ML. (2011). The Effects of Prenatal Alcohol Exposure on Behavior: Rodent and Primate Studies. *Neuropsychol Rev*; 21(2):186-203.
48. 장수미. (2008).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음주문제와 영향요인. *정신보건과사회사업*; 8:152-174.
49. 고숙자 외. (2013). 담배 및 주류의 가격 정책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 WHO.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
<http://www.who.int/gho/alcohol/en/>에서 인출.
51. Thailand. (2008). 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 B.E.2551.
52. Russia. (2001). Code Of Administrative Offen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20.20.1.
53. The Canad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canlii.org>에서 인출.
54. New South Wales. Sydney Alcohol-free Zones.
<http://www.who.int/gho/alcohol/en/>에서 인출.
55. South Australia. (1997). Liquor Licensing Act.
56. Singapore. 2015. Liquor Control(Supply and Consumption) Bill.
57. UK. (2001).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1/16/contents>에서 인출.
58. WHO Europe. (2014). European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59. Finland. (1994). Alcohol Act.
60. ABAC. The ABAC Scheme Limited, ABAC Responsible Alcohol Marketing Code.
61. Dutch Advertising Code Authority. (2011). THE DUTCH ADVERTISING CODE.
62. GALA. (2015). Alcohol Advertising: A Global Legal Perspective 2nd.
63. Dutch Institute for Alcohol Policy. (2010). Effective Alcohol Marketing Regulations : Policy Report.
64. Government of Canada. (1996). Code for broadcast advertising of alcoholic beverages, Canadian Radio and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65.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8). 음주운전 규제적정화 방안 연구.

66. 김기영 외. (2010).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음주규제의 법정책과 입법방안: 우리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108(2):178-200.
67. 김광기 등. (2004).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절주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68. 김용석 등. (2001). 학교중심 청소년 음주 예방교육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69. 남궁기 등. (2001). 중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청소년 음주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보건복지부.
70. 대한보건협회.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표준교재.
71. 최순희 등. (2008). 음주예방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15(2):213-220.
7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2016.
73. 김광기 등. (2016). 청소년 음주예방 실행계획과 전략 수립. 한국건강증진개발원.
74. 김광기 등. (2011). 대학생 음주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효능성 평가.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8(5) : 131-143.
75. 김 명 등. (2011). 대학생 절주교육 프로그램(과음없는 캠퍼스 만들기) 개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 28(5):145-160.
76. 대한보건협회. 대학생 음주예방교육 표준교재.
77. 박 경 등. (2015). 자기효능증진 절주프로그램이 음주 여대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거절 자기효능, 음주 결과기대 및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364-373.
78. 심성옥 등. (2009). 여대생 절주 캠페인 전략 수립을 위한 음주행동 영향 요인 분석. *한국광고홍보학회*; 11(1):204-247.
79. 이해일 등. (2009). 동기화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알코올 기대, 금주 효능감 및 문제 음주에 미치는 효과. *스트레스연구*; 17(3):237-245.
80. 이상엽 등. (2013). 대학생 문제음주 예방과 건전한 절주문화 형성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보건복지부.
81. 대한보건협회. 직장인 음주예방교육 표준교재.
82. 제갈정 등. (2012). 웹 기반 개인맞춤형 사업장 음주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 한국건강증진재단.
83. 대한보건협회. 임산부 음주예방교육 표준교재.
84. ACOG.. F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s (FASD) Prevention Program.
<https://www.acog.org/About-ACOG/ACOG-Departments/Tobacco-Alcohol-and-Substance-Abuse/Fetal-Alcohol-Spectrum-Disorders-Prevention-Program>에서 인출.
85. 이소희 등. (2016). 임산부 음주 폐해 예방 중재 연구기획. 질병관리본부.
86. 오숙희 등. (2009). 알코올 교육 프로그램이 음주문제를 가진 노인의 음주관련 지식과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3(1): 17-26.
87.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4).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주류판매자 가이드라인.
88. 한국국제협력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2015.
89.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한국국제협력단.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16.

90. WHO. Know the NCD targets. <http://www.who.int/beat-ncds/take-action/targets/en/>에서 인출.
91. WHO. SAFER: A world free from alcohol related harms.
http://www.who.int/substance_abuse/safer/msb_safer_brochure.pdf?ua=1에서 인출.
92. WHO. SAFER: Preventing and reducing alcohol-related harms,
https://www.who.int/substance_abuse/safer/msb_safer_framework.pdf?ua=1에서 인출.
93. GBD 2016 Alcohol collaborators. (2018), Alcohol use and burden for 195 countries and territories, 1990–2016: a systemat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6. *Lancet*; 392:1015–35.
94. Wood AM, Kaptoge S 등. (2018), Risk thresholds for alcohol consumption: combined analysis of individual-participant data for 599 912 current drinkers in 83 prospective studies. *Lancet*; 391(10129):1513–1523.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음주폐해 예방

발 간 종 류	사업 업무편람
관 리 번 호	정책-03-2022-017-10
등 록 일	2023년 1월
발 행 일	2023년 1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 소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보건복지부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8층~10층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 화	02-3781-3500
홈 페이지	www.mohw.go.kr www.khepi.or.kr , www.khealth.or.kr/alcoholstop
인 쇄 처	해양인쇄 062-234-0904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음주폐해예방



보건복지부

KHEPi 한국건강증진개발원